

- 창의,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실현 -

#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2016. 1



---

- 창의,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실현 -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

2016. 1



# • 목 차 •

---

## I. 제주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1. 계획의 필요성	3
2. 2015년 주요성과 및 고려사항	7
3. 계획의 추진방향	7
4. 계획의 범위 및 주요영역	14
5.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25

## II. 2016년 영역별 시행계획

제1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29
제2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93
제3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173
제4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237

## 부 록

<부록 1> 평생교육법	323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342



---

# I. 제주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



# 1. 계획의 필요성

## 1-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한 제주지역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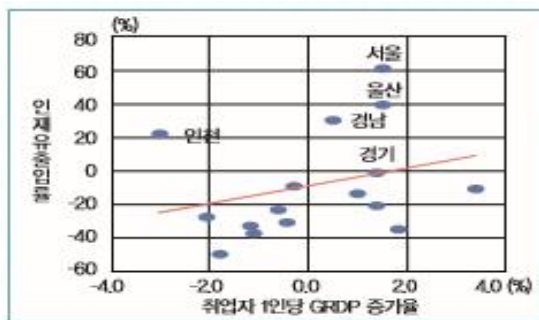
- 100세 시대 인생을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청년층의 실업증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계층간 갈등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 지역 경제력 향상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4년~2017년)』을 마련하였음. 주요 추진방향은 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②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③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④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로서 4대 영역, 29개 세부 추진 과제임.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인 40.4%까지 높이고 소득계층 간 평생학습 참여 격차는 9%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sup>1)</sup>
  - 국민행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의 평생학습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계층별 평생학습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확충, 행복도를 높이는 메카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거,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정책방향과의 적합성을 추구하고 국가와 지역이 상호연계되는 평생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는 2008년 3월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수립했음. 이와 연계하여 2009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발전계획(2010년~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14년~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2015년~2017년)』을 별도로 수립하여 정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

1)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26.4%(’08) → 28.0%(’09) → 30.5%(’10) → 32.4%(’11) → 35.6%(’12)로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소득계층간 평생학습 참여격차는 14%(’12년)(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로 큰 편으로 나타남.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율도 9.4%(’08) → 26.1%(’12)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편임

## 1-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서의 평생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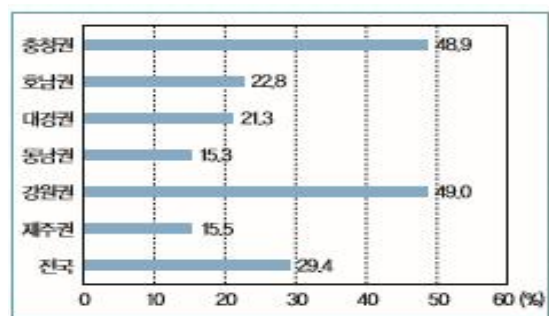
- 지식사회는 과거처럼 과학지식과 학술지식의 의존만으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실용 지식, 생활지식, 문화지식이 접목된 지식의 융·복합적 생성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 대학과 학교 중심의 전통적인 지식생성과 공유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국제기구인 UNESCO와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체제 (lifelong learning system)를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 시스템(sustainable social growth system)으로 규정하고 모든 회원 국가에 권고하고 있음. 이는 교육, 노동, 복지,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융·복합형 공적 사회시스템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와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사회적 신성장체제 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 또한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집약형 및 지식기반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임. 따라서 인재의 유·출입과 지역성장 간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하여 인재 확보가 지역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나, 지역 간 인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 제주지역은 인재확보역량 종합지수를 포함하여 역외인재 유인지수, 역내인재 양성지수가 모두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sup>2)</sup> 향후 인재의 유인 및 양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된 다양성 및 개방성 확충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본인프라 확충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림 1] 인재와 지역성장 간 관계



\*자료 : 통계청 및 고용정보원(2013)

[그림 2] 권역별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률



\*자료 : 고용정보원(2013),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 인재확보역량지수 산출 결과, 서울이 압도적 우위 속에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이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역량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인재 비교우위형 (서울, 대전, 경기, 울산)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제조업, R&D역량을 나타내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음

2) 허문구(2016), “인재확보역량의 지역분포와 정책적 시사점,” 「e-KIET산업경제정보」, 제626호, 산업연구원.

### 1-3. 사회갈등을 넘어 상생협력의 매개체로서 평생학습

- 지역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 단위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세대간, 지역간 사회통합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 마련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조성이 필요함
- 평생학습은 21세기 지역, 국가, 네트워크 사회의 ‘범용(汎用)’ 교육시스템으로서 지역공동체가 발전과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의 교육력 복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공동체(community)’로서 재생시켜 나가는 기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을 통한 공동가치를 창출해야 함
- OECD의 ‘2015년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34개 회원국(평균 6.6점) 가운데 27위를 보이고 있음(한국일보, 2016. 1. 20)
  -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15~29세의 만족도는 6.3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49세는 6.00점, 50대 이상은 5.33점으로 장년~중년으로 가면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음. 또한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노후준비 부족, 자녀양육과 교육, 일자리 불안, 주택 문제 등을 꼽고 있음

[그림 3] 행복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발전 수준



\*자료 : OECD, 2015년 삶의 질 보고서

\*자료 : UN, 세계행복보고서(2015)

- 이외에도 전국의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9.4%,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0%, 대인신뢰도와 관련해서는 44.2%가 대체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우리 사회의 신뢰성 정도에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4.1점에 불과하였음<sup>3)</sup>
- 따라서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계층별 평생학습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인생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개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학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음
  - ▶ OECD, World Bank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도구로서 평생학습을 강조
  - ▶ EU, ASEM : 국가 수준의 경제블록에 상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것을 권고

3) 이상영(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 평생학습을 통한 제주의 가치 공유 및 증대

- 제주평생교육 체제 마련과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요구를 토대로 실천 가능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다양한 시행사업을 통해 지역의 평생 학습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를 기조로 지역의 내실화 및 주민 만족형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취업빙하기(90년대)부터 청년 일자리 형태의 임시직 고착화와 실업을 증가, 출산율 감소, 인재유출, 고학력 여성 인력의 유희화와 자영업의 폐업 증가 등 사회적 부진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2004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지역 총생산량 및 1인당 소득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반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는 지역사회 정체성 확보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지역현장형 교육공약을 마련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음. 즉, 학교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새로운 학습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음
  - 산·학·연·관·언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저변 확대를 위한 효율성 증진을 도모 및 도민 개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 중요성 및 참여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함
    - ▶ 세대간·지역간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글로컬리즘’과 연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 인문교양, 문화예술·스포츠 등 ‘존재를 위한 학습’에 치중해 왔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참여·통합을 위한 학습’ 개념으로 전환

[표 1]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교육분야 주요 공약

구 분		추진 시기
6 건		
공약 1)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	2015년 ~ 2018년
공약 2)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공약 3)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공약 4)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공약 5)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공약 6)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공약 7)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 2. 2015년 주요성과 및 고려사항

### 2-1. 주요성과

#### (1)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사회 인식 공유 및 지역화 기반 점진적 확충

○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영역 고려 및 세부실천 사항을 마련하여 단계별, 체계적 집행 실시

- ‘구호’로서의 평생학습에서 ‘정책’으로서의 평생학습으로 전환

- ▶ 교육 관련 6개 공약에 의거한 세부실천 사업의 체계적 집행으로 정책의 실효성 증대
- ▶ 제주지역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지역형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디딤돌 마련

공 약 명	2015 예산		2016 예산	추진상황	비고
	예산액	집행액			
총계(백만원)	5,738	5,691	9,856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1,590	1,590	2,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설립 운영계획 수립( '14.9월), 용역(15.10월)</li> <li>◦ '15 서귀포시 센터 설립추진 : 착공(11.11), 완료(12월)</li> </ul>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지원	379	379	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非)교과 프로그램 실태조사 : 2015. 12. 18 (완료)</li> <li>◦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후 프로그램 본격 운영(`16.2월)</li> </ul>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1,137	1,096	3,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 3회 2개과정 197명</li> <li>◦ 직업능력 아카데미 공모 : 3개대학, 4개사업 (1억원)</li> <li>◦ 대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지원사업 지원 : 4개 대학교 986백만원</li> </ul>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19	1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도사 양성·활용(서귀포시) : 18명 양성, 12명 활동</li> <li>◦ 제주시 지역 전문가 양성(10월~11월) : 30명</li> </ul>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236	230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교육부 공모사업) : 9개소 - 제주시 5, 서귀포시 4</li> <li>◦ 제주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 : `15. 12.18 완료</li> </ul>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612	612	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민관 협치 TF팀 구성(2015년 7월)·운영</li> <li>- 출연기관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7. 15</li> <li>- 사전타당성검토 완료 : 9.16</li> <li>- 주민공개(9.21), 설명회(10. 19) ⇒ 주민의견 반영 및 보완 : 10. 28</li> </ul>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및 확대	1,765	1,765	2,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운영실적(도 진흥원, 행정시) : 248개 강좌 · 6,343명</li> <li>◦ 성인문해교육지원 : 5개기관 · 420백만원(517명)</li> <li>◦ 교육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 17개강좌 · 3,888명</li> <li>◦ 제주가치 함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4개 강좌 130명</li> </ul>	

-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저변확대의 기반 마련
  - ▶ 평생학습 권역화 및 거점시설 지정·운영을 통한 저변 확대 실시, 중앙정부의 평생 학습도시 운영 및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 ▶ 광역단위의 평생학습 지원 기관으로서 진흥원의 법인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논의 실시

## (2)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 및 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노인, 장애인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신(新)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 세대별·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노인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등 노인시설 활용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 장애인 등 취약 계층 평생교육 여건 및 현황 분석 후 지원계획 수립
    - ▶ 경력단절 극복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 정착이주민 학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특성화 운영 여건 및 현황 분석, 제주의 가치증진 프로그램 개발
- 저학력 성인 대상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실시
  - 저학력 성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지원 실시
    - ▶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 여건 및 현황 분석 후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 수립
    -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여건 및 현황 분석

## (3)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 접근성 확보

- 도민들이 평생학습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 접근 실시
  - ON / OFF - LINE상의 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 및 학습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송, 인터넷 매체 활용성 증진 노력
    - ▶ 제주평생교육정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지역 유관기관 학습정보를 실시간 제공 및 국내 유관기관의 교육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
    - ▶ 외국어, 생활정보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방송, 신문 매체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공. 이외에도 찾아가는 강좌형, 체험학습관형, 특별강좌형 등의 다양한 운영방식과 병행함으로써 학습의 다양성 및 집중성 증대

-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기 부여 및 참여 독려

#### (4)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실행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 직종별, 직능별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사회서비스 가능성 확대
  - 진로직업 맞춤형 교육, 창업아카데미, 관광아카데미, 관광도슨트,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농업인 전문교육, 소비자단체 교육 등 유연한 방식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전문 교육 실시
- 지역내에서 고정적·전문적·직능적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대학, 직능별 대학(학교), 교육장 운영 등의 확대를 통한 전문성 증진
  -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광 경영자 과정, 미술관 대학, (여성)시민 대학, 박물관 대학, 세정대학, 재외도민 향토학교, 간판디자인학교, 융합형 디자인대학, 환경대학 등 지속적 확대 운영
-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지속적 확대
  - 교양·취미 프로그램 축소, 직업능력개발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및 시민교육(응급처치, 핵심리더교육, 인권교육 등) 증가

#### (5) 학습 참여와 그에 따른 활동 연계성 확보 실시

- 생애주기별, 단계별 고려를 통해 평생학습의 유용성 확보를 위해 학습 후 일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별로 다양한 체험적 교육과정이 병행 실시되고 있음
  - 생활안전교육, 문화산업교육, 예비부모 아카데미, 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교육, 청소년 성·인권교육, 마을별 리더 교육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육과 현장체험을 병행하면서 진행
  - 특히,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학습 참여 후 일상에서의 다양한 지역활동과의 연계성도 마련되고 있음

## 2-2. 고려사항

### (1) 민선6기 교육부문 공약 실천 지속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학습지원, 학습지도전문가 양성·배치,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및 기능강화,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권역화 및 거점시설 지정 등 지속 지원을 통한 효과 가시화 유도

### (2) 평생교육 도민 참여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실시

- 저학력 성인, 소외계층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시혜적 정책으로 소득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전히 큰 차이
  - 최근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OECD 평균(40.4%)보다 약 5% 낮아, 조사대상 27개국 중 19위)
  - 특히, 소규모 영세자영업체, 여성, 다문화 등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필요
    - ▶ 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

### (3)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체계화

- 지역내 평생교육 유관기관들이 소수 기관을 제외하고는 부정기적, 한시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상호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즉, 평생교육 유관기관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현장형 운영체제 미완성 및 온라인 평생교육 정보망 연계 부족으로 상호 교류 및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한계 발생
- 더불어 현행 「평생교육법」상 지자체·교육청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여 지역평생교육 추진 주체에 대한 혼선 발생

### (4) 일방적 기회 제공 중심에서 자생적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확충

- 주민참여 학습활동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학습문화 확산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평생교육 참여 문화 조성
- 일방적 교육이 아닌 참여를 통한 학습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궈 나가는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 생활 근거리 학습시설이 기본 인프라로서 중요함

### 3. 계획의 추진방향

#### 3-1. 일-학습-능력 연계성 강화

-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일-학습-능력 연계를 통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창조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학교, 직장, 사회에 일-학습이 양립 가능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이 요구됨

#### 3-2. 평생학습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내 활성화

- 지역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 주도형 평생학습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지속적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자의 욕구, 특성, 학습행동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매력도를 평가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3-3. 협력과 네트워크의 활성화

-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가 심화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재정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 지역 대학(교), 유관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 및 지식을 공유, 활용토록 함
- 공동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자원의 중복투자 방지로 비용을 절감하고 평생학습 참여 주체 간 상호보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3-4. 평생학습 성과 고유 확산을 위한 총체적 접근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간 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 지역 대학(교), 유관기관·단체들 간의 협업체제 구축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적·물적자원의 공동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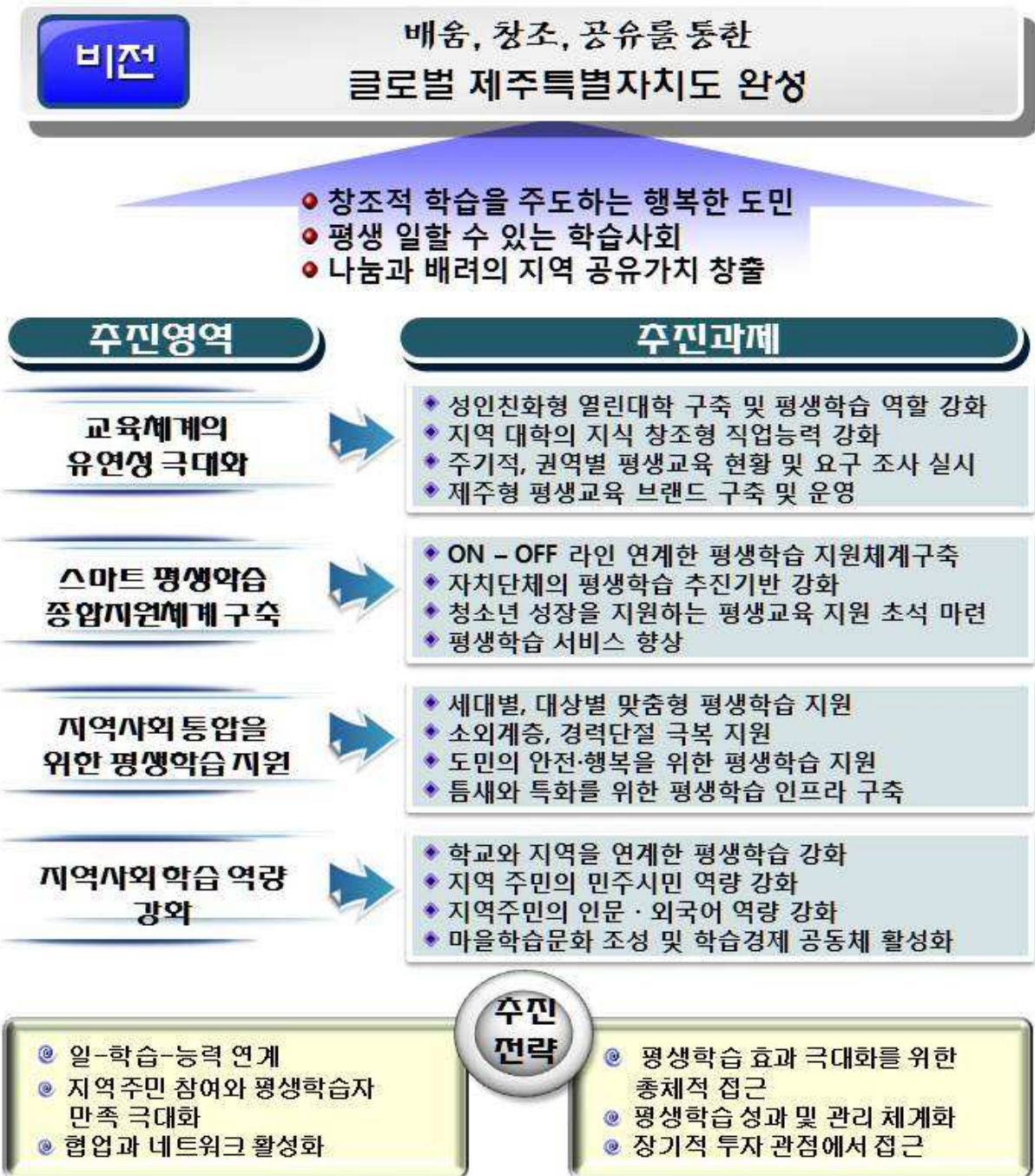
- 단순히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홍보성 행사나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집행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성, 학술활동, 행정지원,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3-5. 지역 현장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지원

- 평생학습 환경변화 및 평생학습 수요자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과 현장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색·식별하고, 이를 제주지역 평생학습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정부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모색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을 통한 조직 학습 문화 조성으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적 삶의 제고
- 특히,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고용(사회참여 포함)-학습복지의 연계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및 복지서비스 확대 효과를 유도
- 특히 교육은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로서, 고용은 인적자원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활동으로, 복지는 일과 학습을 통한 개인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개인의 발전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3-6.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

-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확충을 해 나가야 함. 평생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인적자원 확충 및 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적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성과 평가는 손익계산에 의한 성과 평가보다는 합리성 및 효과성 원리에 근거하여 진행해 나가야 함. 즉, 일회성 참여로 만족하는 학습이 아니라 평생학습자 관점에서 이들의 만족도와 효용성을 제고하고 총체적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장기 지향적 관점이 요구됨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비전

## 4.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 4-1.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2016년(1개년 시행계획 중심)
- 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전년도 실적 등도 포함하고 있음

#### 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3)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 제주지역 대학교 평생교육원(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의 경우 사업 수립에 따른 일정 차이로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 시행 사업을 예정·적용함

### 4-2. 계획의 주요 영역 및 과제

#### 1) 사업 총괄현황

구 분	단위사업(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교육청	대학교	소계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71	7	6	0	3	87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47	30	32	4	0	113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54	22	15	0	0	91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71	25	16	1	0	113
합 계	243	84	69	5	3	404

#### 2) 사업비 총괄현황

구 분	소요예산(백만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대학교	소 계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14,942	260	305	0	336	15,843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계 구축	6,792	4,563	3,530	565	0	15,450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3,507	846	508	0	0	4,861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4,729	786	591	8	0	6,115
합 계	29,970	6,455	4,935	573	336	42,269

3) 세부 영역별 과제 현황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 교육 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I -1 전문직업 상담원 동행면접 프로그램	80,000
			I -2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533,500
			I -3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00
			I -4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000
			I -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200,000
		고용총괄과	I -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22,000
			I -7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437,000
			I -8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29,000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I -9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운영	30,000
		관광정책과	I -10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18,000
		관광산업과	I -11 관광종사원 교육	200,000
		교통정책과	I -12 외국어통역 택시 종사자 어학교육	10,000
			I -13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15,000
			I -14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85,592
		교통제도개선추진단	I -15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100,000
			I -16 버스 운수종사자 등 맞춤형 교육 지원	34,000
		기술지원조정과	I -17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50,028
			I -18 농업인 전문교육	211,000
			I -19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30,000
			I -20 농어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50,000
			I -21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0,000
			I -22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640,000
		기업지원과	I -23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30,000
			I -24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539,000
			I -25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270,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 -26 농업인 전문교육	56,000
			I -27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1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I -28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20,000
		문화정책과	I -29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0,000
			I -30 청년문화예술사업가 양성	70,000
		미래전략산업과	I -31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 과정 운영	73,000
		복지청소년과	I -3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및 협회 운영	70,000
			I -33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I -34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19,000
		산림휴양정책과	I -35 산림기능인 교육훈련	45,000
			I -36 제주숲유치원시범사업(유아숲체험활동) 운영	28,6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 -37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52,000
			I -38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교육	43,000
			I -39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72,000
		서부농업기술센터	I -40 지역 농산물 가공교육	18,0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I -4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10,000
			I -42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1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수산정책과	I -43	어촌지도자교육훈련지원	62,000	
		I -44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	120,000	
		I -45	수산생물질병 방역 교육	20,000	
	스포츠산업과	I -46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교육사업	685,200	
		I -47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교육사업	734,016	
	에너지산업과	I -48	풍력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과정	100,000	
		I -49	현장기반형 에너지 융·복합 전문기업 인력 양성사업	150,000	
		I -50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	1,800,000	
	여성가족정책과	I -51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340,000	
		I -52	어린이집 원장·교사 역량강화 사업	15,000	
		I -5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55,678	
	제주농업기술센터	I -54	농업인 전문교육	70,000	
		I -55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24,000	
		I -56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72,000	
	축산분뇨배설자감추진팀	I -57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	14,000	
	축산정책과	I -5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500,000	
		I -59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600,000	
	통상정책과	I -60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	15,000	
	투자정책과	I -61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	100,000	
	평생교육과	I -62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육성 지원사업	70,000	
		I -63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1,200,000	
		I -64	도내대학 역량강화 취업률향상 지원사업	600,000	
		I -65	세계로프로젝트사업	340,100	
		I -66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635,000	
	해양산업과	I -67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100,000	
		I -68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40,000	
	해양수산연구원	I -69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시범운영	30,400	
	환경정책과	I -70	제주도 초·중교사 환경교육 실시	40,000	
		I -71	고급 환경전문가 교육	50,000	
	제 주 시	경로장애인복지과	I -72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20,000
		기초생활보장과	I -73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10,000
친환경농정과		I -74	농업성공대학 운영	150,000	
		I -75	귀농인 창업 실습 지원	20,000	
여성가족과		I -76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15,000	
		I -7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0	
축산과	I -78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15,000		
서귀 포시	감귤농정과	I -79	농어촌민박업체 의무교육	12,296	
	관광진흥과	I -80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사업	125,000	
	여성가족과	I -81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30,000	
	자치행정과	I -82	서귀포시 청년아카데미	23,000	
	지역경제과	I -83	창업아카데미 운영	15,000	
	지역경제과	I -84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10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대학	제주관광대학교	I -85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10,000
	제주한라대학교	I -86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8,000
	제주한라대학교	I -87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68,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제주 특별 자치 도	기술지원조정과	II -1	미래후계농업인 교육행사	10,000
		도립미술관	II -2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43,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I -3	농업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	1,500,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I -4	농촌교육농장 육성	36,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I -5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	20,000
		문화재관리	II -6	제14기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10,000
		문화정책과	II -7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300,000
			II -8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300,000
			II -9	작은도서관협회 지원	45,000
			II -1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00,000
			II -11	제주어 홍보 및 교육방송 프로그램 공모사업	150,000
			II -12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10,000
			II -13	제주어 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100,000
			II -14	도민문학학교 운영	108,000
		민속자연사박물관	II -15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박물관 탐방교실	20,000
		복지청소년과	II -16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15,000
			II -17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10,000
		사회교육과	II -18	청소년 자원봉사 및 교육사업	20,000
			II -19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50,000
			II -20	사이버 외국어어학센터 운영	27,000
			II -21	배워봅써 외국어 교육방송사업	140,000
			II -22	관광중국어 회화 교육사업	100,000
			II -23	도민정보센터 교육장 기자재 구입	23,500
		서부농업기술센터	II -24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20,500
			II -25	농업인 전문교육	16,500
			II -26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	56,000
			II -27	농촌교육농장 육성	36,000
		원예연구과	II -28	정보화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3,260
		자치행정과	II -29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지원	42,000
			II -30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190,000
			II -31	새마을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33,340
		제주농업기술센터	II -32	농기계 교육 실습	12,000
			II -33	정보화 교육장 조성	62,000
		평생교육과	II -34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20,000
			II -35	제주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운영	27,000
			II -36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1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제 주 시		II -37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600,000
		II -38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기반 조성	50,000
		II -39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530,000
		II -40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 학습환경 조성	80,000
		II -41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	200,000
		II -42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300,000
		II -43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600,000
		II -44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습환경 조성	400,000
	평화협력과	II -45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40,000
	환경정책과	II -46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	20,000
		II -47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85,714
	구좌읍	II -48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130,000
	문화예술과	II -49	작은 도서관(10개소)운영 지원	200,000
		II -50	제주문화원 육성 지원	67,000
		II -51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 운영	50,000
		II -52	두맹이 작은 도서관 운영	30,000
	스포츠진흥과	II -53	유소년체육 육성교실 운영	20,000
	여성가족과	II -54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87,000
		II -55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110,000
		II -5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42,206
		II -5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143,820
		II -5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일체험 및 캠프 운영	16,650
		II -5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위탁 운영	164,677
		II -60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12,000
		II -6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90,000
		II -62	청소년수련시설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	80,000
		II -63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10,000
		II -64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07,424
		자치행정과	II -65	주민자치학교 운영
	II -66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제주시)	10,000
	II -67		제주시 평생학습 대회 개최	12,000
	II -68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 운영지원	18,000
	II -69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63,000
	주민복지과	II -70	지역아동센터 운영	2,541,366
		II -71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50,000
		II -72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50,000
		II -73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욕구 지원 프로그램	38,000
	축산과	II -74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15,000
		II -75	학생 승마체험 교육	120,000
	해양수산과	II -76	제주바다목장 스쿠버다이빙 교육장 조성	50,000
		II -77	한수풀해녀학교 운영	20,000
	대정읍	II -78	문화의 집 운영	21,656
	문화예술과	II -79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	1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서 귀 포 시		II-80	문화의 집 운영	34,000
		II-81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68,800
	복지위생과	II-82	서귀포시노인대학원 운영	70,000
		II-83	실버동호회 운영	13,000
		II-84	노인대학 운영	171,000
		성산읍	II-85	서귀포시 문화의집 운영
	스포츠지원과	II-86	유소년체육 육성지원	30,000
	여성가족과	II-87	지역아동센터 운영	1,618,398
		II-88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32,400
		II-89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00,000
		II-90	서귀포시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40,000
		II-91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4,000
		II-92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35,000
		II-93	서귀포시 청소년활동 통합지원 정보안내 포털 운영	50,000
		II-94	청소년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10,000
		II-95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30,000
		II-96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0,780
		II-97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4,614
		II-98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9,996
		II-99	서귀포시 청소년공부방 운영	120,000
	자치행정과	II-100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11,000
	지역경제과	II-101	생활과학교실 운영	15,000
		II-102	제5회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캠프 운영	10,000
평생교육지원과	II-103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500,000	
	II-104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00	
	II-105	2016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15,000	
	II-106	서귀포시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	27,600	
	II-107	서귀포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63,000	
	II-108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20,000	
효돈동	II-109	쇠소각 청소년 서핑교실 운영	11,200	
교 육 청	미래인재교육과	II-110	평생학습관 운영	167,920
		II-11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164,600
		II-112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II-113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32,1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경제정책과	III-1	사회적경제기업 종합 아카데미 사업	100,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III-2	내외국인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조정과	III-3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77,800
		III-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5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Ⅲ.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Ⅲ-5	노인대학원 운영	70,000	
			Ⅲ-6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24,000	
			Ⅲ-7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40,000	
			Ⅲ-8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51,000	
			Ⅲ-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00,000	
			Ⅲ-10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90,000	
			Ⅲ-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	
			Ⅲ-12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20,000	
			동부농업기술센터	Ⅲ-13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초교육	39,000
			문화정책과	Ⅲ-14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54,000
				Ⅲ-15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에 위한 도서확충 지원사업	15,000
				Ⅲ-16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300,000
		보건위생과	Ⅲ-1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99,750	
			Ⅲ-18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748,000	
			Ⅲ-19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10,000	
			Ⅲ-20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200,000	
			Ⅲ-21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및 운영 사업	25,000	
		복지청소년과	Ⅲ-22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30,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Ⅲ-23	귀농·귀촌교육 현장 실습	24,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Ⅲ-24	여성 전문교육 운영	150,000	
			Ⅲ-25	생활체감형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	54,500	
		수산정책과	Ⅲ-26	귀어·귀촌 교육 및 훈련	20,000	
			Ⅲ-27	어선안전조업 체험 교육	30,000	
			Ⅲ-28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20,000	
		여성가족정책과	Ⅲ-29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50,000	
			Ⅲ-30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20,000	
			Ⅲ-31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100,000	
			Ⅲ-32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30,000	
			Ⅲ-33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30,000	
			Ⅲ-34	전문교육 기관과 MOU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10,000	
			Ⅲ-35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20,000	
			Ⅲ-36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45,296	
			Ⅲ-37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20,000	
			Ⅲ-38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30,000	
			Ⅲ-39	아동 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	28,000	
			Ⅲ-4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Ⅲ-41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100,000	
			Ⅲ-42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20,000	
			Ⅲ-43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30,000	
			Ⅲ-44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100,000	
			Ⅲ-45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2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제 주 시	자치행정과	Ⅲ-46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80,000	
		Ⅲ-47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0	
		Ⅲ-48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	
		정보화담당관	Ⅲ-49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109,524
			Ⅲ-50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12,400
			Ⅲ-51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	6,250
		제주농업기술센터	Ⅲ-52	농촌교육농장 육성	36,000
		지역균형발전과	Ⅲ-53	찾아가는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20,000
	평생교육과	Ⅲ-54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지원	20,000	
	경로장애인복지과	Ⅲ-55	『실버선생님』 노인일자리 교육 사업	108,000	
		Ⅲ-56	『실버선생님』 프로그램 운영	25,000	
		Ⅲ-57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4개소)	140,000	
		Ⅲ-58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56,000	
		Ⅲ-59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	18,000	
		Ⅲ-60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00	
		Ⅲ-61	노인교실 운영	67,000	
		Ⅲ-62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지원	12,000	
		Ⅲ-63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	10,000	
		여성가족과	Ⅲ-64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Ⅲ-65	여성단체능력개발사업	15,000
			Ⅲ-66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Ⅲ-67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10,200
			Ⅲ-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58,144
			Ⅲ-69	한국어교육 운영	22,162
			Ⅲ-70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교육	10,000
			Ⅲ-7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10,000
			Ⅲ-72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사업	10,000
	Ⅲ-73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교육	10,000	
	Ⅲ-74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3,150		
	주민복지과	Ⅲ-75	언어발달지원 사업	6,480	
	추자면	Ⅲ-76	추자면 도서지역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00	
	서 귀 포 시	대전동	Ⅲ-77	정착주민을 위한 제주 문화교실 운영	5,600
		동흥동	Ⅲ-78	수눔음 프로젝트(솔오름공부방 운영)	14,000
		복지위생과	Ⅲ-79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00
			Ⅲ-80	경로당 충효한문교실 운영 및 입교생 학습비 지원	20,000
			Ⅲ-8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30,000
Ⅲ-82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18,000	
Ⅲ-83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23,200	
여성가족과		Ⅲ-84	여성역량강화 실시	10,000	
	Ⅲ-85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Ⅲ-86	한국어운영	2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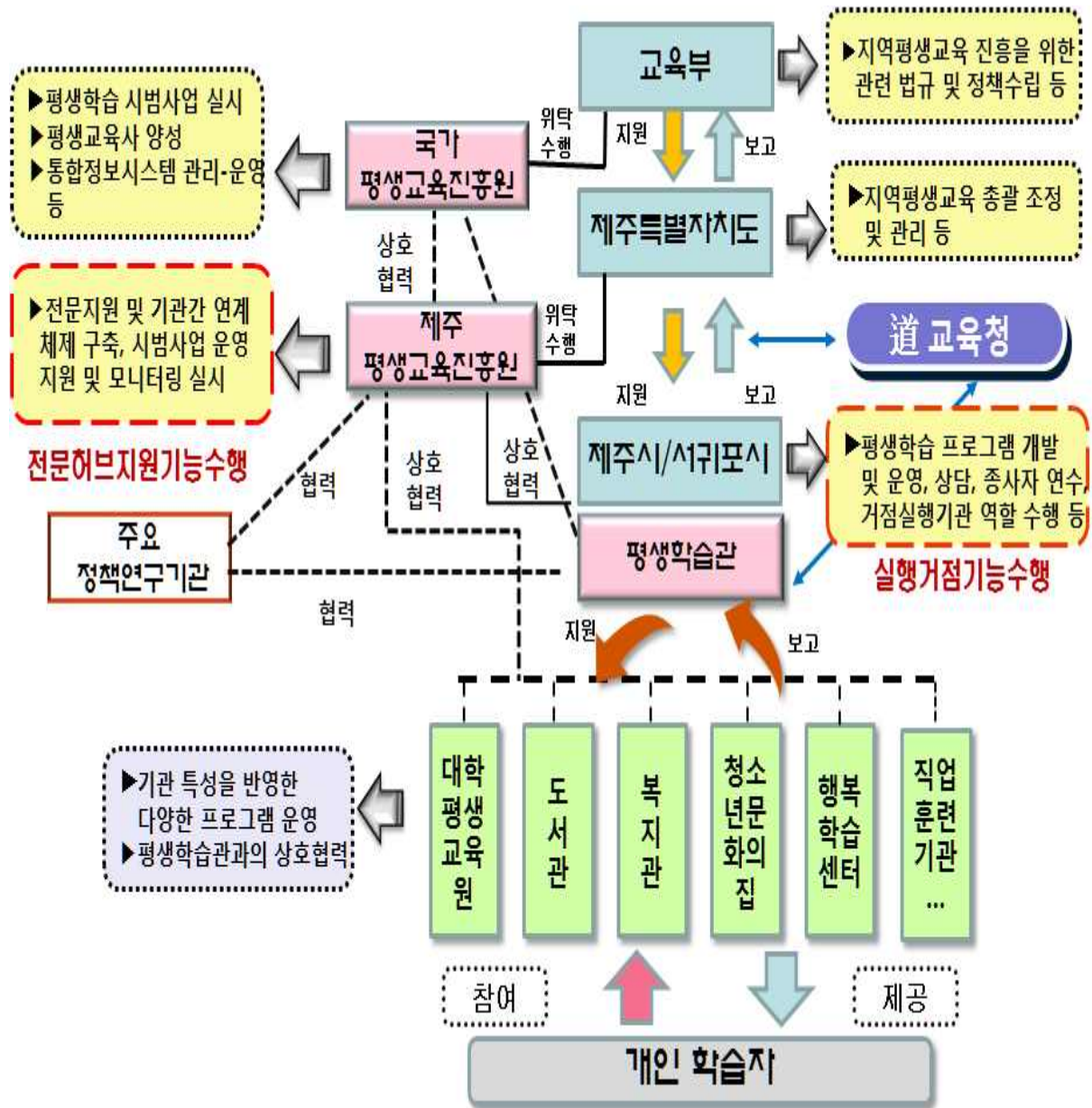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II-87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6,900
		III-88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14,000
	자치행정과	III-89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72,000
	평생교육지원과	III-90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23,000
		III-91	여성문화 교육운영	174,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경제정책과	IV-1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165,000
			IV-2	사회적경제 교육	10,000
			IV-3	노사문제 상담활동 및 협상기법 교육	18,000
		기술지원조정과	IV-4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26,900
			IV-5	4-H 3대 교육행사 운영	15,000
			IV-6	4-H본부 워크숍 및 교육	16,000
			IV-7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25,000
			IV-8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30,000
			IV-9	4-H도본부 교육지원	20,000
		제주도립미술관	IV-10	미술관 대학 운영	12,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IV-11	돌문화공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14,000
		문화재관리	IV-12	제7기 탐라중요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25,000
		문화정책과	IV-13	제주도민의 국어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15,000
			IV-14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160,000
			IV-15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과정 공모 사업	30,000
			IV-16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공모 사업	15,000
			IV-17	제주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	300,000
			IV-18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90,000
			IV-19	제3회 탐라선비 문화학교	16,700
		민속자연사박물관	IV-20	박물관 제주학 강좌	25,000
		보훈과	IV-21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15,000
			IV-22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IV-23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30,000
		사회교육과	IV-24	도민학습교육 운영	60,000
			IV-25	도민사회교육	53,000
			IV-26	제주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50,000
			IV-27	도민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50,000
			IV-28	수준별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97,400
			IV-29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250,000
			IV-30	찾아가는 중국어 배움터 운영	28,000
			IV-31	도민정보화교육	98,030
			IV-32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000
		산림휴양정책과	IV-33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15,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IV-34	감성과 나눔이 있는 열정문화교육 운영	7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제 주 시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IV-35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탐방 체험 프로그램	200,000
		IV-36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000
	세정담당관	IV-37 세정대학 교육	50,000
	소통정책관	IV-38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프로그램 운영	12,000
	수산정책과	IV-39 자율관리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15,000
	수자원본부	IV-40 제주 지하수 아카데미 운영	50,000
	스포츠산업과	IV-41 한라산 등산학교 운영 지원	30,000
		IV-42 생활체육프로그램 영	40,000
		IV-43 종목별생활체육교실 운영	50,000
	식품산업과	IV-44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64,000
	안전총괄과	IV-45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역량강화	83,300
	여성가족정책과	IV-46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한라도서관	IV-47 제주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20,000
	자치행정과	IV-48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100,000
		IV-49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143,000
	지역균형발전과	IV-50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10,000
		IV-5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강화 연수	80,000
	축산정책과	IV-52 승마 아카데미 운영	71,000
	친환경농정과	IV-53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43,000
		IV-54 농촌유학 지원사업	10,000
		IV-55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사업	40,000
		IV-56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IV-57 도민 법 교육 운영	30,000
	평생교육과	IV-58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지원	250,000
		IV-59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20,000
		IV-60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30,000
		IV-61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0
		IV-62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70,000
		IV-63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0,000
	평화협력과	IV-64 평화아카데미 운영	60,000
	환경자산보전과	IV-65 생태환경 체험교육	16,670
		IV-66 명사와 함께 걷는 곳자왈 아카데미	20,000
		IV-67 곳자왈 생태체험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20,000
	환경정책과	IV-68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추진	71,430
		IV-69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200,000
		IV-70 기후변화교육운영 지원	38,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V-71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10,000
	경로장애인복지과	IV-72 충효교실 운영	14,000
	관광진흥과	IV-73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운영	30,000
		IV-74 제주별빛누리공원 토, 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0
		IV-75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농정과	IV-76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12,296
	도시디자인과	IV-77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14,3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마을만들기추진팀	IV-78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50,000	
	문화예술과	IV-79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18,000	
		IV-80 문화학교 운영	10,000	
		IV-81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30,000	
		IV-82 전통학교 운영	10,000	
		IV-83 살아 숨쉬는 제주향교	35,000	
		IV-84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운영	12,500	
		안전총괄과	IV-85 안보교육	10,500
	여성가족과	IV-86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45,640	
	자치행정과	IV-87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30,000	
		IV-88 제주시 평생교육 아카데미(인문학강좌) 운영	100,000	
		IV-89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0,000	
	정보화지원과	IV-90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10,800	
	주민복지과	IV-91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4,000	
		IV-92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0	
	지역경제과	IV-93 시민경제대학 운영	35,000	
		IV-94 생활과학교실 운영	15,000	
	축산과	IV-95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00	
		IV-96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29,000	
	관광진흥과	IV-97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11,120	
	서 귀 포 시	대천동	IV-98 친환경 "아이사랑 EM 학교" 운영	8,900
		동흥동	IV-99 동흥동 문화예술공유 프로그램 운영	72,000
		마을만들기추진팀	IV-100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10,000
		문화예술과	IV-101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15,000
			IV-102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10,000
			IV-103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사업	80,000
		서귀포예술의전당	IV-104 문화예술교육 운영	27,000
영천동		IV-105 영천아카데미 운영	20,000	
자치행정과		IV-10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80,000	
정보화지원과		IV-107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33,500	
중문동		IV-108 중국 바로알기 글로벌 인재 양성	10,000	
지역경제과		IV-109 상인조직 역량강화	19,800	
축산과		IV-110 승마아카데미운영	84,000	
평생교육지원과		IV-111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30,000	
		IV-112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80,000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IV-113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8,180	

## 5.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

# 2016년 영역별 시행계획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I -1. 전문직업 상담원 동행면접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직업상담사의 전문적 청년취업알선\*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구인기업의 인력난, 구직자의 직업정보 부족에 따른 구직난 등을 해소하여 고용 활성화 제고 추진
- \* 전문적 청년취업알선 : 기업방문 구인상담 및 구인정보 발굴, 구인정보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코너」 등재, 구직자 대상 취업서류 작성 컨설팅 및 구인기업 동행면접 시행 등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직자 동행면접, 기업 방문 구인상담, 청년일자리코너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청년일자리코너 운영(2015년 )
  - 2,648개 사업체 구인(3,255명)정보 발굴·등재 → 조회수 47,639건
- 청년일자리지도(Job Map) 추진
  -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알선으로 178명 취업
- 2015 민간기업 통한 정기공채 참여기업 및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발굴
  - 정기공채(305개 기업) : 상반기(4월) 151개, 하반기(9월) 153개
  - 청년드림 Job Fair(9. 3) : 57개 기업체
  -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10. 29) : 60개 기업체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성과 분석(2015년 12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개시(2016년 1월)

## I -2.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역내 구인·구직 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제주지역 중소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과 취업 희망자의 경쟁력 확보
- ※ 사업시행 근거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22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법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3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52 조제2항제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 사업개요

- 지역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발굴하고 훈련수요에 부합된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선정·관리해 최종적으로 지역산업계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총사업비 : 533,5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립(2014. 12.)
- 교육훈련 수요조사(2014. 12. ~ 2015. 2 / 2015. 08. ~ 2015. 9)
  - 조사대상 : 제주지역 내 중소기업 800개 업체
  - 조사내용 : 기업 인력현황 및 채용계획, 2016년 훈련수요 등
- 2015년 교육훈련기관 선정
  - 공동훈련센터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26개 과정 / 훈련생 763명)
  - 전문훈련센터 : 제주관광대학교(9개 과정 / 훈련생 340명)
- 제주지역 훈련공급조사(2015. 9. ~ 2015. 10)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교육훈련기관 선정(2015년 11월 중)
- 2016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2015년 11월 중)

## I-3.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대학·기업·행정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활로 개척 및 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 공급
- ※ 사업시행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모바일시스템 및 디바이스유지보수, 전기차 운영 및 정비실무, 외식산업전문가 등 성장유망 직종 인재양성하여 취업연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미취업 졸업자 포함)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5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4개대학에서 16개 과정 252명 양성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 실시 : 2016년 1월

### I-4.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취업시즌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명강사를 활용, 인문학, 경영학 등을 포함하는 직업교육 추진 및 멘토링으로 취업역량 강화
- ※ 사업시행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철학, 문학, 과학/기술, 경영경제를 망라하는 전문가 수업 및 현장실습
  - 기획, 관리, 영업 분야별 기업실무 과제연습을 통한 종합적 업무능력 배양
  - 도내 중견 직장인 1:1 멘토그룹 형성하여 학습, 진로, 취업 상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 공모 추진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2016년도 사업시행 : 2016년 1월

### I -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지역단위 비영리 단체(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포럼, 연구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
- ※ 사업시행근거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5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모사업 신청 선정기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0천원(국비 960,000 도비 240,00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 2015. 3~12월
  - 총 4개사업(연구 1, 특화 4)
  - 사업참여 : 4개기관(제주대학교, 도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영상문화연구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특화, 연구, 포럼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 공모 추진
- 사업공모 : 2015년 12월 / 사업추진 : 2016년 1월 ~ 12월

### I -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로 지역실업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촉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지역실업자 481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22,000 천원(국비 261,000천원, 도비 261,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승인 : 18개기관, 33개과정, 495명 승인  
- 18개 기관, 33개과정, 446명 참여, 111명 취업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 지급 436,76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지역실업자훈련과정 선정계획 수립 및 승인 : 2016년 1월
- 2016년 지역실업자훈련과정 선정 공고 및 선정심사 : 2016년 1월
- 20개기관, 35개과정 520명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 지원 : 2016년 1월 ~

## I-7.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 사업의 필요성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취업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신규실업자 264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2016년 총사업비 : 437,000천원(국비 437,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및 보상금 지급 259명, 216,971천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활성화 홍보광고 : 2015. 9.20 ~ 12. 31

향후 추진계획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모집 및 사업홍보 지속 : 2016년 1월~
- 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및 훈련상담 보조인력 2명 운영 : 2016년 1월 ~

I -8.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실업자,영세자영업자,비진학 청소년 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취업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내일배움카드제 홍보 및 상담 보조인력 운영(2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9,000천원(국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보조인력 2명 채용 · 1,112명 발급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내일배움카드카드제 상담 보조인력 채용 및 운영 : 2016년 1월 ~

I -9.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잠재고객 확보
- 젊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진열 등 소비자 입장에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사업개요

- 건 명 :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 사업량 : 대학생 30여명, 6개팀(전통시장4, 상점가 2)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2015년 5월)
-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컨설팅 및 블로그 경연대회) : 2015년 5월 ~ 10월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3월
-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 2016년 3월 ~ 4월
- 사업 참가자 모집 : 2016년 5월
- 사업 시행 : 2015년 5월 ~ 10월
- 성과 발표회 및 평가, 사례집 발간 : 2016년 10월

### I -10.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역사, 문화등에 대하여 공영 관광지에 배치되어 전문적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등 참석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3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행사실비보상금)

2015년 주요성과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답사 및 보수교육 실시 : 2016년 1월

향후 추진계획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답사 및 보수교육 실시 : 2016년 1월

I -11. 관광종사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관광객 1,300만 명 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관광인력 지속 양성 필요
- 관광종사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사업명 : 관광종사원 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교육내용 : (기본과정)업체별 맞춤 서비스 및 안전관리 생활화 교육  
(양성과정) 관광통역안내사 이론, 면접 대비반 운영 등  
(역량강화 과정) 현장중심 관광종사원 실무교육 등  
(특화과정) 다문화 및 이주여성 대상 제주문화 이해 등
- 총사업비 : 200,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운영실적 : 총 60개과정, 6,099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관광종사원교육운영계획 수립 : 1월
- 관광종사원교육사업 대행협약 체결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교부 : 1월
-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2월 ~ 12월
- 사업정산 및 평가 : 12월

## I -12. 외국어통역 택시 종사자 어학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
- 지속적인 실무통역(외국어)교육으로 수준 높은 통역택시 운영 체계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외국어(글로벌) 통역택시 종사자
- 교육인원 : 100명
- ※ 현재 통역택시 대수 : 100대(영어 14, 중국어 31, 일본어 55)
- 교육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
- 교육내용 : 전문 어학기관 위탁교육(연 4강좌 - 영어 2, 중국어 2)

#### 2015년 주요성과

- 외국어 통역택시 학원 위탁 어학교육 실시 : 2015년 3월 ~ 5월(영어, 중국어)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 통역택시 종사자 전문 통역교육(관광안내, 제주역사 등) 추진
- 외국어 통역택시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어학교육 추진
- 각종 국제 행사시 외국인 교통수송, 통역안내 등 지원 및 활용

## I -13.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험 대처능력 향상으로 관광객 안전확보 및 국제적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 사업개요

- 대상 : 택시 운수종사자 30명
- 교육시기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지원방법 : 교육(연수)비 70% 지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교육 및 택시 선진지 연수
- 교육내용
  -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환경별 주행코스 운행실습 등 안전운행 요령 교육
  - 관광객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 택시 선진지 연수로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벤치마킹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70% , 자부담 30%)

### 2015년 주요성과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 향후 추진계획

-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점차적으로 확대추진

## I-14.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4. 12. 31)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신규, 보수 교육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우리 도에는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 미설치
-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 위탁교육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 교육대상 : 240명(법인택시 신규교육)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
- 교육시간 : 16시간/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85,592천원(자체재원)

2015년 주요성과

-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가 신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가 신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추진

### I -15.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세버스는 관광 및 통학버스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고, 관광제주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사고예방이 필수적임.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험 대처능력 향상으로 관광객 안전확보 및 국제적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 교육 연수
- 대 상 : 교통사고 다발자 및 통학 전세버스 등 운전자 200명
- 교육시기 : 2016년 1월 ~ 11월
- 지원방법 : 교육비 70% 지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산하 안전운전체험센터
- 교육내용
  - 대형버스의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환경별 주행코스 운행실습 등 안전운행 요령 교육
- 사 업 비 : 총 100,000천원(도비 70% ,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2015년 2월, 7월)
  - 2015년 총 6회 195명 교육 이수
  - ⇒ 전세버스 운전자 안전운행 능력 향상을 통한 사고예방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차적 확대 시행을 통한 안전운행 능력 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고율 매년 3% 감축 계획
- 대중교통 선진지 안전관리 및 친절서비스 벤치마킹 연수기회 제공

I-16. 버스 운수종사자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급변하는 관광산업에서 관광객들의 제주도 관광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교육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 향상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운수종사자들의 능력 함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맞춤형 교육 전개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의 개선과 안전운전 의식 함양
- ※ 사업시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34조

□ 사업개요

- 건 명 : 버스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
- 대 상 : 버스 운수종사자 3,000여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1월
- 지원방법 : 교육비 70% 지원
- 보조사업자 : 전세버스조합 및 버스운송사업조합
- 교육내용
  - 관광객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 기본 회화 교육
  - 안전운행 수칙 및 탑승객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

- 사업비 : 34,000천원(도비 70%,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 교육기간 및 대상: 2015. 6. 29 ~ 7. 24. 운수종사자 1,028명
- 2015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9월 현재 678명)
  - 5. 4일 ~ 5. 15일 운수종사자 집합교육 585명 (장소 : 인재개발원)
  - 7. 22일 : 운수종사자 35명 (장소 : 도로교통공단 협조)
  - 8. 26일 : 운수종사자 24명 (장소 : 도로교통공단 협조)
  - 9. 23일 : 운수종사자 34명 (장소 : 도로교통공단 협조)
- ※ 교육내용(4시간) : 친절서비스(2시간), 교통안전 교육(2시간) 등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여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점검 등 행정지도 실시

### I -17.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국외 선진농업현장 실습교육을 통한 전문농업마이스터 자질 함양
- ※ 사업시행 근거 : 농업마이스터대학 국외현장교육 운영지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업량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국외현장실습 3과정 72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50,028천원(국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국외현장교육 추진 : 4개전공 69명

향후 추진계획

- 농업마이스터대학 국외현장교육 사업운영결과 검토 및 사업정산

## I -18. 농업인 전문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전문농업기술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 CEO 양성
  - 첨단 1차산업을 선도하고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전문농업경영CEO반 등 7과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1,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 정예 농업인 양성교육 : 7과정 2,110명

### 향후 추진계획

- 영농문제 해결 중심 전문농업인양성교육 및 소비자중심 열린교육과정 운영 : 7과정 2,440명

## I -19.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실버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 고조
  - 원예생활과 기술교육을 통한 원예치료사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체 및 정신 지체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고령화 시대 복지농촌 구현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제주지부)
- 사 업 량 : 1개과정 50명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원예치료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결과(2004년 ~ 2015년) : 716명 수료
  - ※ 원예치료사 자격증 취득 : 172명
- 2015년 원예치료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 43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I -20. 농어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관광과 농업을 접목시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
-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농촌관광의 전문경영인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관광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6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개설인증 : 2012년 3월
- 농어촌관광전문교육과정 운영 농어촌체험지도사 육성(2011년 ~ 2014년 : 159명)
- 2015년 농어촌관광경영자 교육과정 수료 : 44명

향후 추진계획

- 제6기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 20주 130시간

## I -21.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일부 시설 친환경단체의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용적 활용방안을 모색
- 친환경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청정 제주농업 이미지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친환경농업 기초과정 운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분위기 조성 : 1과정 102명
- 유기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2과정 56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I -22.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 맞는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제주대학교

- 사업량 : 7개 품목전공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4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개설 허가(농식품부) : 2009. 2. 16
  - 대학본부 :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캠퍼스 : 사)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농업기술원
- 제1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합격 : 6명(전국 유일 여성마이스터 배출)
- 제4기(2015년~2016년) : 7전공 159명 등록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제4기(2015년~2016년) 제주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 I -23.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생존의 필수요건인 인재 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지원이 필요
-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 수행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찾아가는 경영혁신 아카데미(15개업체), 중소기업 경영학교(3회)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찾아가는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 9개 업체
- 중소기업 경영학교 운영 : 5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 2016년 2월
- 교육추진 : 2016년 3월 ~ 11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16년 12월

I -24.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 연계한 맞춤형 인재 체계적 육성, 특성화고 및 전문 대학 졸업생 취업시 기업이 원하는 고용시장 불균형 문제점 해소
- 제주관광대학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자로 선정, 국비 지원에 따른 대응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제주관광대학교(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39,000천원(국가직접 404,000 자체재원 50,000 기타 85,000)

2015년 주요성과

- 2009년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시범사업 시행 공고(중기청) : 2008.11.28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제주관광대학교(전국 10개대학)
- 중소기업과의 교육(기능, 직장적응 등) 및 채용협약을 통한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
- 한림공고 재학생 70여명(2, 3학년), 제주관광대학교(메카트로닉스과) 재학생 60여명(1, 2학년) 참여
- 기술자격 과정 운영을 통한 자격 취득을 제고 : 기술인재 전문자격증 취득 322개 (기사 37, 기능사 285)

향후 추진계획

- 기술사관 육성사업 7차년도 사업 과정 수료자(관광대, 2학년) 기술 인력 취업

- 특성화고 졸업자 대학 입학 기술인력 양성 심화교육 : 관광대(2년간)
- 중소기업과 연계 협력 창의적 사고와 다기능 기술인재 양성 지속 추진

## I -25.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청년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의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인재 수급에 부합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으로 육성,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청년 실업난 해소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0천원(도비 150,000, 교육청 120,000)

#### 2015년 주요성과

- 2015.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원 : 270백만원(도비 150, 교육청 120)
  - 6개교(서귀포산과고, 제주여상, 제주고, 중앙고, 뷰티고, 함덕고), 290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사업성과보고회 : 2016년 2월
-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설명회 및 참여학교 신청·접수 : 2016년 3월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선정 : 2016년 4월
-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채용협약 등 사업 추진 : 2016년 4월~12월

## I -26. 농업인 전문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 현장밀착형 과학기술 교육으로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구좌, 성산, 표선, 우도
- 사 업 량 : 1개소(4회 400명),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6,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22회 1,342명,
- GAP 및 주요작목 품목교육 24회 1,025명
- 선도농가 및 품목연구회 현장교육 9회 292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 2016. 1. 6 ~ 1. 29
- 2016 농업인 전문교육 계획 수립 : 2월
-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 신청자 모집 : 3월
- 세부과정별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 3월 ~ 11월
- 사업 평가 : 12월

## I -27.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농기계 운용방법 교육으로 생력화 촉진, 경영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
- 자가 정비능력 및 관리능력 제고로 농기계 내구연수 증진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도일원 농업인(교육희망자)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0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국비50%, 도비 50%)
- 사업내용 : 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안전운전기술 교육, 농기계 보관관리, 자가정비, 안전수칙, 안전운행 교육

2015년 주요성과

-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 10회 209명(상반기5회, 하반기 5회)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계획 수립 : 2016년 1월
- 교육생 모집 및 대상자 확정 : 4월 말(5기 125명) / 9월 말(5기 125명)
- 교육 추진 : 5월 / 10월
- 교육 평가 : 11월

I -28.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옥외광고업자를 위한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으로 광고업자의 의식전환을 유도 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 발전방향모색
- ※ 사업시행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제2항

사업개요

- 건 명 :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9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디자인 이론교육 및 선진시범거리 답사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5월 ~ 9월 간판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등 간판문화학교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5월 ~ 9월 간판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등 간판문화학교 운영

I -29.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산업에 관심이 높지만 스토리 구성, 창작 등 전문 기술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려운 실적으로 전문기획자로의 교육을 통해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사업시행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제14조, 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1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4. 4 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정  
※ 동 조례 10조에 의거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 2015. 8 ~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 중 (문화예술재단)  
\* 23명(민간인 17, 공무원 6), 서울문화예술재단과 공동기획으로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문화콘텐츠활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계획에 따른 자문 : 2016년 2월
-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행 : 2016년 3월 ~ 10월
- 결과보고 : 2016년 11월
-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에 따른 인력양성 및 활성화 추진 : 2016년 11월 ~

### I -30. 청년문화예술사업가 양성

#### 사업의 필요성

- 창작기획력과 기술이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3명 내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립형 문화예술 사업 활동 지원 및 창업 지원
-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예술인 경제인구를 늘리고 산업기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도지사 공약사항, 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문화예술사업가 양성 지원사업
- 사 업 량 : 청년예술사업가 3명 내외 \* 대상자 공모로 선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4. 4 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정
- 2015. 8. 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 용역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예술사업가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 2016년 2월 ~ 3월
- 심사 및 컨설팅 : 2016년 4월 6월
- 사업화 기반 마련 추진 : 2016년 6월 ~ 11월
- 결과보고 및 홍보 추진 : 2016년 12월

### I -31.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에게 미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기회 제공 및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지역사회 생활과학지도자 양성
- 과학의 중요성 및 과학문화 마인드 확산을 통하여 국·도정의 과학정책을 일관성 있게 홍보(2016년도 8회째 임)

※ 사업시행근거 : 과학기술법 제30조,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사업개요

- 대상 : 희망도민 80명
- 교육방법 : 과학의 중요성 이론강의, 과학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국내 과학 관련 유명인사 초빙 특강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상·하반기 운영(30회 강좌운영)
- 총사업비 : 73,000천원(자체재원 40,000, 자부담 33,00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생활과학지도자과정 협약체결 : 2015년 3월
- 입학식(수강생 80명) : 2015년 3월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수료식 : 2015년 12월
- 2016년도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신청 및 개강준비

**I -3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및 협회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복지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사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한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회원관리사업 등 사회복지사의 대변단체로서 협회운영비 지원 필요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및 협회 운영(인건비, 운영비)

2015년 주요성과

- 사회복지사 복지증진을 위한 회원관리 : 8,369명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879건) 및 보수교육센터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보수교육센터 운영의 안정화 도모 및 협회 운영 활성화 제고

I -33.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전문성 유지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 질적 수준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42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지정교육 및 특별교육 등

2015년 주요성과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법정지정교육, 특별교육) : 12회 · 562명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 -34.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향상, 실무능력제고, 다변화시대의 복지적 대응력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42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아카데미 등 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 I -35. 산림기능인 교육훈련

사업의 필요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따른 산림경영기능인 자격취득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원하는 자가 많음
- 도내에서 산림기능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업개요

- 사업명 : 산림기능인 위탁교육훈련
- 사업량 : 100명 / (50명 / 2회 / 3주)
- 사업기간 : 2016년 1 ~ 12
- 사업비 : 45,000천원
- 보조금 사용내역 : 인건비, 장비임차료, 시설사용료, 교육교재발간 등

2015년 주요성과

- 도내 산림기능인 순회교육 개설 건의(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2014년 ~ 2015년) : 514천본  
- (인력·장비) 연인원 58천명 및 장비 30천대 투입(도내인력 23, 도외인력 35)

향후 추진계획

- 산림전문기능인 교육수요 참여자 모집 및 산림조합중앙회 위탁교육 협의 등

## I -36. 제주숲유치원시범사업 (유아숲체험활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 개발
- 숲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숲유치원시범사업(유아숲체험활동) 운영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 한라생태숲 등 22개소 (사려니숲길, 절물휴양림, 도두봉 등)
- 사 업 량 : 숲체험활동 (200회/10,000명), 유치원 교사, 부모 등 연수 활동 및 세미나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600천원(도비 70%, 자부담 30%)

#### 2015년 주요성과

-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 부모 등 교육 실시
- 유아숲체험활동 : 한라생태숲, 호근숲길 등 22개소 지정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유아숲체험활동 : 한라생태숲, 호근숲길 등 22개소 200회 10,000명
- 숲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원장 및 교사 워크숍 및 수범사례 발표 등

## I -37.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능력을 배양, FTA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영농사항을 해결,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0개과정 7,0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 10개 과정 6,862명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농업인 교육 추진 및 평가 : 10과정 7,000명, 2회
- 2016년 새해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 : 2종

**I -38.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소비자체험프로그램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 농업 농촌의 미래창출과 농가소득 활성화 및 농촌지역 활력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 교육 운영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0회, 4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농촌교육장 및 소비자 농외소득사업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 12개소 750명
- 감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행사 운영 : 1회 1,250명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체험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

I -39.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 연계로 지역의 6차산업 활성화 도모
-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상품 개발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 활력화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자원소득화 기술교육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농촌자원 활용 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2015년 주요성과

- 농식품가공, 마케팅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 3과정 90명(전통발효식초, 꽃차제조, 팜파티전문가 과정)

향후 추진계획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 20회

I -40. 지역 농산물 가공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및 가공 기술 보급 교육 지속 필요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자체 100%)
- 사업내용 : 마늘, 양배추, 월동채소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교육

### 2015년 주요성과

-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교육 : 9회 290명
- 2015 제주 마늘가공 음식 전시회 개최 : 2015. 7. 4 ~ 7. 5.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 대상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 상품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확대 : 1,000명
- 지역 문화행사 연계 농산물 상품화 홍보 및 소비 촉진 활동 강화

## I -4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기존 양성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 위 치 : 도내 교육기관
- 사 업 량 : 위탁교육 실시(상하반기), 보수교육대상자 9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천원(국 50%, 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해설사 보수교육 실시 (2회, 총 56명)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12월 : 교육 인증기관 위탁 보수교육 실시

I -42.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사업의 필요성

- 해설사의 자질 향상 및 해설·교육·탐방안내 등 전문지식 향상을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

사업개요

- 사업량 : 지질공원 해설사 25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비 : 1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지질공원 탐방 안내소 운영 : 3개소
- 지질공원 소양 전문교육 이수 : 2014년 5월 / 2015년 8월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 해설사 배치 운영 등

I -43. 어촌지도자교육훈련지원

사업의 필요성

- 어촌·수산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양성 및 어업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촌지도자교육훈련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도내 어촌계장 등)
- 사 업 량 : 연 3회(회당 1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2,000천원(국비 70%, 도비 3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어촌지도자 교육 실시 : 3회(250명)

향후 추진계획

- 어촌지도자 교육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어촌지도자 교육 : 3회

### I -44.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수산업경영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력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사업개요

- 건 명 :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
- 위 치 :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사 업 량 : 약 6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비 33.3%, 도비 66.7%)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 2반(해녀반, 해양산업경영반) · 50명 운영

향후 추진계획

- 교육생 모집 : 2016년 1월
- 교육 개강 : 2016년 3월
- 교육 수료 : 2017년 2월

I -45.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사업의 필요성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 실시
- 질병관리 능력 함양 및 위생의식 제고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

사업개요

- 건 명 : 수산생물질병 방역 교육
- 위 치 : 도내 수산생물양식시설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2015년 주요성과

- 교육실적 : 20,000천원 · 433명 이수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계획 수립 : 2016년 1월
- 교육 개강 : 2016년 3월 ~ 5월

I -46.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청년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제공 및 종목 보급

- 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사기진작 및 지도 의욕 고취와 읍면동 및 도서 지역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보급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사업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85,200천원(도비 305,100 기금 305,100 민간 75,000 )

#### 2015년 주요성과

- 도내 각급 학교, 단체 사회단체 등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장지도
- 운동처방, 동호인참여인구확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향후 추진계획

-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지도

## I -47.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청년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제공 및 종목 보급
- 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사기진작 및 지도 의욕 고취와 읍면동 및 도서 지역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보급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사업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34,016천원(도비 329,508 기금 329,508 민간 75,000)

2015년 주요성과

- 도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들을 파견하여 현장지도

향후 추진계획

-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지도계획

I-48. 풍력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필요성

- 풍력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선도해 나갈 기술력과 인재가 절실한 실정이나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풍력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제주폴리텍대학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2015년 주요성과

-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 선정운영 : 2009년 3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3개 전공 신설(풍력기계시스템 전공 등) : 2014년 3월
-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인재양성 지원 추가 : 2015년 7월

향후 추진계획

- 고급인력 및 기능인력 양성 방안 및 산학연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 2015년 12월
- 교육기관(제주대학교, 폴리텍대학)간 협약체결 추진 : 2016년 1월

## I -49. 현장기반형 에너지 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지속적인 연계 활용과 관련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형 인력 양성
- 스마트그리드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원화된 인력양성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217 (재)제주테크노파크
- 사 업 량 :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기업 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 2015년 주요성과

- 에너지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총 11회, 338명) : 2015년 10월
  - 스마트그리드관련 기술교육 : 7회, 183명
  - 스마트그리드 산업관련 세미나 : 4회, 155명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홍보 : 2016년 1월
- 에너지 융·복합 관련 지역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 2016년 2월 ~ 12월
- 에너지 융·복합 기술현황 및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 2016년 3월 ~ 12월

## I -50.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창의형 인재 및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형 인력 양성
- 현장밀착형 융복합산업 교육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 2014년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대상 확정(2014년 7월)

사업개요

- 건 명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 위 치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융복합산업 인력양성
  - 스마트그리드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 과정 개발
  - 스마트그리드 심화 실험·실습 기자재 구축 및 교재 개발
  - 스마트그리드,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디자인 실습교육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00천원(국비 1,600,000, 도비 200,000)

2015년 주요성과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1건
- 신 교과목 교수설계, 특성화 실험·실습 프로그램 구축
-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 장려 장학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 ~ 12.
  -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풍력실증단지 등 도내 관련 기관·기업 등과 연계, 현장 밀착형 및 고급인력 양성
  - 국내·외 관련기관 점점 지속 확대로 국제적 엔지니어 양성

I -51.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이전 및 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여성 구직자 전문 교육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실시
- 사 업 량 : 도내대학(5개), 여성일자리센터(3개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40,000천원

## I -52. 어린이집 원장교사 역량강화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2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 지원내용 :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아동학대 예방 전담교사 양성과정 교육 실시 : 4월
- 타시도 견학 및 연수 실시 : 8월

## I -5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교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 업 량 : 614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5,678천원(국비50%, 도비50%)

2015년 주요성과

-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455명 교육 이수 지원

**I -54.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전문농업인력 양성
- 현장교육을 통한 일체감 조성 및 맞춤형 교육으로 농가애로 사항 해결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00회 6,0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 106회 5,130명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38회 2,575명, GAP교육 등 전문과정 교육 68회 2,555명

향후 추진계획

- 영농문제 해결 수요자 중심 현장 교육 : 100회, 5,200명

## I -55.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및 농업정보 제공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선도농가 농장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체험과 영농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 업 량 : 현장실습교육 4명(5개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추진(5월~10월) : (귀농인3명, 선도농가 3명)6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 I -56.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미래농업 후계인력의 중심인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립영농 기반조성 지원 필요
  - ICT, 벤처, 창업, 6차산업 등의 농업현장 적용을 통해 창의적 농업영역 확대 및 소득 창출 도모를 통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2,000천원(국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시설 지원

I-57.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양돈사업장 냄새민원 발생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이용으로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가중
- 축산환경개선교육 및 가축분뇨 컨설팅을 통한 양돈장 냄새저감 의식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
- 위 치 :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냄새저감 공개합동토론회 및 가축분뇨처리 워크숍 계획
-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냄새관리 컨설팅
- 축산환경개선제 미생물 균수 분석 및 탈취제 저감효능 평가

I-5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경마외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말 전문 기능인 부족한 실정

- 말산업 기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2개 학교(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0천원(기금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각 학교별 세부계획에 의거 실습기자재 및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 I -59.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말산업 환경 하에서 산업체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말 생산·이용분야의 전문 기능인 양성
- 도내 新 말산업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2개 학교(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말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 : 4억원(제주대 3억, 한라대 1억)

향후 추진계획

- 대학별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말 전문인력(승마, 수의)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I -60.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

### 사업의 필요성

- 물류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선진물류 사례 학습 등을 통한 제주지역 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물류기업 육성으로 기업의 물류 인적 인프라 구축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 사업개요

- 건 명 :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물류아카데미 과정 운영(수료 26명)
- 기 간 : 2015. 7. 4 ~ 8. 2 / 매주 토요일 4시간 (총 5주 40시간)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물류아카데미 과정 개설 운영 계획

## I -61.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에 이전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업종 유치 촉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1조의 2

### 사업개요

- 건 명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
- 사 업 량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정보통신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이전 촉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1차(9월~10월), 2차(11월)

향후 추진계획

-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투자 잠재(유력) 기업대상 유치 활동 적극 추진 등에 기여

I -62.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육성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대학과 기업체간 연계하여 직업 능력개발 및 전문 역량을 함양한 도민 양성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위 치 : 지역 대학
- 내 용
  - 대학-기업체간 협력 고용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략산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0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7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추진실적 : 3개대학 4개사업 100,000천원
  - 건설원기관리사 전문인력양성사업(제주대학교),
  - 관광기업체 전산회계 운영자 양성과정(제주관광대)
  - 해양테포츠 및 스포츠안전분야 전문인력 / 자동차진단평가사 양성(제주국제대)

향후 추진계획

-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등 자립형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영역별로 발굴 추진

## I -63.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 사업의 필요성

-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해외수학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점취득과 연계한 해외대학 연수 지원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4개 대학 대학생
- 사 업 량 : 대학 재학 중 학점교류 등 해외대학 연수지원(100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우선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지사님 행정시 연두 방문시 제주대 총학생회장 건의 : 1월
- 도내 대학 및 대학 총학생회에서 사업제안 : 2월, 4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8월  
- 조례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대학별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자 등 사업계획 공모 : 2016년 1월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 2016년 12월
- 보조사업 정산 검사 등 : 2017년 1월

## I -64. 도내대학 역량강화 취업률향상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대학 상호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체 역량강화로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현 상황에서 취업률 향상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5개 대학
- 사 업 량 : 대학생 취업률향상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5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대학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한 세부 평가계획 마련
- 도내 대학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한 취업률 향상도 평가심의(8.18)
  - (재정지원) 한라대 164백만원, 관광대 120백만원, 국제대 116백만원
- (마무리계획) 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대학 공동연계 취업프로그램 개발 추진
- 취업률 향상 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모델개발 전문가 워크숍 추진

## I -65. 세계로프로젝트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전문대학이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과 외국어교육, 현지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도내 전문대학생의 취업 촉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해외실습 참여학생 현지 협약업체 현장실습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0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340,100천원(국비 278,400천원, 도비 34,100천원, 기타 27,6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82%, 도비 10%, 자부담 8% ※국비부담 : 대학직접지원

2015년 주요성과

- 해외 산업체 연계 협약 41개 산업체·80명 협약, 해외 협약교육기관 34개·200명 등
- 해외 인턴십·단기연수 87명, 해외연수과정 13개과정·206명, 해외취업 70여명

향후 추진계획

- 세계로 프로젝트사업 4개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
- 4차년도(2015년) 성과보고 및 5차년도(2016년) 추진방안 작성 등

I -66.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량 :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현장실습집중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2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635,000천원(국비 55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기타 55,000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86%, 도비 5%, 자부담 9% ※국비부담 : 대학직접지원

2015년 주요성과

- 총 사업기간 5년으로 1단계(2012년 ~ 2013년), 2단계(2014년 ~ 2016년)으로 진행
  - : 제주관광대학 선정, 도내에서 유일하게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중임
- 핵심 성과 지표 :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351개, 취업률 70%, 현장실습 참여 매년 60여명 총240여명,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83.9% 등

향후 추진계획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4개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
- 4차년도(2015년) 성과보고회 준비 및 5차년도(2016년) 추진방안 작성 등

I-67.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필요성

-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인 크루즈관광산업을 선도 및 관련 산업 취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도지사 공약사업(10-9)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코스타크루즈-(주)롯데관광개발 3자간 MOU

사업개요

- 건 명 : 대학생 및 청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 육성인원 : 3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도내 대학생중 희망자 코스타 빅토리아호 크루즈 승무원 선상실습 실시 : 31명
- 크루즈 인턴제 운영 : 2명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사업 대행협약 체결 : 2016년 1월
- 운영희망 대학과의 협약체결 : 2016년 2월
- 참여학생 선발(도내 각 대학 총장 추천학생 모집) : 2016년 2월
- 전문인력 양성 교육 : 2016년 3월 ~ 6월, 9월~12월
- 크루즈 선상실습 실시 : 2016년 5월, 10월

I-68.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미래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로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층 저변확대 및 해양레저산업 인적인프라 확충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제주국제요트학교),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서귀포국제요트학교)
- 사업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10월말 기준 체험객 : 4,000명  
(제주국제요트학교 1,500명, 서귀포국제요트학교 2,500명)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년 12월
- 2016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1월

**I -69.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시범운영**

사업의 필요성

- 수산업 여건 악화와 사료, 약품 등 산업 인프라의 급성장 및 관련 법률 세분화로 어업현장에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도내에는 어업인 대상 수산기술 전문교육기관이 없음에 따라 급격한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 전문기술 교육 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개요

- 건 명 :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시범운영
- 교육대상 : 어업경영체 운영(종사)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기관·단체 임직원
- 교육장소 : 해양수산연구원 등(현장실습 포함)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총사업비 : 30,4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협력사업 추진 협의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씨그랜트사업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수립 및 민·관·학 운영 협의회 : 2015년 11월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모집 : 2015년 12월
- 교육생 확정, 교육장 정비, 강사진 구성, 기본교재 선정 등 : 2016년 1월 ~ 2월
- 강좌운영 및 운영평가회(수료식) : 2016년 3월 ~ 12월

I -70. 제주도 초·중교사 환경교육 실시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미래세대에게 유네스코 3관왕 등 제주환경의 가치 인식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도내 초·중학교 교사 환경교육 연수를 통해 유네스코3관왕의 중요 성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음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도 초·중교사 환경교육 실시
- 사 업 량 : 도내 유네스코 환경교육 교사 70명(교사연수 120시간)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유네스코 협동학교 환경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 2015년 6월

□ 향후 추진계획

- 초·중교사 환경교육 과정 민간위탁 추진 : 2016년 2월
- 초·중교사 환경교육 과정 운영 : 2016년 2월 ~ 12월

## I -71. 고급 환경전문가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환경지식과 가치관 배양 및 자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역의 환경운동을 선도할 인력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간 협약서

### 사업개요

- 건 명 : 고급 환경전문가 교육
- 사 업 량 : 환경관련종사자, 단체회원 등 80명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제14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과정 운영(2015년) : 76명 양성
-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실시(2002년 ~ 2014년) : 847명 수료

### 향후 추진계획

- 제15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2016년도 신입생 모집 : 2016년 1월
- 고급 환경전문가 과정 운영 : 2016년 3월 ~ 12월

## I -72.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취업 등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1급 ~ 6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1·2종 보통 500천원, 대형 650천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 37명 18,492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자립기반 마련

## I-73.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강·단점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존감 고취 및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기초생활보장조례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자활참여지역역량강화교육
- 위 치 : 제주도 서광로 241-1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
- 사 업 량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7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자활참여지역역량강화교육 운영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 29회 진행 138명 참가(연인원 522명)

향후 추진계획

-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지급 및 참여자 관리로 체계적인 교육 주도

I-74. 농업성공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
-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교육 욕구에 부응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시 지역농협 10개소
- 사업량 : 교육인원 500명(농협별 5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자체재원 50%, 기타 20%)
- 지원내용 : 지역농협 농업성공대학 운영 경비 지원(강사료, 교재비 등)

2015년 주요성과

- 2012년 ~ 2015년도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 4회 · 2,081명 · 546,534천원.

향후 추진계획

- 농업성공대학 지원계획 수립 : 2016년 2월
- 농업성공대학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2016년 3월
- 농업성공대학 운영 및 사업비 정산 : 2016년 4월 ~ 12월

I-75. 귀농인 창업 실습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귀농인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인 창업 실습 지원
- 위 치 : 제주시 일원(공모)
- 사업량 : 5농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선도농가(지역지도자, 전업농, 귀농선배 등) 수시 지정 운영
- 멘토 창업실습 지원 10농가 39,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사업대상자 공모
- 2016년 3월 ~ 8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

## I-76.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들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를 만나고 자신을 표현하여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의2, 2·4호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 사업량 :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1개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I -7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및 보육의 질 향상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 업 량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100명
- 사 업 기 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 총 사 업 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8월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6년 9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년 9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I -78.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실용 교육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 업 량 : 1개분야(말 분야 5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 100%)

2015년 주요성과

- 3기 글로벌축산 경영대학 50명 인력 양성

향후 추진계획

-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실용 교육 실시

### I -79. 농어촌민박업체 의무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을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규정 신설(2015년. 7월 7일 시행)

사업개요

- 사 업 량 : 7회(동부·서부·동지역 등)
- 교육시간 : 3시간(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2,296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 : 4회(9. 23 ~ 10. 2)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년 2월 ~ 12월

## I -80.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채용과 인재양성의 기회 제공 및 해소
- 지역재생용 및 인재육성형 사업을 통한 미래지향형 포석
- ※ 사업시행 근거 : 2015년 창조지역사업

### 사업개요

- 사업량 :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12월(3개년)
- 총사업비 : 460,000천원(국비 80%, 도비 20%)
- 수탁자 :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 2015년 주요성과

-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의견청취(2015. 3. 25)
- 민간위탁운영(장기1차분) 계약체결(2015. 4. 28) 및 MOU체결(2015. 5. 13)
- 2015년 사업비 교부(2015. 5. 13)
- 관광도슨트 운영위원회의 개최 : 3회
- 1기교육 : 2015. 7. 13 ~ 10. 2(총12주, 280시간)
  - 교육생 : 24명(수료17명) ⇒취업 8, 미취업 9(고교2년 4명, 대학진학 1, 취업희망 4)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수료생 취업지원 : 2015년 11월 ~
- 도슨트 2기 및 3기 교육준비 : 2015년 12월

## I -81.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종사자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보조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 사업주관 :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일부 지원
- 총 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 I-82. 서귀포시 청년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품격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년 역량강화 및 시민 대상 열린 강좌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1항

사업개요

- 사업량 : 청년 아카데미 행사 4회(분기별 1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00천원(자체재원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년 2월 ~
- 보조사업 관리 및 사업 정산 : 연중

## I-83. 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창업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창업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창업아카데미 운영 4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도비)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성공창업 아카데미 운영 (제1·2·3기) : 3회·66명

향후 추진계획

- 창업아카데미 운영 : 2016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I -84.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FTA체결 등 수입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전문 경영인 양성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 사 업 량 :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4개 대학)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각 대학별 25,000천원)
- 주최/주관 : 서귀포시/ 농협서귀포시지부, 성산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 산림조합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016년 서귀포시 대학 개강 : 2016년 4월중
- 2016년 서귀포시 대학 운영 : 2016년 4월 ~ 10월
- 2016년 서귀포시 대학 졸업 : 2016년 11월중

## I -85.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사 업 량 : 2015년 기준으로 운영 실시
- 총사업비 : 2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미술심리치료사 양성과정 등 운영 : 20개 과정 460명

- 사업내용 : 미술심리치료사 양성과정(초급), 미술심리치료사 양성과정(심화), 생활중국어, 명리학(사주풀이) 통변과정, 명리학(사주풀이) 고급과정, 부동산경매 투자교실, 피아노, 어드벤처 전문교사 자격증, 생활풍수지리와 인상학, 실용풍수지리와 관상, 인도웃음요가, 캘리그래피, 알기쉬운 경락·경혈학, 민화, 플라워데코레이셔널, 1인 여행플래너, 공예디자이너, 참살이실습터 지원사업, 푸드코디네이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관광기업체 전산회계 운영자 양성과정, 도민중국어 아카데미(기초중국어)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평생교육원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 2016년 평생교육원 과정별 개강 : 2016년 3월 / 8월
- 평생교육원 과정별 운영 : 2016년 3월 ~ 11월

## I -86.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사 업 량 : 2015년 기준으로 운영 실시
- 총사업비 : 58,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부동산 공경매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 : 12개 과정 451명

- 사업내용 : 달크로즈뮤직, 오레아오감통합놀이, 주중골프교실, 주말골프교실, 부동산 공·경매과정, 홈카페과정(바리스타),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밀반찬과정, 자신있게 말 하는법, 기타교실(초급), 심리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크루즈요트교실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평생교육원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 2016년 평생교육원 과정별 개강 : 2016년 3월 / 8월
- 평생교육원 과정별 운영 : 2016년 3월 ~ 11월

I-87.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실현
-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성인친화적 체제 개편
- 성인학부 신설을 통한 성인학습자가 행복한 교육환경 구축
- 대학-지역사회-산업체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체계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대 상 : 재직자 특별전형
- 사업기간 : 2015. 7. ~ 2016. 2.
- 사 업 비 : 68,000천원(국비 70%, 자부담 30%)
- 사업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요내용
  - <교육>
    - 성인학습자를 능력중심교육을 추진하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배양
  - <조직>
    - 성인학부 신설·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 조직 운영 및 성인학습지원센터 구축

<제도>

-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성인학습자를 지원하고 선행학습 이수제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선행학습 경감 제도 운영
-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과 연계된 장단기 교육과정 추진

##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 II-1. 미래후계농업인 교육행사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4-H이념교육으로 농심 배양 및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
- 학교4-H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대상 교육, 4-H 이념확산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H활동지원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미래후계농업인 교육 행사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20회 1,0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4-H지도교사 직무교육 및 연찬 : 3회 240명
- 도 4-H연합회 임원역량강화 교육 : 2회 180명
- 대학 4-H회원 및 여성4-H 회원 자질향상 교육 : 2회 73명

### 향후 추진계획

- 4-H지도교사 선진농장 비교견학 및 국내 농업관련 기관 방문 지도 : 1회 32명
- 4-H연합회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지도 : 2회

## II-2.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미술을 통한 감수성 교양과 상상력 발휘 계기마련
- 전시관람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미술관과 적극 소통하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건 명 :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 사업기간 : 2016년 1. 1 ~ 12. 31
- 총사업비 : 43,000천원
- 내 용
  - 어린이 미술학교 : 3월 ~ 11월(토, 일)
  - 미술이론과 실기 병용학습을 위한 어린이 미술교육프로그램

2015년 주요성과

-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 297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계획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 11월
-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수립 : 11월 ~ 12월

### II-3. 농업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동부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농업인 교육관 신축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기술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
-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철근 콘크리트조 1식 500㎡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농업인교육장 시설 : 구좌읍 김녕리 140㎡(2005년 8월) - 최대 수용인원 50명
- 실증시험 및 농업인교육관 시설 부지확보 : 38,973㎡(2010년 6월)
  -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촌생활과학관 등 참고 및 교육연구시설 1,673㎡ 시설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예산반영 요청 및 협의완료(2015년 6월)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2015. 10 .16)

향후 추진계획

- 신축 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 2015년. 10월 ~ 2016년 2월
- 시설공사 착공(2016년 5월) 및 완공(2016년 11월)
- 농업인교육관 준공 기념 사업평가회 개최 : 2016년 12월

II-4. 농촌교육농장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 육성
- 농촌체험 학습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가치 확산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 운영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국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2010년 ~ 2015년) : 6개소
  - 교육용 기자재 및 리모델링, 외부 전문가 컨설팅 실시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 농촌교육농장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II-5.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

사업의 필요성

- 2012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 농가들의 요구에 의하여 농기계 임대장비 교육과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농기계교육장 및 시설장비 유지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농기계 장비구입 : 2015년(12종 36대)
-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 2015년 10회 209명 수료
- 농기계 임대 실적 : 2015년(1,363농가, 1,363대, 53,452천원 세입)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
- 적기 영농실천 및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 II-6. 제14기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유학을 이끌어나가는 청·장년 대상의 유교 경전 교육을 실시하여 유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2016년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 주관단체 : (재)향교재단(이사장 문태수)
- 사업량 : 도민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1식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유림대학 유학지도자 과정 13기 운영(선발인원 60명) : 2015년 3월 ~ 12월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2016년 2월)
- 2016년 유림대학 유학지도자과정 운영 (2016년 3월 ~ 12월)

II-7.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사업의 필요성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여 도내 도서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

사업개요

- 건 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 사 업 량 : 작은도서관(20개소)와 공공도서관(15개소)간의 상호협력망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8월
- 총사업비 : 3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2016년 1월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시스템 정보보안성 검토 : 2016년 2월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및 계약업체 선정 : 2016년 3월
-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2016년 4월 ~ 8월

## II-8.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도지사 관사로 이용돼 온 지방공관을 도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문화공간 조성
-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 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등 도민 문화활동 공간 확충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 위 치 : 제주시 연오로 140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0천원

※ 도지사 공관 현황

- 부 지 : 15,025㎡

- 건 물 : 3동 1,528㎡(본관 1,025㎡, 별관 291㎡, 관리실 224㎡)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7월 :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실시설계비(70백만원) 반영
- 2015년 8월 ~ : 공관 활용 어린이 도서관 조성 T/F팀 구성 및 회의개최(3회)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1월 ~ 2016년 2월 :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6년 2월 ~ 10월 : 리모델링 공사 추진 및 도서관 개관 준비
- 2016년 11월 :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개관

## II-9. 작은도서관협회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협회 운영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작은도서관 공동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작은도서관협회 지원
- 대 상 : 제주시 노형로 351(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작은도서관협회 운영비 지원 : 70,000천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및 직원 실무교육(2회)
  - 그림책 원화 순회전시(4월), 도서관학교운영(6월), 작은도서관 운영실무교육(5월) 등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작은도서관협회 운영비 지원 : 2016년 1월 중

## II-1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정보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소규모의 독서문화 서비스 시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유희공공시설 및 노후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 도서관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 사업량 : 작은도서관 1개소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작은도서관 조성 : 총20개소 (제주시 11, 서귀포시 9)
- 2015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 2개소
  - 제주시) 봉아름 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어울림 작은도서관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1월 :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 12월 :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대상자 확정
- 2016년 1월 ~ 10월 :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 II-11. 제주어 홍보 및 교육방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어 홍보를 위한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제주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도민들의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제주어 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홍보 및 교육 방송 프로그램 공모 지원
- 사 업 량 : 제주어 배워보카, 제주어 나들이 캠페인, 제주어 속담 캠페인, 제주어 탐구 생활 등 제주어 홍보(교육) 방송 프로그램 등을 공모 연중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주 관 : 도내 방송사 공모 지원
- 총사업비 : 1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주CBS 라디오 「제주어 배워 보카」 프로그램 운영 : 매주 토요일
- 제주MBC 라디오(AM, FM) 「제주어 속담」 방송 프로그램 운영 : 매일 6회 송출
- 제주MBC TV 「제주어 나들이 캠페인」 방송 프로그램 운영 : 매일 3회 송출
- JIBS방송 「제주어 탐구생활」 방송 프로그램 운영 : 월 2회 제작 방영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교육 및 홍보 방송 프로그램 공모 : 2016년 1월중
- 제주어 교육 및 홍보 방송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2월 ~ 12월

## II-12.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모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제주지역 일원
- 사업량 : 제주도내 학생 (제주어 교육 희망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 문화센터 등 현장방문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학생 50명
  - 제주어로 노래배우기 - 제주어 음식명 알기, 제주문화 제주어로배우기
  - 제주어 꽃이름 알기, 제주어 속담배우기 등
- 강사 : 전 제주어 보전회 이사장 등 10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공모 : 2016년 1월중
-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2월 ~ 12월

## II-13. 제주어 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제주의 정체성 교육 필요
-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주어 보전 교육이 절실함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교재 개발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어린이 영·유아용 제주어 교육 영상물 제작 3~4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재개발 지원 협의 : 2015년 8월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정책협의회 협의 : 2015년 10월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과 교재개발 추진 협의 : 2015년 12월
- 교재개발 사업 지원 : 2016년 1월
- 교재개발 사업 추진 : 2016년 2월 ~ 12월
- 교재보급 및 지원 : 2017년 1월

## II-14. 도민문학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학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 등 문학학교 운영으로 제주문학의 집 운영 활성화
- 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학적 소양 향상 및 문학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임항로 278, 제주문학의 집
- 사 업 량 : 문학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주 관 :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 총사업비 : 108,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북 카페 운영 : 도서 4,000여권 비치, 4,239명 이용
- 세월호 추모 타일 그리기(3.10) : 350명 참여
- 흥량의 길 거리시화전 및 인문학 콘서트(3. 27) : 120명 참여
- 4·3 청소년 북 콘서트(4.25), 제주목관아 콘서트(5.23) 개최 : 300명 참여
- 찾아가는 도민 문학학교 운영(7.28~8.16) : 3개 강좌 420명 참여
- 도민 문학학교 ‘창작 공간’ 운영(9.16 ~ 12.10) : 20강좌 32명

향후 추진계획

- 문학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및 북 카페 지속 운영
- 제주문학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보존

II-15.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박물관 탐방교실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역사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생 등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사 교육이 필요함
-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창의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박물관 관람문화 학습 및 전시실 관람, 문화체험학습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박물관 탐방교실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 사 업 량 : 역사기행 7회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1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박물관 탐방교실 : 6회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형 창의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
- 흥미있는 제주지역 역사와 관련된 테마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매년 계속사업)

## II-16.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초등학교들의 재능기부 봉사와 연계하여 제주의 민속과 자연을 융합한 전시해설로 박물관 문화 이해 도모
  -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직접 박물관 문화해설을 진행하여 박물관 운영 전문가에 대한 꿈을 부여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 사업량 :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20회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1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 10회

향후 추진계획

- 예산이 확보되면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
- 매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할 박물관 전시 테마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 전시해설기법 매뉴얼화

## II-17.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전통문화가 청소년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보조사업자 : 공모 사업

#### 2015년 주요성과

- 전통문화 경연대회 개최 및 전통문화 보급활동 전개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협의 : 2015년 12월
- 사업 지원 및 추진 : 2016년 2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 확인 : 2016년 12월

## II-18. 청소년 자원봉사 및 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자원봉사의 의미 및 활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여 더 나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 ~ 2016년 12.

- 총사업비 : 20,000천원
- 보조사업자 : 공모 사업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 신문 활용교육 사업지원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추진 협의 : 2015년 12월
- 사업 지원 및 추진 : 2016년 2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 확인 : 2016년 12월

**II-19.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재외도민 자녀들에게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제공과 고향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 고취
- 재외도민들의 글로벌 인재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로 고향 발전방향 모색 및 경쟁력 강화로 고향 발전 역할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재외도민 향토학교(대학생반, 임원반)과정
- 사 업 량 : 2개과정 · 100명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10월 (대학생반, 임원반)
- 총사업비 : 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향토학교(대학생반) 운영
  - 교육기간 : 2015년 8. 3 ~ 8. 7 (4박 5일)
  - 참여인원 : 46명 (국내35, 국외11)
  - 교육내용 : 제주역사문화, 체험(감물들이기, 옹기, 테우), 4.3평화공원참배 등
- 향토학교(임원반) 운영
  - 교육기간 : 2015년 10. 6 ~ 10. 8 (2박 3일)
  - \* 종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확대운영
  - 참여인원 : 66명 (국내 45, 국외 21)
  - 교육내용 : 희망포럼, 제주역사문화 및 주요사업장방문, 탐라문화재 참석 등

향후 추진계획

- 향토학교(대학생반, 임원반)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년 상반기 중
- 향토학교(대학생반, 임원반) 추진 : 2016년 8월 · 10월

II-20. 사이버 외국어어학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에게 외국어 사이버교육 지원을 통해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 다양한 어학 콘텐츠 제공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교육효과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 사 업 량 : 영어·일본어·중국어 사이버 어학 강좌 운영, 회화 및 청취, 비즈니스, 시험대비 및 어린이 영어 등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사이버 어학센터 위탁 운영 : 2015년 2월 ~ 12월 (1년간)
  - 언어별 회화·비즈니스·어학시험 대비과정 운영 : 총 537강좌
  - 회원 등록수 : 32,586명 (공무원 8,060 · 도민 24,526명)
  - 수료현황 : 3,710명(도민 1,023명, 공무원 2,687명) (2015년)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 외국어교육 계획수립 및 계약 : 2016년 1월
-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및 관리 : 2016년 2월 ~ 12월

II-21. 배워봅써 외국어 교육방송사업

사업의 필요성

- 현장감 있는 TV 방송 매체를 통한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외국어학습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외국어 능력 함양

사업개요

- 건 명 : 배워봅써 외국어방송
- 사 업 량 : 중국어·영어 방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운영방법 : TV 및 인터넷 VOD서비스에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
- 운영실적
  - 현재까지 90편 제작 (과목당 30편) 총 2,500회 방송
  - 다수의 도민들에게 TV를 통한 자연스러운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도민들이 요청했던 생활외국어 교재를 새롭게 제작(1,500부 무료 배포)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배워봅써 외국어방송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016년도 배워봅써 외국어방송 실시 : 2016년 2월 ~ 12월

## II-22. 관광중국어 회화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언어장벽 해소를 위하여 TV매체를 통한 관광 중국어 기초회화 확대로 중국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를 확립

사업개요

- 건 명 : 관광중국어 회화사업
- 사 업 량 : 관광중국어 회화 방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운영(위탁) 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위탁기관 : MBC·JIBS 및 KCTV
- 사업내용 : 관광중국어(실생활형 중국어) TV 방송
  - MBC·JIBS는 캠페인 형식(3분내외), KCTV는 정규 프로그램(30분)
  - 현재까지 18편 제작, 재방송 포함 270회 방송(시간대별 매주 10회이상 재방)
  - 관광중국어 교재와 CD제작 (도민들에게 3,500부 무료 배포)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관광중국어회화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016년도 관광중국어회화 방송 : 2016년 2월 ~ 12월

## II-23. 도민정보센터 교육장 기자재 구입

사업의 필요성

- 도민정보센터 이설에 따른 30여년이 지난 노후된 책상·의자 등을 교체하고 새로운 교육기자재를 구입하여 도민 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정보센터 교육장 기자재 구입
- 사 업 량 : 컴퓨터 책상·의자, 전자교탁, 수납장, 칠판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총사업비 : 23,5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도민정보센터 교육장 이설관련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향후 추진계획

- 도민정보센터 교육장 기자재 구입 : 2016년 1월

## II-24.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에 따른 농업인 실용화, 품목별 전문교육, 현장 애로기술 등 교육지원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교재제작 실시)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 사 업 량 : 3개 과정 6,500명
  - 농업인 실용화 교육 3,5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500명,
  -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5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농촌지도교육계획에 따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교육 등 3과정 : 62회 4,128명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 맞춤형 전문 교육 실시 : 3개 과정 6,500명

II-25.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에 따른 농업인 실용화, 품목별 전문교육, 현장 애로기술 등 교육지원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 사 업 량 : 3개 과정 6,500명
  - 농업인 실용화 교육 3,5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500명,
  -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500천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추진

## II-26.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

### 사업의 필요성

- 신기종 농기계 확보로 농업인 최신 기술 습득 및 교육 내실화 기여

###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서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22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6,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신기종 트랙터 구입 : 1대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장비 구입 농기계 교육에 활용

## II-27. 농촌교육농장 육성

### 사업의 필요성

- 농촌에서 발굴한 유무형 자원을 학교 체험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
- 청소년에게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의 농업·농촌의 역할 및 이해증진 필요

###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 육성
- 위 치 :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국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농촌교육농장 육성 : 6개소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 II-28. 정보화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농업인의 e-비즈니스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득향상 도모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농업인 역량 및 발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25조,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정보화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 사 업 량 : 1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1월
- 총사업비 : 23,26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연 15회

향후 추진계획

- 정보화 농업인 e-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 II-29.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새마을문고를 지역주민의 생활, 교양, 정보센터로 육성하고 범도민 독서 생활화 『BS120』 운동 전개로 지식문화 융성 등 도민의식 선진화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총사업비 : 42,000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 1명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월 새마을문고도지부 운영보조금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보조금 교부

## II-30.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읍·면 독서문화 취약지역 및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통한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읍·면·동 순회 운영중인 이동문고의 도서대출, 독서상담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위탁단체 :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총사업비 : 190,000천원
- 사업내용 : 인건비(4명),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등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월 : 위탁계약 체결
- 2015년 1월 ~ 9월 : 이동문고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위탁계약 체결
- 2016년 1월 ~ 12월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 II-31. 새마을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학생 공부방 및 지역주민 독서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정보센터로 육성하고
- 시설한지 오래된 문고의 서가 및 독서대 교체, 난방용 바닥시설 등 개·보수로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함으로서 독서문화 사랑방화 추진
-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문고현황 : 158개소(제주시 95, 서귀포시 63)
- 총사업비 : 33,340천원(도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신규 문고 개관 2개소, 문고 시설 개·보수 6개소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7월 ~ 8월 : 시설 개·보수 사업완료(연미새마을문고외 4개소)
- 2015년 8월 : 신규새마을문고 개관(삼화2차부영, 아라아이파크) 2개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2월 ~ 3월 : 새마을작은도서관개관 및 부진문고 육성사업 수요조사
- 2016년 4월 ~ : 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 및 개·보수사업 시행

## II-32. 농기계 교육 실습

### 사업의 필요성

- 임대사업 연계 교육훈련으로 농기계 기능인력 양성 및 활용 극대화
- 농기계 사용 및 자가 정비수리 교육 통해 기계화영농 선도 농업인 양성

###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교육 실습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교육훈련 325명
-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농기계 현장애로해결 교육(2일/회) : 9회 212명
  - 주요 농기계 취급조작 실습 및 안전사용 교육
- 2015년 농기계 기술인력 양성 교육(5일/회) : 2회 50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농기계 교육훈련 추진 : 13회 325명

## II-33. 정보화 교육장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농업분야에도 정보화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 조성

### 사업개요

- 건 명 : 정보화 교육장 조성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정보화를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능력 높여 정보화교육추진

II-34.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교육부 주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로 매년 전국단위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도 및 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시의 평생교육을 종합한 통합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제주지역의 자료전시·체험프로그램을 홍보·제공
- 타 지역의 우수사례와 정보를 상호 교류로 제주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제주지역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 위 치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 내(미정)
- 사 업 량 : 제주통합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10월 중(2012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제주지역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 2015년 9. 4 ~ 9. 6 / 서울 코엑스
- 운영실적
  - 제주 소개 홍보영상물 방영(4종) 및 평생학습도시 소개 책자(제주시서귀포시 각 100여부) 및 엽서(2,600부) 제작 배부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제주시)감귤향수 및 비염 스프레이 만들기 : 350여명 (서귀포시) 제주몽생이 열쇠고리 만들기 : 400여명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운영성과 평가 및 발전과제 도출을 통하여 홍보 체험관 운영의 내실화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II-35. 제주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정보 습득을 실시간으로 제공
-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평생교육 종합 정보망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평생교육정보(다모아)시스템 운영
- 사업량 :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5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7,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확정 : 2012년 5월 14일
- 제주평생교육 다모아정보망 홈페이지 오픈 : 2013년 1월 1일
- 다모아정보망 및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통합 및 확대개편 : 2013년 8월 20일
- 온라인 종합정보망 시스템(1.0) 체계 → 2.0 종합정보망으로 구성 운영(중)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들의 가입확대
-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내 자료 확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실명확인 시스템 수정·보완

## II-36.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 사업의 필요성

-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2015년도)되어 계속 사업(3년)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공모시 대응투자 조건 이행 필요

- 행정시별 거점센터 및 읍면 행복학습센터간 정보공유와 사업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 및 운영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지원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

## □ 사업개요

- 건 명 : 행복학습센터 운영 네트워크 구축
- 위 치 : 제주시·서귀포시 행복학습 거점센터 및 읍·면 센터 9개소
  - (거점)제주시·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읍면) 제주시-한림·구좌·조천읍, 한경면 / 서귀포시 - 대정·남원·성산읍
- 사 업 량 : 행정시 행복학습 거점센터 및 읍·면 센터 네트워크 구축 1식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2월(2015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교육부) 및 사업선정 : 2015년 6월
  - 2015년도 지원확정 : 국비 63,000천원(제주시·서귀포시 각 31,500천원)
  - 대응투자 조건 : 국비지원액의 10%이상
  - ※ 국비지원내역 :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비(행정시 세출예산 편성)

##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 2016년 4월~12월
- 연간 행복학습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사례공유·평가실시 : 2016년 12월

## II-37.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적 역할과 기능 강화 및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위수탁 협약(2012. 7. 18)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 사업비 지원
- 도민의 평생교육 수혜권 보장과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위 치 : 제주발전연구원 내(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사업량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 및 기본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2. 7. 18 위탁협약체결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6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우수타협약체결(도-제주발전연구원) : 2012. 7. 18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지원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 추진 : 2012년~2015년

※ 주요 운영실적(2012년 7월 ~ 2014년)

- ° 연구조사 : 9건(도 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방안, 제주지역 평생학습 인지도 및 욕구조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등)
- ° 네트워크 구축 : 23건(평생교육재능나눔단구성·운영,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개최)
- ° 전문연수 : 9회(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문해교육교원 양성 등)
- ° 프로그램 운영·지원 : 74건·8,732명 수료(성인문해, 저소득층 스스로 희망교육과정, 인문학당, 일자리 창출, 행복한 마을학교 등)
- °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 회원 6,059명 확보(온라인 콘텐츠 이용 1,578명, 방문자수 1,434,501명), 강좌 2,306건 등록, 강사등록 280명

향후 추진계획

- 도 출연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추진 및 기능강화 : 2016년도

II-38.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기반 조성

사업의 필요성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중국어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대중국 대응역량 강화
-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위치한 구 제주세무서 건물 개발에 따른 이전 사유 발생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기반 조성(이전 및 임차료 등)
- 위 치 :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제주시 중앙로 273)  
-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연삼로 473) 2층 이전
- 사 업 량 : 중국어체험학습관 이전 및 임차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이전 운영

**II-39.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중국어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대중국 대응역량 강화
  - 관광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위 치 : 제주시,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 사 업 량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4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5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4년 3월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개관
- 2015년 2월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개관
- 2015년 9월 220개 강좌 개설, 교육참여 3,021명, 2,274명 수료  
(2014년 교육참여 1,350명, 연인원 12,133명 이용)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제주시,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II-40.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 학습환경 조성**

사업의 필요성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중국어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대중국 대응역량 강화
-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위치한 구 제주세무서 건물 개발에 따른 이전 사유 발생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 학습환경 조성(시설 리모델링)
- 위 치 :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연삼로 473) 2층 이전 예정
- 사업량 : 중국어체험학습관 이전시설 리모델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이전 운영

**II-41.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민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화 의식 향상 및 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한 제주미래인재 양성
- 설립(2000년 12월) 이후 영어, 중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00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도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187명, 343,000천원
- 외국어전문프로그램(초등영어연극제) 지원 : 50명, 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재단 예산(안)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해외연수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 : 2016년 1월 ~ 12월

II-42.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공교육을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등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전달기구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제주시 연동, 구)지사공관 별관)
- 사 업 량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4년 9월 :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월 시설후보지 선정 : 제주시(도지사공관 별관), 서귀포시(블로그장생체험관)
- 2015년 2월~12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용역 시행
- 2015년 8 ~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운영

II-43.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필요성

- 공교육을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등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전달기구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 위 치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제주시 연동, 구)지사공관 별관)
- 사 업 량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8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운영

## II-44.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습환경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공교육을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등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전달기구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습 환경 조성(학습기자재 구입 등)
- 위 치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제주시 연동, 구)지사공관 별관)
- 사 업 량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8월
- 총사업비 : 400,000천원(국비 100%)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운영

## II-45.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재일제주인 1세대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세대간 정체성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 필요
  - 재일제주인 청소년들의 모국어 습득능력 향상 및 선조 고향사랑 계기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 사 업 량 : 한국어 강좌 및 제주역사문화 체험 1식

- 사업기간 : 2016년 8월중
- 총사업비 : 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개설운영 : 2015. 8. 3 ~ 8. 12
  - 한국어 교육(오전), 제주역사문화체험(오후), 10명 참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 강좌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년 8월

## II-46.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환경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 환경보전 운동을 선도할 환경전문가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정액)
- 사업량 :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환경정화활동, 환경보전과 이용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19기 환경보전지도자 과정 운영(2015년) : 95명 교육
- ※ 제주환경대학 운영(1997년 ~ 2014년) : 총 18기 1,395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제19기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 2016년 1월
-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 : 2016년 3 ~ 12월

## II-47.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환경문제해결 능력 배양
- 환경교육시범도에 맞는 생활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중점 환경교육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자연 환경 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환경관련종사자, 단체회원 등 8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5,714천원(국비 70%, 도비 30%)

#### 2015년 주요성과

- 2014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실적(19,652명)
- 2015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19,932명 양성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6년 3월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6년 3~12월

## II-48.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교육, 다문화가족 이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6-9
- 사 업 량 :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2015년 주요성과

- 2013년 3월 : 구좌읍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준공
- 2013년 9월 :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개소
- ~ 현재 :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이주여성들이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II-49. 작은 도서관(10개소)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랑방 역할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작은도서관 10개소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운영비 보조금 교부 : 8개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 2016년 1월 ~ 12월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및 관리

## II-50. 제주문화원 육성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문화의 원류 발굴과 전승,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제주문화원 육성
  - 제주 정체성 확보 및 유·무형의 유산을 자산화를 통한 후세계승
- ※ 사업시행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 국가·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주관 : 제주문화원)
- 총사업비 : 6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2월 : 연간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6년 2월 ~ 12월 : 개별 사업 추진

## II-51.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랑방 역할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로 351(노형동)
- 사업량 :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12월 :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지원 및 관리

## II-52. 두맹이 작은 도서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랑방 역할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동문로 14길 16-1(일도2동)
- 사 업 량 : 두맹이 작은도서관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12월 :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지원 및 관리

## II-53. 유소년체육 육성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현
- ※ 사업시행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9조~제20조

### 사업개요

- 주최/주관 : 제주시생활체육회
- 참여인원 : 야구, 축구, 농구 등 5개 종목 3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2월 : 제주시생활체육 유소년육성교실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3월 ~ 12월 : 유소년 육성교실 운영

## II-54.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육기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량 : 읍·면지역 어린이집 56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제주시 읍·면지역 어린이집
- 총사업비 : 87,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읍면지역 어린이 프로그램 지원 : 48개소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비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6년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년 3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 2016년 3월 ~ 12월

## II-55.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제공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제공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사 업 량 : 청소년공부방 11개소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 용해로 55(용담2동) 성화청소년공부방 등 11개소
- 총사업비 : 1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 11개소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II-5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방과후아카데미(3개소) 청소년지도사 9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2,206천원(국비 39.2%, 도비 39.2%, 자체재원 21.6%)

2015년 주요성과

- 직영 3개소(청소년수련관, 이도1동, 한림청소년문화의집)지속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3개소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 II-5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 사 업 량 :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직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82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직영 3개소(청소년수련관, 이도1동, 한림청소년문화의집)지속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지원 : 3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 II-58.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일체험 및 캠프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토요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직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65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주말 외부체험활동 기회 제공
- 2015년(10월 말 기준) 3개소, 30회 토요일체험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 II-5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위탁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위탁운영
- 사업량 :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위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YWCA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총사업비 : 164,677천원(국비 46.9%, 도비 46.9%, 자체재원 6.2%)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 실시 : 1개소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 II-60.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시기에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과 덕목을 함양하는 창의적이고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활동의 장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사업량 : 1개소(제주시청소년수련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 115건 · 28,555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프로그램운영 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운영

## II-6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체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증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사업량 : 10개소(도남 청소년문화의집 외)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 10개소 · 173,040명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 및 청소년 취미활동 제공

## II-62. 청소년수련시설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의 열정과 창의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수련시설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량 : 10개소(도남청소년문화의집 외)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사업내용 :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 총사업비 : 8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10개소) 프로그램 운영 : 251개 · 22,560명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끼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II-63.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도모 및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화북청소년문화의집(화북1동)
- 사업내용 :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소모품 구입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라이트 하우스 칸타빌레 운영 : 29회 · 580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12월 : 음악프로그램 운영
- 음악 프로그램(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운영을 통하여 바른 연주법 이해 및 합주

## II-64.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사 업 량 : 1개소(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7,424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건비 지원 : 5명
- 20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20개 프로그램 · 25,650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II-65.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로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배양 강화
- 주민자치실천사례, 회의기법, 프로그램기획 등 실무 위주의 권역별 맞춤형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주체적 학습역량 강화하여 지역내 구심체역할 정립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학교 운영
- 대 상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 26개센터 200여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및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월
- 2016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 2016년 3월 ~ 11월

## II-66.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제주시)

### 사업의 필요성

- 전국에 제주시의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활동 사항 등을 홍보
- 전국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제주시)
- 위 치 : 추후 결정
- 사업량 : 홍보관운영,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사례발표, 무대공연 등 참가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11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6월 ~ 8월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계획수립 및 참가기관 모집
- 2015년. 9월(예정)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II-67. 제주시 평생학습 대회 개최

### 사업의 필요성

-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단위 평생학습대회 개최로 평생학습도시로서 발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평생학습 대회 개최
- 위 치 : 제주시 평생학습관 일원
- 사업량 : 홍보관 운영,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사례발표, 동아리공연 및 시상 등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11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8월 ~ 10월 : 평생학습대회 개최 계획수립 및 참가기관 모집
- 2016년 11월(예정) : 평생학습대회 개최

II-68.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행복 증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내용 : 시민 대상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발굴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2월 :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공모 계획 수립
- 2016년 3월 ~ 12월 :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공모 및 지원

II-69.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회제공을 통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행복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0조
-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3개년 계속지원 사업)

사업개요

- 건 명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 위 치 : 제주시 관내
- 사 업 량 : 행복학습센터 5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3,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23과정 530명

향후 추진계획

-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채용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선정 : 2016년 2월
- 행복학습센터 지정(5개소) : 2016년 2월
- 행복학습센터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3월~12월

**II-70.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방과후 돌봄역할 도모

※ 사업시행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1호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위 치 : 제주시 월랑북길 30-5(경남주택,101호) 1318해피존더블어숲 지역아동센터 외 41개소
- 사 업 량 : 42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541,366천원 (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42개소 · 2,449,682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선정 및 지원

II-71.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토요 돌봄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운영 및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1호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제주시 월랑북길 30-5(경남주택,101호)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 아동센터 외 16개소
- 사 업 량 : 17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15개소 · 4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및 공백 없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상시 지도 및 지원

## II-72.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방학 기간 동안 외부 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운영 및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1호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제주시 월랑북길 30-5(경남주택,101호)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 아동센터 외 41개소
- 사 업 량 : 42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41개소 · 49,2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이용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II-73.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욕구 지원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에게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가죽지원영역별 프로그램운영으로 맞춤형 욕구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2015년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개요

- 건 명 :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욕구 지원

- 사업량 : 48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38,000천원(국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예방접종비용 지원 : 35명 /1회 /1,740천원
- 가족뮤컬 관람 프로그램 운영 : 3회 /496명/6,200천원
- 공연관람 : 22회 /400명 /무료관람

향후 추진계획

- A형간염 및 독감 예방접종비용 지원
- 특기적성, 예체능교육비 지원 및 영양제 지원, 정서발달프로그램 운영

## II-74.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대상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청소년 승마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일원 말 관련 단체 및 등록 승마장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도비 70%,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프로그램 참여 : 56명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프로그램 추진으로 청소년 건강증진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 II-75. 학생 승마체험 교육

사업의 필요성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 승마인구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인터넷 폐해 예방

※ 사업시행 근거 : 말 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사업개요

- 건 명 : 학생 승마체험
- 위 치 : 제주시 일원 말 관련 단체 및 등록 승마장
- 사 업 량 : 4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기금 50%, 도비 30%, 자부담 20%)

2015년 주요성과

- 학생 승마체험 교육 : 211명 참여, 52,500천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승마 산업발전을 도모

## II-76. 제주바다목장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

- 바다 속 레저 체험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쿠버 다이버 전문양성 교육장이 없어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관리수면을 중심으로 바닷속 체험활동의 대중화 기반 마련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범바다목장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 위 치 : 제주바다목장 체험관 내(한경면 신창리)
- 사 업 량 :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6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수요 조사 실시 : 2015년 8월 17일

###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 확정 : 2016년 1월
- 실시설계 : 2016년 2016년 2월
- 착공 및 준공 : 2016년 3월 ~ 6월

## II-77. 한수풀해녀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인 제주해녀를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제주해녀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생활문화를 전수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 제주해녀를 테마로 한 전국 수범적 해녀육성 교육장 운영 및 해녀문화 융성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23항

### 사업개요

- 건 명 : 한수풀해녀학교 운영비지원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623-6
- 사 업 량 : 해녀양성교육(외국인, 도외거주자, 도민대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9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해녀학교 수료생(2008년 ~ 2015년) : 431명(외국인 32명, 내국인 399명)
- 2015년 한수풀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 18,100천원(한림읍)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 수립 : 2016년 1월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16년 2월
- 사업착수 및 완료(정산) : 2016년 2월 ~ 9월

## II-78. 문화의 집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06.5.10, 조례 제2637호)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28
- 사업량 : 무릉 문화의 집 시설 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21,656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대정읍 문화의 집 및 이동민원실 연중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 II-79.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지역의 문화동아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계발
-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4조2항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
- 사 업 량 : 5개 문화동아리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5개 문화동아리(풍물, 민요, 걸궁, 시조, 해녀춤) 교습 강사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문화동아리 육성 : 연중

## II-80. 문화의 집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주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문화의 집 3개소(보목, 중문, 남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4,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문화의 집 운영보조금 지원 : 32,280천원(3개소)

향후 추진계획

- 문화의 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 다양한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II-81.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사업개요

- 건 명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75-1번지
- 사업량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01 ~ 2016년12
- 총사업비 : 68,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12월 : 전수관 공공요금 등 납부, 전수관 주변 환경정비 등
- 2016년 3월 ~ 11월 : 공방가옥 및 전통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II-82. 서귀포시노인대학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제47조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1~3학년)
- 사 업 량 : 1개소, 대학원생 196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노인대학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강사료, 입학·졸업 등 학사운영 경비 지원
- 총사업비 : 7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노인대학원1개소 운영 지원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사 운영경비 지원

**II-83. 실버동호회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여가 선용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 노인복지조례 제32조

사업개요

- 대 상 : 읍·면·동 실버동호회
- 사 업 량 : 13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수당, 소품구입비, 각종 행사참가비 등
- 총사업비 : 13,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실버동호회 운영 지원 : 11개소 · 1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운영비 보조를 통한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도모

## II-84. 노인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제47조

### 사업개요

- 대 상 : 읍·면 노인대학 5개소, 시노인대학 1개소
- 사 업 량 : 6개소, 대학생 552명(1~2학년)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료, 프로그램운영비 등 학사운영 경비 지원
- 총사업비 : 171,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노인대학 6개소 운영 : 171,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사운영경비지원

## II-85. 서귀포시 문화의집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시설 운영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의집 관리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신산청소년문화의집)
- 사 업 량 : 문화의집 관리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756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 II-86. 유소년체육 육성지원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유소년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용으로 유소년의 여가활동 및 사회함양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사업개요

- 건 명 : 유소년체육 육성사업
- 사 업 자 : 서귀포시생활체육회장
- 사 업 량 : 유소년체육교실 12개소, 유소년클럽 3개소 지원, 캠프 및 교류 각 1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1월 : 유소년 체육교실 12개소 운영 및 클럽 3개소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연중 : 유소년 체육 교실 운영 및 클럽 지원

## II-87.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 내에서 안전한 보호와 교육지도, 급식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심신 발달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5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7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 ~ 12.
- 총사업비 : 1,618,398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지역아동센터 27개소 · 1,584,096천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속 지원

## II-88.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방학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건전아동 육성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5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7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4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7개소 · 32,400천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한 방학중 프로그램비 지속 지원

II-89.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민간위탁 시설인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로39(서귀동)
- 사 업 량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 1개소·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교부 : 2016년 1월중

II-90. 서귀포시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민간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 위 치 : 송산 청소년문화의집 외 4개소
- 사 업 량 :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송산, 하효, 법환, 강정, 예래 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 5개소·1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교부 : 2016년 1월 중

## II-91.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직영)
- 사 업 량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 청소년수련관 (2개소) : 서귀포시, 대정
  -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 남원, 동홍, 신산, 안덕, 표선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직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7개소 · 16,29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화 도모

## II-92.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영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직영)
- 위 치 :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외 6개소
- 사업량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 청소년수련관 (2개소) : 서귀포시, 대정
  -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 남원, 동홍, 신산, 안덕, 표선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프로그램 운영 : 7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주5일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토요 프로그램 기획·운영

## II-93. 서귀포시 청소년활동 통합지원 정보안내 포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청소년활동 통합지원 정보안내 포털 개편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별 운영정보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참여확대 및 소통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청소년활동 통합지원 정보안내 포털 개편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서귀포시 청소년 포털 개편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서귀포청소년 포털 FUN FUN 유지보수 운영 : 1식 · 1,800천원
  - 청소년관련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시설안내(23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구리아영장, 서귀포시성문화센터, 온누리청소년쉼터, 서귀포청소년쉼터, 안덕청소년수련원 등)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청소년 포털을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추가 개편하여 보안성 보완 및 접근성 향상으로 수련시설 정보이용 활성화

## II-94. 청소년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물적·인적자원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개인적·사회적 관계 갈등의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 확립과 자존심 향상을 도와 미래 청소년상 정립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원
- 사 업 량 : 지역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원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6,000천원
- 청소년지도자 힐링 워크숍 지원 :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 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내 청소년시설 및 관련단체 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원 추진

**II-95.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외 5개소
- 사업량 : 민간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  
· 서귀포시, 송산, 하효, 대륜, 강정, 예래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민간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6개소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5일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각 청소년문화의집별로 특색있는 토요 프로그램 기획·운영

**II-96.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동로 27
- 사 업 량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78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150,78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 II-97.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으로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체험형태의 성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인식은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성(性) 지식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 청소년 성문화센터
- 사 업 량 : 청소년 성문화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614천원(기금 50%, 도비50%)

####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5,739천원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확대 및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II-98.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동반자)가 직접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정서적 지원 및 필요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 사업량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9,996천원(기금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65,700천원
- 위기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실적 : 4,289명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016년 1월 중

II-99. 서귀포시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로72번길 2 색달동청소년공부방 등 12개소
- 사 업 량 : 청소년공부방 12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 : 12개소 · 1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12개소) : 2016년 1월 중

## II-100.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주도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의식 함양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4조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운영장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참여대상 : 17개 센터(자치위원, 지역지도자, 주민, 청소년 등)
- 주요내용 : 자치능력 신장 및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 토론회, 주민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 총사업비 : 11,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 17개 학교 11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2월
- 2016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 2016년 3월 ~ 12월

II-101.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중심의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 및 과학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 위 치 : 읍·면·동 청소년문화의 집 등 9개소
- 사 업 량 : 과학실험·체험프로그램 운영(주1회·총36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생활과학교실 운영(주1회) : 15회 / 1,511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속 추진

## II-102. 제5회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캠프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내 어린이들에게 경제와 창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모의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과 취업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가진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제5회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캠프 운영
- 사 업 량 : 어린이 창업캠프(1박2일) 1회 (초등학생 5·6학년 60여명 대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100%)

#### 2015년 주요성과

- 제4회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캠프 운영 : 2015. 5. 15 ~ 5. 16(60명)

## II-103.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진로·학습·심리코칭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장래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문제해결력 향상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연중
- 주요내용 :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창의인성 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총사업비 : 50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향후 추진계획

-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 등 학생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연중
- 경력단절·청년실업자 등 대상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및 배치 : 2016년 2월
- 입학전형에 맞는 논술, 면접 등 진로진학 프로그램 마련 : 2016년 2월
- 맞춤형 창의, 인성, 리더십, 외국어,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중
- 청소년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유도 : 연중

**II-104.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소외계층 청소년과 우수 대학생을 결연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학비 지원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소재 중학교
- 사업기간 : 2016년 4 ~ 11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학습지도, 진로 및 고충상담 등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4월 ~ 11월
  - 8개소 운영, 중학생(1~3학년) 멘티 117명, 대학생 멘토 21명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멘토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 2015년 11월
- 2015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평가 : 2015년 12월
- 2016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 II-105. 2016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게 토론 교육 및 실습 경험 제공으로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 훈련 및 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개요

- 건 명 : 2016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 사업기간 : 동계·하계 방학 기간 1주 (연 2회)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동계 청소년·교사 토론 아카데미 운영
  - 운영기간 : 2015. 1. 19 ~ 1. 23 (5일)
  - 수료인원 : 청소년 111명
- 2015 하계 청소년·교사 토론 아카데미 운영
  - 운영기간 : 2015. 8. 3 ~ 8. 7 (5일)
  - 수료인원 : 청소년·교사 102명
  - 내 용 : 토론의 원리와 방법 특강, 단계별 토론 실습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 2회(동계 1월 중, 하계 8월 중)

## II-106. 서귀포시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지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 사업량 :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11월 중(2일간)
- 총사업비 : 27,6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계획 수립 : 2016년 8월 중
- 2016년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2016년 9월 ~ 11월 중

**II-107. 서귀포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생적 지역학습 공동체로서의 성장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3개년 지원) 연계

사업개요

- 건 명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업량 : 행복학습센터 5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7월
- 총사업비 : 63,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행복학습센터 지정 : 3개소
  - 대정주민자치센터, 남원1리어촌체험방문자센터, 성산온평마을회관
- 행복학습센터별 학습매니저 배치 : 4명(2015. 7. 28 ~ 12. 31)
-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8~12월) : 3개소 · 29개과정 · 460명
- ※ 2015년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3개년)-국비31.5백만원, 지방비매칭 31.5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면단위 지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협의 : 2016년 1월
-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채용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 2016년 2월
- 행복학습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 행복학습센터별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 : 2016년 3월 ~ 7월

II-108.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4060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시대가 날로 변해감에 따라 ‘인생이모작’ 설계를 통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정을 부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은퇴설계 교육 아카데미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2015. 4. 25. ~ 10. 31.(서귀포YWCA, 매주 토 4시간)
- 교육인원: 42명(관내 퇴직 및 퇴직예정자, 3~4월중 접수 및 선정)
- 주요프로그램 : 총25회 운영(주1회 4시간/ 총100시간 운영)
  - 기초설계과정(8회) : 2차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과정 교육
  - 역량강화과정(17회) :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한 은퇴설계교육
- 행복드림아카데미 수료식 : 2015년 10. 31.(토) / 30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정산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2015년. 12월
- 2016년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2016년 1월

- 위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2016년 2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2016년 3월 ~ 12월

## II-109. 쇠소깍 청소년 서핑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쇠소깍 검은모래 해변에서는 5월 ~ 10월 경 서핑을 타기에 적절한 파도가 일어 서핑교실을 운영하기에 용이함.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서핑 스포츠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건 명 : 쇠소깍 청소년 서핑교실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해변
- 사 업 량 : 수강생 10명, 48회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1,200천원(도비 90%, 자부담 10%)

### 향후 추진계획

- 강사섭외 및 수강생 모집
- 수강생 “2016년 쇠소깍 서핑 국제대회” 참가

## II-110.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사업비 : 167,92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폴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습동아리 활동 확대 및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 수행

2015년 주요성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56개 과정·18,947명

향후 추진계획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

## II-111.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학업중단 청소년, 장애인,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에게 학력보완교육 및 문자해독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상 :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5개 시설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사업비 : 164,6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2015년 주요성과

- 보조금 지원 6개 시설, 154,000천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1월
- 보조금 지원 : 1월 ~ 2월
- 보조금 집행 : 3월 ~ 1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II-112.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사 업 비 : 학교별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
- 사업주관 : 초·중·고·특수학교
- 주요내용 :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주요성과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84교, 22,972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 1월
- 2016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알림 : 2월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월 ~ 12월
- 2016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II-113.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가정-학교-지역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통하여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청소년,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비 : 232,1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개 공공도서관
- 주요내용
  -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공공 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불균형 해소에 기여

2015년 주요성과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155개 프로그램, 24,317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III-1. 사회적경제기업 종합 아카데미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소규모 교육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아카데미 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유형별,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5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가, 경영자, 실무자, 미래인재 양성과정 등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 2015년 주요성과

- 사회적기업가 양성등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운영 : 40,000천원
- 제주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운영 (6개 학교 189명) : 20,000천원
- 협동조합 아카데미 (6개과정 100명)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 총괄기획단 구성 : 3월
- 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 : 4월
- 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5월
- 사회적경제종합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6월 ~ 12월

### III-2. 내외국인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제주사회 정착 지원 및 제주(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전통문화 및 자연유산 등 자랑거리 홍보
- 내국인 대상 체육(여가) 프로그램 수요 충족을 통한 상호 소통·교류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건 명 : 내외국인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 사 업 량 : 제주(한국)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및 체육(여가)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내외국인 대상 체육(여가) 프로그램 및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5년3월 ~ 6월
- 외국인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 2015년3월-6월, 9월-12월 (상·하반기 각 12주)

### 향후 추진계획

- 내외국인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수요조사 : 2월
- 내외국인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3월
- 내외국인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 3월 ~ 12월

## III-3.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단체의 의식교육으로 제주농업의 방향성 제시 및 농업을 선도하는 회원 양성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품격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0개회, 15개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77,8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감귤혁신 5개년 실천을 위한 감귤열매숙기 활동 : 50회 1,250명
- 새농업기술강좌 농업현장체험 교육 : 4개회 350명
-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교육 : 1회 200명
-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관련 기관단체 워크숍 개최 : 2회 500명

향후 추진계획

- 감귤5개년혁신계획 실천에 따른 농업인 단체별 회원 교육 등 : 10회 500명

III-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 첨단기술, 최신정보 학습기회 제공
-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농업경영인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과정 5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 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1995년~2015년 2월) : 20기 1,609명 수료
- 2015년 제21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운영 업무협약 : 2015년 3월
- 201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 50명 등록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계획 수립
- 경영·회계·마케팅 등 경영기법, 리더쉽 과정 등 경영교육 및 해외농업동향 교육 등 과정 운영

### Ⅲ-5. 노인대학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인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대학원 운영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7길 3(삼도2동)
- 사 업 량 : 1개소·300명(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사업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 사업내용 : 강사료, 교육운영비 등
- 총사업비 : 7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노인대학원 운영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Ⅲ-6.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회원 중 『재능』소유자를 발굴,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하여 소속 경로당에서 강사로 활동
- 프로그램 보급 운영을 자원봉사(무보수)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 등에 경비가 소요되어 이를 보전함으로써 질 높은 프로그램 보급을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 사 업 량 : 60명 (프로그램 보급요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총사업비 : 24,000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경로당 1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사업 지원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III-7.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자폐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통해 사회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위 치 : 수행기관 공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 총사업비 : 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업비지원 : 40,000천원
-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비와 사업비의 통합지원

향후 추진계획

-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 III-8.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과 단체의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대응 방안과 자립능력 배양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위 치 :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9월 ~10월(개최시기 2016년 10월예정)
- 수행주체 : 선정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 총사업비 : 51,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34,000천원
- 제주치료교육협회 치료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부모교육 10,000천원
- 지역사회조직화와 장애당사자 역량강화사업 4,000천원
- 시각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 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공모 및 지원

### III-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 증진 교육실시를 통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와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업량 : 3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별도 절차를 통해 선정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3개소)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진행
- 총사업비 : 100,000천원(국비 70%, 도비 30%)

2015년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증진 교육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통합운영

### III-10.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재활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지원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두홍)
- 총사업비 : 9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지원

### III-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닌, 가정이 함께 평생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가족들간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토대 마련
  - 특히,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전담 케어 부담 해소 및 평생 학습기회 보장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일상 생활 보장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 업 량 : 장애복지관 5개소 및 발달장애인단체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단체
- 총사업비 : 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000천원
- 2015년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 교육기간 : 2015년 8~12월
  - 내용내용 : 서귀포시 서부 지역 발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작은 마을 상상놀이터-똑딱 놀이터, 레시피나눔 놀이터, 꿈꾸는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 교육참여 : 프로그램별 5명 ~ 48명 참가

####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III-12.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서 직장체험 연수의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 사업내용 : 도내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에게 취업연수 기회 제공  
- 연수기관 특성에 맞는 사무보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하계 방학기간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9개 기관 · 13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III-13.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초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귀농 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 현장실습
- 위 치 : 구좌, 성산, 표선, 우도
- 사업내용 :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초 신규농업인 교육,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9,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귀농귀농인 영농정착 기초 교육 : 21회 913명
-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 4명

향후 추진계획

- 계획수립 : 2월
-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신청자 모집 : 3월
- 교육추진 : 4월 ~ 11월
- 사업 평가 : 12월

### III-14.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소외·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도서관에 점자·녹음도서 발간 및 보급, 점자 정기간행물 발간 등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 서비스 지원
  - 도서관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 대 상 : 장애인을 위한 특수 도서관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지원
  -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 2개소 · 51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중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대상자 결정 및 사업비 교부 : 2016년 2월 중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추진 : 2016년 2월 ~ 12월

III-15.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위한 도서확충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 요구의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에 다양하고 특화된 점자 및 음성도서 구입 지원
  - 장애인의 독서 방법이 음성, 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에 따라 이를 보급할 복합플레이어 장비보강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위한 도서확충 지원사업
- 대 상 : 장애인을 위한 특수 도서관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6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도서 구입비 지원 : 650부

향후 추진계획

-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위한 도서확충 지원계획 수립 : 2016년 1월 중
- 소외·취약계층 도서확충 지원 사업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6년 2월 중
- 소외·취약계층 도서확충 지원 사업 추진 : 2016년 2월 ~ 5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6년 6월

### III-16.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욕구 해소 및 장애 극복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기반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5조의 2,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1식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30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중증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 10개과정 181회 2,115명
  - 난타, 음악, 영상, 풍물, 연극, 공예, 문학기초, 네일아트, 론볼 등
- 전문연극인 양성 프로그램 ‘연기 아카데미’ : 21회 145명
- 201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최 : 2015년 9. 14 ~ 9. 17
  - 2015 제주장애인 연극제(4개팀), 희망나눔 모음전(60개 작품)
  -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5개팀), 체험부스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공모 절차 이행 및 대상사업 선정: 2016년 1월 ~ 2월
- 사업 추진: 2016년 3월 ~ 12월

### III-1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 제고

※ 사업시행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사 업 량 : 6,000명(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 제주대학교병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9,750천원(기금 50%, 지방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3,776명

향후 추진계획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 : 2016년 1월 ~ 12월

**III-18.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시행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도내 응급의료기관 7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48,000천원(기금 100%)

2015년 주요성과

-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의료기관(7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19.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한 건전사회육성 도모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사업
- 사 업 량 : 1식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사 업 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추진
  - 국제사회복지연구소 : 청소년 교육 실시(도내 초·중·고등학교) : 65회 2,000명

#### 향후 추진계획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사업 추진 : 2016년 1월 ~ 12월

### III-20.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접근 가능하고 예방가능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

※ 사업시행 근거 :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 사 업 량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환자 9,832명
- 사업내용 : 교육 및 상담, 치료일정 및 누락일정 안내
- 총사업비 : 2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서귀포지역 3개보건소 관계자와 회의 1회
- 제주대학교병원 협약체결 : 2015. 10. 1

향후 추진계획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추진 : 2016년 1월 ~ 12월

### III-21.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및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통해 에이즈 감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감염 예방
- ※ 사업시행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23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업량 : 청소년 등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1식
- 사업내용 : 청소년 등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홍보사업 위탁에 따른 부담금
- 총사업비 : 2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에이즈 예방 교육 148회 4,520명, 예방 홍보 캠페인 2회 600명
- 홍보물 (리플렛 등) 제작 배포 등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등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홍보사업 위탁 운영 : 2016년 1월

### III-22.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나눔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나눔교육 추진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및 제3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고승화)
- 총사업비 : 총 30,000천원
- 사업내용 : 희망나눔 교육사업 운영

2015년 주요성과

- 희망나눔교육사업 추진 : 연 345회 7,146명

향후 추진계획

- 희망나눔 교육사업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23. 귀농귀촌교육 현장 실습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 및 귀농희망자에게 지역 선도농업인 연계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내
- 사 업 량 : 귀농 영농현장 실습지원 8명(선도농가 4명, 실습생4명)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24,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귀농귀촌대상자 선도농가 연수 : 2015년 5 ~ 11월, 8명(선도농가 4명, 귀농실습생 4명)
- 귀농귀촌대상자 월1회 연찬회 및 평가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연수생과 선도농가 네트워크 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자율 모임체 운영 지도
-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 지원 사업 실시 : 8명

### III-24. 여성 전문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숨은 재능을 재발견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도민의 만족도 제고 및 긍정적 공감대 형성
- 다양한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소통 공간 형성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량 : 70개 과정 - 3,5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여성전문교육 운영 : 71개과정, 3,406명
  - 외국어분야 : 6개 · 293명(영어, 중국어 등)
  - 자격증분야 : 16개·442명(바리스타, 자기주도학습, 플라워자격증 등)
  - 직업능력개발 : 6개 · 159명(의류수선반, 도배, 성교육강사양성과정 등)
  - 취미&생활교육분야 : 17개 · 1,469명(포토샵, 수제쿠키, 경제토크 등)
  - 주말&찾아가는교육 : 11개 · 529명(샌드위치&샐러드(주말), 북아트우리문화재(주말), 찾아가는 성평등역량강화, 찾아가는 장애인웰빙요리 등)
  - 야간교육분야 : 15개 · 514명(중국어, 쉽게만드는 간단요리, 부동산이론 및 실무, 블로그&트위터, 알기쉬운경제이야기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연간 교육운영계획 홈페이지 게시 : 1월초
- 연간교육운영계획에 의거 월별 교육 추진
  - 강사 위촉 및 강의계획서 작성 : 매월
  - 강의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및 인터넷 접수 시행 : 매월
-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 12월

### III-25. 생활체감형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생활체감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미래의 여성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내여성 200여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5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체감형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26. 귀어귀촌 교육 및 훈련

#### 사업의 필요성

- 귀어·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어업기술과 어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귀어·귀촌교육 및 훈련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업량 : 귀어귀촌 교육 100명 교육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선정(9명) : 2015년 8월
- 2015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지원 : 2015년 8월 ~ 12월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귀어·귀촌 교육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016년 귀어·귀촌 교육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2016년 2월
- 2016년 귀어·귀촌 교육실시(3회) : 2016년 3월 ~ 12월
- 2016년 귀어·귀촌 교육 보조금 정산 : 2017년 1월

### III-27. 어선안전조업 체험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연안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증가 추세로 어선안전사고 자주 발생
- 조업중 어선화재, 기상악화 및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어선사고 발생으로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선안전조업 체험 교육
- 사 업 량 : 1개소(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어선안전 체험교육 : 22백만원 · 558명 참여
- 어선 화재예방 체험교육 : 26백만원 · 150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사업자 선정 : 2016년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년 3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년 12월

### III-28.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 실시
  - 질병관리 능력 함양 및 위생의식 제고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 위 치 : 도내 수산생물양식시설
- 사 업 량 : 양식어업인 500여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5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교육실적 : 20백만원 · 433명 교육이수

#### 향후 추진계획

-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시행 : 2016년 3월 ~ 2016년 5월

### III-29.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 대상 강력 범죄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전 범죄예방 대처 미흡
  -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고취를 위해 도민 성인권 교육 실시
  -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인구 10만명당 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지역이 가장 높음” (\* 전국 58.9, 제주 86.1)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사업개요

- 건 명 :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 사 업 량 : 43개 읍면동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0.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된 무장애 디자인 도시기반 시설 지원
- 공공시설,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를 통해 범죄발생 근원적 차단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사 업 량 : 6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2016년 1월 ~ 12월

### III-31.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사업의 필요성

-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제주지역은 남성권위주의, 가부장적 의식이 잔존

-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남성 권위적 인식 대물림
-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사업개요

- 건 명 :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 사 업 량 : 성장단계별 교재 제작, 전문강사 양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 2016년 1월 ~ 12월

### III-32.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중간관리자 및 오피니언 리더그룹 등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 리더가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역량, 가치와 윤리 등 교육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인재 아카데미
- 사업대상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여성단체 등 중간관리자, 청년여성 등
- 사 업 량 : 매월 1회(7h)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실시: 5회, 130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3.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지도자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배양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사업주체 : 언론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공모사업)
- 사업량 : 3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제20회 도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 개최: 2015. 11. 3
- 제2회 제주여성리더십포럼 개최: 2015. 11. 9
- 2015 여성활동가 중간지도력 강화 워크숍 : 2015. 11 28 ~ 29

#### 향후 추진계획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공모 및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4. 전문교육 기관과 MOU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이전 및 투자수요에 맞는 전문교육 프로그램(IT, BT, 등) 타지역 전문 교육 기관과의 MOU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건 명 : 투자기업과 연계한 전문교육 기관과의 MOU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2개기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전문교육 기관과의 MOU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5.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성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도모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 대처 능력 함양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및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사업개요

- 건 명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 사업량 : 초등학교 10개소 6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 1개소 · 20,000천원
  - 운영기관 : 제주여성상담소(성폭력상담소)
  - 교육실시 현황 : 11개 초등학교 · 24학급 · 540명
  - 성인권교육 강사 모임 : 3회(교육계획서 및 교안작성 등)
  - 성인권교육 강사 워크숍 : 9월 매주 목요일 14:00-17:00

향후 추진계획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6.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여성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안전프로그램 지원
- 사 업 량 : 2개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사업 및 아동안전 지도 제작)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45,296천원 (국비 50%, 도비 50 %)

#### 2015년 주요성과

- 지역안전 프로그램(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 지역내 위험환경 등 주.야간 모니터링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초등학교 30개 학교 608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안전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7.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전문강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서울 소재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시간과 비용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도내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추진하여 교육 실시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 사 업 량 : 1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道·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2015년 5월 12일
-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 : 2015년 7월~8월
  - 교육수행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교육대상 40명, 교육과정 4단계 총 60시간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교육 후 중앙 전문강사 자격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38.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느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인권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100%)

#### 2015년 주요성과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비용 지원 : 30,000천원
  - 성인권교육 강사 워크숍 개최(1회)
  - 특수학교 등 대상 교육 실시(10회)

향후 추진계획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 : 2016년 1월 ~ 12월

III-39. 아동 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인식개선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아동·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8,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운영기관 공모 모집 : 2015. 1. 15 ~ 1. 30
- 운영기관 선정 심사 : 2015. 2. 16(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 선정)
- 일반 도민(중소상공인, 농수산업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45회 1,589명)

향후 추진계획

- 아동·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 운영지원 : 2016년 1월 ~ 12월

III-4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사 업 량 : 120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6개기관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86회 · 2,417명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방문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40명 교육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2016년 1월 ~ 12월

III-41.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각종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가족 기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어 가족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맞벌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양육 부담은 여성에게 편중, 남성들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 아버지학교 10회, 가족학교 10회
  - (2016년)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기업 등 → ('17년) 민간기업, 지역사회 확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아버지학교 운영 : 도, 행정시 소속 남성공무원 대상 2회 65명

향후 추진계획

-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42.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제주) 문화 이해교육 필요
-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거주 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기타 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주·야간, 주말 한국어 및 문화교실 운영
- 사업기간 : 연 2학기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주이주민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 한국어, 한국문화이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족통합교육, 상담활동 등
- ※ 외국인 주민 : 19,903명(2015. 1. 1 기준 외국인주민통계)

향후 추진계획

- 거주 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43.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 업 량 : 1회당 6개월 지원(주4일, 3일제) / 언어발달지도사 2명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언어발달지도사 5명 배치 : 43명 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2016년 1월 ~ 12월

### III-44.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간 관계강화 및 자녀의 정체성, 사회성 발달 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가정 기틀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사 업 량 : 2건
- 사업내용 :
  -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 부모를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 50,000천원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 50,000천원

(학령기 전 예비 학부모 교육, 문화간 자녀 양육방식 차이 이해)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지원 : 2016년 1월 ~ 12월

**III-45.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예비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전공필수과목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향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다문화 편견해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생 분위기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육대학교 다문화 이해과목 전공필수화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교육대학교 다문화 이해과목 전공필수화 사업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이해교육사업 지원 : 2016년 1월 ~ 12월

### Ⅲ-46.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 이질감, 언어문제 등으로 입국 후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문화·역사·언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다문화가족 문화, 역사, 언어교육 : 30,000천원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37,5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Ⅲ-47.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들의 재혼으로 인한 중도입국 자녀와 지역사회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교이탈 자녀에 대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아 실현 및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비행예방 문제 해소를 위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 직업체험교육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중도입국 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0,000천원
  - 참여인원 : 60명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등

향후 추진계획

-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48.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적응 및 직업준비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 통일안보 의식함양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내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 이탈주민의 소외감 해소, 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센터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교류사업

2015년 주요성과

- 2015. 7. 4 : 2015년 하나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 2015년 1월 ~ 9월. :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행
- 2016년 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 III-49.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5개소(1,1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9,524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추진(5개 기관) : 2,374명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6년 2월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2016년 3월 ~ 12월

### III-50.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 사업개요

- 건 명 :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2개소(48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4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추진(2개소) : 392명

#### 향후 추진계획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6년 2월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2016년 3월 ~ 12월

### III-51.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사업개요

- 건 명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1개소(6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25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결혼이민자 집합정보화교육 추진 : 91명

향후 추진계획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6년 2월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2016년 3월 ~ 12월

### III-52.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의 필요성

- 농업, 농촌 자원을 학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 가능한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
- 농촌체험 학습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가치 확산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육성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국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2010년 ~ 2015년도 교육농장 육성 :10개소
  - 교육장 조성 및 기자재 구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농촌교육농장 교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 기초 및 심화과정

향후 추진계획

-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 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및 시설보완
- 교육농장 실정에 맞는 초, 중, 고 학년별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 교육농장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III-53. 찾아가는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착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 등 독특한 제주생활문화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적응에 어려움
- 농촌지역 대상, 제주 이해하기 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심리적 괴리감 해소 등 상호 소통 증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15개 읍·면·동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읍·면·동 의견수렴 : 2016년 1월
- 프로그램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6년 2월
- 찾아가는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2월 ~ 12월

III-54.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동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실현과 역량 있는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지원(이동서비스 지원)
- 위 치 : 제주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사 업 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중증장애인 평생학습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III-55. 『실버선생님』 노인일자리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자긍심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65세 이상 노인 중 교육참여가 가능한 자 60여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방학기간 제외 9개월)
- 총사업비 : 108,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2월 실버선생님 일자리사업 모집
- 2015년 3월 실버선생님 일자리사업 시행 및 매월 인건비 지급

향후 추진계획

- 실버선생님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16년 2월
- 실버선생님 발대식 및 사업시행 : 2016년 3월

### III-56. 『실버선생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자긍심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65세 이상 노인 중 활동이 가능한 참여희망자 60여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방학기간 제외 9개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2월 : 실버선생님 참여자 모집
- 2015년 3월 : 실버선생님 일자리사업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실버선생님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16년 2월
- 실버선생님 발대식 및 사업시행 : 2016년 3월

### III-57.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4개소)

####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교양, 오락 등 배움의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운영에 필요한 교육교재, 강사료 등 필요경비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 (노인대학 3개소, 대학원 1개소)
  - 제주시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 제주시노인대학원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월 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보조금 교부

향후 추진계획

-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보조금 교부 : 2016년 1월

### III-58.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운영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전담관리자 2명
- 주요 사업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파악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만족도 조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56,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 ~ 3분기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별 이용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점검

### III-59.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당별 순회교육을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방안강구 및 노인복지시책 반영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175개소 경로당(295개 경로당 중 격년 실시)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 년1회 (경로당별 순회방문)
- 사업내용 :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총사업비 : 18,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2월 ~ 8월 : 120개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2015년 순회교육 미실시 경로당 대상)

## III-60.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 36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20개소 경로당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운영방법 : 주1~2회 운영
- 운영주체 : 읍·면·동별 경로당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경로당 20개소 서예, 게이트볼, 웃음치료 등 취미교실 운영
- 20개 경로당 × 개소당 / 1,000천원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수요과약 및 선정 : 2016년 1월~2월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지원 : 2016년 3월 중

### III-61. 노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양, 오락 등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32조

사업개요

- 사업량 : 14개소 노인교실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운영 프로그램 : 일반교양, 건강강좌, 지역경제, 시사상식, 취미생활 등
- 운영방법 : 주 1회 이상 / 1일 2시간
- 총사업비 : 67,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3월 : 노인교실 13개소 59,800천원 지원(개소당 4,6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노인교실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중
-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2016년 3월 중

### III-62.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지원

#### 사업의 필요성

-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인들의 사회학습체험을 통해 심신단련과 삶의 의욕 고취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부여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타 지방의 문화체험 및 선진 기술업체 탐방
- 주 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10월말 기준 : 지체장애인 사회학습체험 70명

#### 향후 추진계획

-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며 사회학습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체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기여

### III-63.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통해 농아인과 일반인 간의 사회통합 기반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실시
- 주 관 : 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 III-64.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들의 교육함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대학로 102(아라1동)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 업 량 : 여성대학 수강생 8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총사업비 : 3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여성대학 운영 : 3월 ~ 12월(주 1회, 34주), 수강인원 80명, 리더쉽, 역사문화 교육 등

향후 추진계획

- 여성대학 계획수립 및 모집 : 2016년 1월 ~ 2월
- 여성대학 운영 : 2016년 3월 ~ 12월

### III-65. 여성단체능력개발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제51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1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단체능력개발사업
- 사업량 : 여성단체 능력개발 5개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5개 사업, 13,000천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 2016년 1월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2016년 2월
-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 2016년 3월 ~ 12월

### III-66.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수학생 및 성폭력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교육 파견 의뢰가 증가하여 장애인 특성상 반복과 지속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전담 운영체계 절실히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 사업량 :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비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총사업비 : 8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지원 : 1개소, 80,000천원 지원
  - 주요실적 : 68개 기관, 1,104회기, 5,068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III-67.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비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 사 업 량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18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200천원(국 50% : 도 50%)

2015년 주요성과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 10개소 18명 10,19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화된 보수교육 지원

### III-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158,144천원(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로써의 센터 기능 강화
- 읍·면지역단체(읍사무소, 리사무소 등)와 연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사업 확대

### III-69.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6호

사업개요

- 건 명 : 한국어교육 운영
- 사 업 량 : 한국어교육 운영비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22,162천원(국 70%, 도 30%)

2015년 주요성과

- 집행실적 : 16,356천원
  - 한국어교육 155명(정규과정 4단계, 심화과정) 교육 참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사업홍보 및 신청자 모집

### III-70.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결혼이주여성을 관광통역안내사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 제3항

#### 사업개요

- 건 명 :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 사 업 량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취득 교육 1개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프로그램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교육 운영 : 10,000천원, 82명 교육
- \* 자격증취득 : 5명

#### 향후 추진계획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연계한 관광통역 실무교육 실시

### III-7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33%이며 한국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 ,3호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1개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프로그램 운영비 10,000천원 지원, 한국어교육 160명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 III-72.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제주의 문화·역사 바로 알기 및 환경교실 운영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2호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사업
- 사업량 :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6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프로그램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사업 계획서 접수 및 보조사업자 선정 : 2016년 3월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 연중

### III-73.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교직원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 2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사 업 량 : 보육교직원 7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700명 10,000천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6년 7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년 7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 2016년 7월 ~ 12월

### III-74.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사 업 량 : 1개소(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150천원(국 50%, 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20개 프로그램 · 25,650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III-75. 언어발달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1조

사업개요

- 건 명 : 언어발달지원 사업
- 사 업 량 : 3명
- 사업기간 : 2016년1월~2016년12월
- 총사업비 : 6,480천원(국비 70%, 도비 30%)

2015년 주요성과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9명 · 12,051천원

향후 추진계획

- 매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 비장애아동 신청 접수 및 확정

### III-76. 추자면 도서지역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추자면 관내 응급환자를 해경경비정으로 후송시 경비정 접안이 불가능한 경우 어선을 임차하여 경비정까지 이송을 하고 있어 임차료 확보가 필요하며,
- 도서지역 여성 역량강화 위한 각종 강좌가 필요하나 연도교통 불편으로 강사 초빙 등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추자면 관내
- 사업량  
-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좌 4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역량강화 프로그램 행사 추진 : 2016년 2월 ~ 12월

### III-77. 정착주민을 위한 제주 문화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타지역에서 이주한 이주 정착주민이 많아지는 추세이나 이들이 제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지역사회의 적응하기가 쉽지 않음
- 이러한 정착주민에게 제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의 이웃사촌을 형성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제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정착주민을 위한 제주 문화교실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 사업량 : 제주의 언어문화 알기(한국어(제주어)교실 운영), 제주의 자연

문화 알기(제주 오름 및 곶자왓 등), 제주의 음식문화 알기(제주 전통음식(빙떡, 김치, 장아찌 등)만들기)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총사업비 : 5,6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문화교실을 통하여 정착주민의 정착 및 지역사회 이해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III-78. 수놓음 프로젝트(솔오름공부방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동흥동 청소년에게 인성 등 향상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게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수놓음 프로젝트(솔오름공부방 운영)
- 사업량 : 솔오름공부방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 1 ~ 2016년 12. 31
- 총사업비 : 1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솔오름 공부방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운영 : 2016년 3월 ~ 11월

**III-79.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수행 및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 경로당 지원기준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사 업 량 : 관내 경로당 25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800천원 범위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경로당 취미교실 보조금 지원(20,000천원) : 2015년 2월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28개소, 11,253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취미교실 프로그램 수요조사 : 2016년 1월
-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신청접수 및 선정 : 2016년 2월
- 취미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6년 3월 ~ 2016년 10월

### III-80. 경로당 충효한문교실 운영 및 입교생 학습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방학기간 중 경로당에서 지역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문 및 전통예절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및 전통미풍 양속 계승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호(노인 건강. 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도 경로당 지원기준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충효한문교실 운영 및 입교생 생활학습비 지원
- 사 업 량 :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 10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500천원 ~ 연 1,000천원 (참여인원별 차등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충효한문교실 운영 지원 : 6개소, 10,57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충효한문교실 지방보조금 공모 실시 : 2016년 5월, 10월
- 충효한문교실 운영 지원 및 사업 실시 : 2016년 7 ~ 8월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III-8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투입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로당 프로그램 질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호(노인 건강. 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사업개요

- 인 명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 사 업 량 : 1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 1명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 및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II-82.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숙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지원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조속한 사회복지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 건 명 :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서홍동)/ 서귀포시 사랑원
- 사 업 량 : 노숙인 재활시설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노숙인 재활시설 생활인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

### III-83.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사 업 량 : 4개 분야 장애인역량강화 사업
- 지원내용 : 수화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2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청각장애인 자막입력 영상물 보급 및 정보화 교육, 수화교육 등 지원 : 9,2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지속 추진

### III-84. 여성역량강화 실시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 여성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 여성의 눈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모니터링하고 여성이 이끄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역량 강화 사업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나눔활동 전개
- 2016년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추진 : 1회 / 150명
- 2015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1회 / 150명
- 국내 자매도시 여성지도자와의 교류사업 추진 : 10월~11월 /20명

향후 추진계획

-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나눔활동 전개 등 역량강화사업 지속 추진

### III-85.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리더십, 문화, 관광, 역사,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함양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 기본법 제27조 1항

사업개요

- 사업량 : 서귀포시 거주 여성 120명 / 20주 운영 (강의 19, 현장체험 1)
- 사업기간 : 2016년 2. ~ 11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 총 114명, 20주 운영,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 욕구 중심 강좌 재구성 및 수준 높은 학습을 통한 만족도 향상

### III-86. 한국어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한국어교육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업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 ~ 12.
- 총사업비 : 22,162천원 (국 70%, 도 30%)

2015년 주요성과

- 정규과정(1~3단계) : 119명,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 13명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심화과정 및 중도입국자녀과정 교육 운영

### III-87.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귀포시 외곽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 ~ 12.
- 총사업비 : 26,9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38명,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 지원 : 30명
- 운전면허 취득지원 20명, 결혼이민자 및 자녀 작명서비스 28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발굴 운영

### III-88.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의 해소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정해체방지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다문화가족 자녀인성교육 : 113명 · 7,000천원
-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관리사업 : 53명 · 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운영

### III-89.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대상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정착률 제고 및 초기 정착과정의 어려움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추진
- 대 상 : 2011. 1. 1일 이후 서귀포시로 전입 온 귀농귀촌인
- 기 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2,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귀농귀촌 기본교육 과정 운영 : 2회 · 4개반 · 240시간 · 267명 교육
- 귀농귀촌 심화 및 창업연계 과정 운영 : 17개 과정 · 878시간 · 558명 교육

향후 추진계획

-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각 교육 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대상자 확정 : 연중
- 교육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III-90.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을 통해 정규학력 미취득 성인·결혼이주민에게 학습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 업 량 : 학력보완교육(주5회/10개월/5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 중입 11, 고입 29명, 고졸과정 21  
- 합격자 : 26명 (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14명)

####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년 12월

### III-91. 여성문화 교육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시대에 맞춘 여성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문화 교육운영 강사수당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7개분야 90개 과정 2,8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74,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여성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24개 과목 2,100명, 150,000천원 집행 (10월말)
- 평생학습관 강사 직무교육 및 동아리 워크숍 운영 : 연1회
- 동아리 특별교육운영(상·하반기, 총4개월) : 8개 동아리 12개 과정 183명

##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 설문조사 분석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 2016년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015년 12월
- 2016년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6년 연중

##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IV-1.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부족으로 경제교육 효과가 미미하여
- 경제교육센터가 주관이 되어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민, 청소년, 교사,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 추진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5,000천원(국가직접 110,000, 자체재원 55,000)

#### 2015년 주요성과

- 경제교육 추진실적 : 106회 · 1,683명
  - 학생(21회 657명), 취약계층(85회 1,026명)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등 대상 경제교육 추진(연중)

## IV-2. 사회적경제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전국 세미나, 교육참석 지원으로 기업대표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 전국 및 지역단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박람회 참석을 통한 제품 홍보 강화

※ 사업시행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 제1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세미나 및 교육, 제품 전시·박람회 행사 참석 지원 1석

-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2016년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강화 지속추진(교육 및 세미나, 견학 등)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연중 홍보강화(전시·박람회 참가)

### IV-3. 노사문제 상담활동 및 협상기법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단위노조별 교육담당자 교육을 통한 조합원 자질 향상을 통한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사업장별 대안제시 및 해병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 사업시행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섭 협상기법 교육, 단위노조 교육담당자 업무교육
- 지원대상 : 도내 노동단체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12월
- 2016년 총사업비 : 18,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5년 6월 ~ 12월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사업공모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2016년 4월 ~ 5월)
- 2016년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2016년 6월 ~ 12월)

#### IV-4.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사업의 필요성

- 농촌교육농장, 농가소규모 수제품사업장 등 제주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장의 주체로 제주농업의 다원적 가치 제고 및 공동브랜드 「수다뜰」 활성화
- 농촌 자원 발굴과 소비층에 걸맞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수요창출

#####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6회 3,0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26,9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6차산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 및 교육 : 14회

##### 향후 추진계획

-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2,3차인 가공, 체험, 유통, 판매 중심의 일관 시스템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직거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 조성

#### IV-5. 4-H 3대 교육행사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청소년 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공
- 청소년들이 4-H이념을 바탕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는 교육행사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4-H회 3대 교육행사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32개사업(4-H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4-H 도 아영대회 추진 : 494명 참석, 4-H이념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제고
- 학교 4-H 과제활동 참가 발표 :13명 참석, 나의 꿈 말하기 경진 등 2개분야 수상

향후 추진계획

- 중앙4-H 경진대회 참가 : 300명
- 영농4-H회원대상 역량강화 및 의식제고 교육 : 2회

IV-6. 4-H본부 워크숍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

- 4-H 본부 회원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지원으로 4-H단체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4에치활동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4-H본부회원 워크숍 및 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도4-H본부 이사회 및 워크숍 : 1회 49명
- 4-H연합회 임원교육 및 탐방활동 : 50명
- 4-H청소년 교육발전토론회 및 한국4-H본부 시도별 순회교육 : 2회 100명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4-H 본부 회원강화 교육 회원 한마음대회 개최 : 2016년 11월

IV-7.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도민으로서 청정제주의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1차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도민들에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사회 활동 참여 및 평생학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과정 1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1996년~2014년) : 19기 1,963명 수료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민그린대학 운영 업무협약 체결 : 2015년 3월
- 2015년 제20기 시민그린대학과정 운영(2015년 3월 ~ 12월) : 50명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과정 100명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교육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3월 ~ 11월

IV-8.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사업의 필요성

-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급식관계자 및 농업인 전문 리더를 육성하여 우리 쌀 소비량을 확대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10회, 35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메밀쌀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교육 : 4회

향후 추진계획

- 우리 쌀 및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류를 활용한 식품가공 기술교육 확대 및 교재 제작 보급

#### IV-9. 4-H도본부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한 4-H본부회원 육성으로 청년 4-H회 활성화 기반조성
  -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농업인력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

사업개요

- 건 명 : 도 4-H 본부 육성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0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4-H 연합회 워크숍 및 6차산업 현장 견학 등 : 2회 45명
- 4-H 본부회원 중앙단위 연찬 및 교육참가 지원 : 35명

향후 추진계획

- 영농4-H워크숍 및 4-H 본부 여성회원 교육 등 : 10회

IV-10. 미술관 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의 문화수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예술(미술)감성과 창의력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미술관 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 사 업 량 : 도민 15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7월
- 사업내용 : 미술장르별로 대중적 이론 강좌, 미술관 및 문화시설 답사
- 총사업비 : 52,000천원(도비 50,000)

2015년 주요성과

- 제3기 미술관 대학 운영 : 180명 정원, 87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제4기 미술관 대학 운영계획 마련 : 2016년 1월
- 수강생 모집공고 및 대상자 확정 : 2016년 2월
- 제4기 미술관 대학 운영 : 2016년 3월 ~ 7월

IV-11. 돌문화공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중 문화공간 육성
- 수준 높은 기획전시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박물관의 문화 전파 및 교육적 기능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돌문화공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돌문화공원
- 사업내용 :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바로알기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 공익성을 강화한 각종 강좌 및 체험,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전통공예, 토요문화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38회 운영 / 592명 참여
  - 정시에 떠나는 지질여행 With 학예사 8회/60명
  -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형극 및 한지부채 만들기) 4회/150명
  - 전통공예 배우기 5회/45명
  - 감물염색 및 갈방석 만들기 3회/82명
  - 감자 캐기 및 감자 구워먹기 체험 4회/104명
  - 돌하르방 따라 그리기 및 찰흙 돌하르방 만들기 2회/54명
  - 캘리그래피 체험 3회/36명
  - 수묵화 체험 4회/36명
  - 제주옹기 만들기 5회/25명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상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1월
- 2016년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6월
- 2016년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평가 : 12월

IV-12. 제7기 탐라종묘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굴함으로서 제주 전통문화전승보급을 위한 탐라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사회교육과정 개설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도 문화재보호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2016년 탐라문화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 주관단체 : (재)탐라종묘문화재단(이사장 고시홍)
- 사업량 : 도민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1식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도비 50%, 자부담 50%)

2015년 주요성과

- 탐라문화아카데미 제1기~제6기 운영(27강좌) : 2010년 ~ 2015년

향후 추진계획

- 탐라문화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016년 2월
- 2016년 탐라문화아카데미 운영 : 2016년 3월~12월

#### IV-13. 제주도민의 국어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의 국어 향상을 위한 국어 문화 교육
  - 입시 위주의 교육, 외국어교육 강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통신 언어, 비속어 사용 등으로 인해 갈수록 도민들의 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어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어문 규범의 잘못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공무원, 신문기사, 방송자막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발견되고 있어 도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은 도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우리말의 우수성 등을 알리기 위해 국어문화학교 등을 운영하는 데 앞장서야 함

※ 사업시행 근거 : 국어진흥조례 제20조

사업개요

- 기 간: 2016년 1월~12월
- 장 소: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각부서, 인재개발원 등
- 사업주관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사업 내용

- 제주도민의 국어 향상을 위한 어문 규정 교육(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띄어쓰기 등)
- 국어문화교육(세종대왕과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 원리와 의의, 우리말의 현실, 아름다운 우리말 등)
- 올바른 문장 쓰기(보도자료 작성법, 공문서 바로 쓰기, 언어순화와 언어 예절, 행정용어 바꾸기 등)
- 국어문화학교는 도민 대상 수강생을 모집해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공무원 등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어 학교’ 운영
- 한글날 기념 국어문화 관련 특별 강의

○ 총사업비: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07년 ~ 2014년 국어문화학교
- 2007년 ~ 현재, 동려평생학습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진행
- 2007년 ~ 현재, 국어 및 제주어 상담, 올바른 문장 쓰기, 문화재 안내판 바로 쓰기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국어 교육
- 한글날 기념 국어 문화 특강 등

#### IV-14.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생활친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 발전 도모
- 작은도서관 사서간의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역량 강화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 대 상 : 사립 작은도서관 20개소 및 관련 협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 2016년 1월 중
- 지원 사업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6년 2월 중
-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6년 3월 ~ 12월

#### IV-15.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과정 공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2010년 12월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의 언어(4단계)로 분류되면서 제주어 사용 인구 확대를 통한 보전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제주어 능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과정 공모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40명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9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주도내 초중 등 교사 및 일반인 대상 제주어 교육 : 50명(농어업인회관등)  
- 제주어표기법, 제주어 표현 및 이해하기 등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가 과정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 : 2016년 1월중
-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가 과정 운영 : 2016년 2월 ~ 12월

## IV-16.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공모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일상생활에 제주어 사용 활성화를 통한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어 학교를 개설하여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제주어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전 활성화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업량 : 제주도민 (제주어 교육 희망자) 30명
- 내 용 : 의식주로 배우는 제주어, 속담 및 세시풍속으로 배우는 제주어 등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운영 : 30명  
- 제주어의 이해, 의식주 생활로 배우는 제주어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사업계획 보조사업자 공모 : 2016년 3월 중
-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운영 : 2016년 3월 ~ 10월

## IV-17. 제주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학교·문화시설·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 교육정책과 연계한 예술교육 자원 확보
  -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제11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0조.제11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주 관 : 제주문화예술교육센터(제주문화예술재단)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제주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2009. 2. 25(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 3개 프로그램
  - 인문학아카데미(4회), 샤푸팅 인문학 콘서트(1회, 120명)
  - 문화예술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6개과정, 100명)
- 아트리치 자율연구모임 지원(5개 단체) 및 예술강사 워킹그룹 운영(5회)
- 도 교육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꿈·드림」 운영
  - 프로그램 지원 : 3개교/3단체, 예술강사 파견 : 5개교/7명

향후 추진계획

- 지역센터, 지자체, 교육청 관계자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육성
- 문화예술 교육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IV-18.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2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취약계층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주 관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제주문화예술재단)
- 총사업비 : 19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제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워크숍(4회) 및 모니터링(12회): 2015년 2월 ~ 8월
- 201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11개 사업 190,000천원
  - 세대간 소통 힐링 프로젝트, 동네길 여행기, 설화와 함께하는 놀이극 등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사업 평가 워크숍 개최 및 사업별 컨설팅 추진
- 2016년 사업자 공모 및 심사, 사업 선정, 사업 추진

#### IV-19. 제3회 탐라선비 문화학교

사업의 필요성

- 선비문화학교 학습 체험을 통한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윤리규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국제자유도시를 살아가는 도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39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3회 탐라선비 문화학교
- 사업주관 : 성균관유도회제주특별자치도본부(회장 박병화)
- 사업량 : 향교 제례, 논어 경전 읽기 등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6,700천원(도비 90%, 자부담 10%)

2015년 주요성과

- 탐라선비 문화학교 운영 : 2015년 3월 ~ 12월

향후 추진계획

- 탐라선비 문화학교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2016년 1월 ~ 2월
- 도민을 대상으로 한 탐라선비 문화학교 개강 : 2016년 3월 ~ 12월

## IV-20. 박물관 제주학 강좌

###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에게 유구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제주역사·문화의 이해와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김만덕기념관(객주터 재현)과 구도심을 연계한 문화의거리 체험탐방, 탐라 순력도 체험기행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전통과 자연을 이해하는 시민강좌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건 명 : 박물관 제주학 강좌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 사 업 량 : 제주학 강좌 14회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1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박물관 제주학 강좌 : 10개 과정 총53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일반 도민들이 박물관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
-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제주 역사·자연 교육으로 발전

## IV-21 보훈복지문화대학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국가유공상이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다양한 여가 선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지식, 교양, 문화 등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3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 및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 1~2016년 12. 31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보훈복지문화대학 3기 : 65명 입학

### 향후 추진계획

-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V-22. 나라사랑 안보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및 국가관과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주특별  
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특수임무유공자회원및유가족, 일반인, 청소년 안보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1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나라사랑 안보교육 도교육청과 MOU체결 : 2010.12.30
- 2011년~2015년 대기고, 중앙여고 외 100여개 학교, 5,000여명 안보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나라사랑 안보교육 운영 : 2016년 5월 ~ 11월

IV-23.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남북관계 현안을 파악하고 호국안보의식을 함양하며, 이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나라사랑시민 육성
- 지역사회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와 호국안보의지 확산을 위하여 각 지역, 대상별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나라사랑 교육 행사 1식
- 사업기간 : 2016년 3월 1일 ~ 12월 20일(50회내)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9. 12. 제2회 나라사랑 체험한마당 개최

향후 추진계획

- 나라사랑 교육 운영 : 2016년 3월 ~ 12월

IV-24. 도민학습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걸맞는 다양한 도민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소양 함양과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학습교육 운영
- 사 업 량 : 퍼실리테이터양성과정 교육 등 17개과정 · 19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2015. 9. 8 : 인재개발원 직원 워크숍 개최  
- 2016년 사회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토론
- 2015년 : 18개과정 · 116회 · 3,130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2월 중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 : 연중

#### IV-25. 도민사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국·도정시책 및 친절과정 교육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계기 마련으로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사회교육 운영 강사수당
- 사 업 량 : 재외도민향토학교, 국·도정시책 교육 등 38개과정·58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3,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9. 8 : 인재개발원 직원 워크숍 개최  
· 2016년 사회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토론
- 2015년 10월 현재 : 18개과정 · 175회 · 12,169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2월 중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연중

IV-26. 제주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국내외 정보 습득과 제주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토론과 과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리더스 아카데미과정 위탁교육
- 위 치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 업 량 : 1개과정 · 60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1기 제주 리더스 아카데미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15년 3 ~ 12월
  - 교육인원 : 59명
  - 교육운영 : 1년과정 · 60강좌
    - 1년과정 × 15주 × 2강좌 × 2학기 = 60강좌(120시간)
    - 현장체험(2회) 및 세미나 발표 등(20시간)

향후 추진계획

- 제주리더스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년 2월
-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추진 : 2016년 3월 ~ 12월

## IV-27. 도민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친절강사에 의한 CS 스킬위주의 교육에서 친절에 대한 의식변화 위주의 친절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친절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 사 업 량 : 교육 프로그램 개발 1식, 50회 순회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추진방법 : 위탁교육
- 총사업비 : 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9. 8 : 인재개발원 직원 워크숍 개최  
- 2016년 사회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토론
- 2015년 : 15개과정 51회 · 14,918명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2월
- 공기관대행 위탁기관 선정 및 콘텐츠 개발 교육 : 2016년 3월~12월

## IV-28. 수준별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인적기반 구축과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건 명 : 수준별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비
- 사 업 량 :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영어·일본어, 러시아어과정 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97,4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상하반기 지역별(제주시, 서귀포시)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과정 운영  
· 도내 6개 어학원 위탁 : 14과정 · 26회 · 374명 수료(10월말)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외국어 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실시 : 2016년 1월

#### IV-29.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관광업종사 도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기초회화 과정을 통한 중국관광객의 불편사항인 언어장벽 해소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 사 업 량 : 교육인원 3,3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운영(위탁) 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하여 「맞춤형 중국어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중국어배움터」 2가지 형태로 운영 및 지원하고 있음
- 추진내용 : 5,220명 수료(10월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계약 : 2016년 1월
- 2016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추진 : 2016년 2월 ~12월

## IV-30. 찾아가는 중국어 배움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급증추세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용태세 확립과 중국어 회화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중국어 배움터 운영
- 사 업 량 : 20강좌 · 400명(도 · 행정시 직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총사업비 : 28,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상반기 178명 수료 · 하반기 187명 수료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교육 수요조사 및 세부 교육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IV-31. 도민정보화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도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정보화 역량 배양

###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정보화교육
- 사 업 량 : 도민정보화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8,03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 도민정보화 교육 실적 : 46회 · 946명 수료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교육결과 분석 및 2016년 도민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 2015년 12월
- 도민정보센터 정보화 교육 운영 : 2016년 1월

IV-32.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개념의 숲길 생태체험을 통해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자연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사업개요

- 건 명 :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 숲길)
- 위 치 : 조천읍 교래리 ~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한남리
- 사 업 량 :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5월 ~ 6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제7회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
  - 기 간 : 2015. 6. 23 ~ 6. 6(15일간)
  - 장 소 : 사려니 숲길 15km
  - 예 산 액 : 190,000천원
  - 참여인원 : 45,951명
  - 주 최 : 사려니숲길위원회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매년 행사를 추진 함으로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및 소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문화 체험행사 개최

### IV-33.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탐방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높은 산림서비스 실천
- 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라생태숲 홍보기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생태숲지정·관리지침 제9조(생태숲의 관리)

#### 사업개요

- 건 명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 한라생태숲
- 사업내용 : 상시해설프로그램(4회/일), 주말 숲체험프로그램(2회/월), 특별 기획프로그램(어린이날(5. 5), 건강백세숲(5월중 1일), 여름생태 학교(8월중 3일))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 702회 9,881명
  - 상시 숲체험프로그램 : 687회 9,146명
  - 주말 숲체험프로그램 : 12회 413명
  - 어린이날 특별기획 프로그램(5월) : 1회 135명
  - 노인대상 특별기획 프로그램(5월) : 1회 28명
  - 여름생태학교 운영(8월) : 3일/1회 159명

####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탐방계층을 고려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 IV-34. 감성과 나눔이 있는 열정문화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예술교육 욕구 충족
-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예술활동의 참여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량 : 40개 과정 · 2,30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문화예술분야 : 10개과정 · 351명(왕초보 플루트, 수채화, 신명나는 제주민요 등)
- 인문교양분야 : 7개과정 · 748명(인문학 특강, 찾아가는 문화스쿨 등)
- 주말교육분야 : 9개과정 · 977명(온가족 전래놀이, 자연물만들기 체험 등)
- 야간교육분야 : 11개과정 · 344명(드로잉, 기타, 마술, 아빠요리 등)
- 2016 문화교육 연간계획 수립 : 12월

향후 추진계획

- 열정 문화교육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V-35.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탐방 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 마련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유산지역 활성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사업개요

- 건 명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탐방 체험 프로그램
- 위 치 :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 사업량 : 세계자연유산 탐방 체험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비 :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4월 ~ 9월 : 세계자연유산 탐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 IV-36.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소중한 가치를 국내외에 공감 및 홍보함으로써 제주의 청정가치 증대 및 보전에 기여하고 체류 및 체험형 제주관광 활성화 및 고급화에 기여
- 세계자연유산과 연계·발전시켜 차원 높은 체험 행사로 발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성산일출봉 일대 등)
- 사 업 량 : 일출제 행사, 기념식, 자연생태트레일, 민속프로그램 등 1식
- 사업기간 : 2016년 7월 ~ 2017년 1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7월 ~ 2017. 1월 :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보조사업 추진

## IV-37. 세정대학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도민생활에 필요한 조세상식과 사업체 경영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 전국 최초 세정대학(제8기) 운영 활성화로 세정분야 개선사항 발굴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6년 3월부터(1년 과정)
- 교육대상자 : 제주도민 60명 내외
- 교육방법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교육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100%)

2015년 주요성과

- 제주대학교 강좌개설 운영위탁 협약 : 2015. 3월
- 2015년 제7기 과정 56명 양성(남 32, 여 24)

향후 추진계획

- 제8기 업무협약 체결, 세정대학 원생 모집 : 2016년 1월 ~ 2월

IV-38.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내에 스튜디오를 개설한 아리랑 라디오 방송은 2008. 7월 우리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 관련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제주브랜드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리랑 라디오 방송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특집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Inside Jeju : 매주 토, 일요일 23:00~23:05, 한주간의 제주뉴스 방송
- Jeju Beat : 매주 월~금요일 22:20~22:50, 외국인 리포터가 제주의 각종 행사 및 관련소식을 매일 3건 이상 소개

향후 추진계획

- 아리랑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제주홍보로 전 세계에 제주 인지도 제고

#### IV-39. 자율관리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동체 지도자 리더십 함양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와 내실화 유도를 위한 선진 우수공동체 벤치마킹 등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자율관리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57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사 업 량 : 57개 공동체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 57개소
- 제1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참가, 부산 및 울산 관내 우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벤치마킹 : 2015. 10. 29~10. 31  
- 성공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김녕자율관리어업 공동체)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사업계획 확정 : 2016년 2월 중
- 사업시행 : 2016년 3월 ~ 12월  
- 2016년도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에 의거 집행

#### IV-40. 제주 지하수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지하수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 체계가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음
-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 관련업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 지하수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명확한 정보전달 및 도민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정책 실현

※ 사업 시행 근거 : 수자원관리종합계획('13. 5. 1. 시행 고시)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지하수 아카데미 운영
- 사업량 : 제주 지하수 아카데미 개설·운영 1식  
- 도내 전문기관(제주발전연구원) 위탁시행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6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위탁사업기관 업무협약(제주발전연구원) : 2016년 1월
- 교육성과 평가 : 2016년 12월

#### IV-41. 한라산 등산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인들에게 체계적인 등산교육 및 올바른 등산 문화 함양
  - 한라산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자연 친화적 등산교육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사업개요

- 건 명 : 한라산 등산학교 운영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동)
- 주최/주관 : (사)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0월
- 참가규모 : 일반부 동계반, 청소년반, 정규반 등 100여명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한라산 등산학교 운영 : 1월 동계반, 4~5월 정규반, 8월 청소년반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한라산 등산학교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중

IV-42.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들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의 생활화
- 생활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가정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사업개요

- 건 명 : 2016년 생활체육프로그램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3월 ~ : 2개시 생활체육회 21개소 프로그램 운영

구분	2015년 현황	2016년 계획(안)
운영 현황	여성체육강좌 10개소 운영 장수체육대학 11개소 운영	여성체육강좌 5개소 운영 장수체육대학 5개소 운영 어린이체능교실 5개소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5개소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회의 개최 : 2015년 11월
- 시생활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안 수립 및 제출 : 2015년 12월
- 보조금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5년 1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2016년 3월 ~ 12월

#### IV-43. 종목별생활체육교실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 및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
-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을 올바르게 보급시켜 정착시키는데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종목별생활체육교실운영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도, 2개시생활체육회 32개 종목별생활체육교실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종목별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계자 회의 개최 : 2015년 11월
- 도생활체육회, 행정시생활체육회 교실 운영 안 수립 및 제출 : 2015년 12월
- 보조금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6년 1월
- 종목별생활체육교실 운영 : 2016년 3월 ~ 12월

#### IV-44.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식생활의 서구화, 산업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따른 식문화의 변화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정과 외식가정이 증가 실정
- 유치원,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습관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 정착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제5조 및 제9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4,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텃밭체험, 농어촌체험, 체험학교 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주요성과

- 한국의 절기음식과 식생활 교육(초등교사, 영양교사 대상) : 200명
- 농어촌 우수체험공간과 함께하는 도민 식생활 교육 : 7개소 280명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텃밭체험 : 285명
- 초·중 대상 농어촌 체험과정 및 식생활 체험 교육 : 355명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016년 사업추진 등 : 2016년 3월

## IV-45.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역량강화

### 사업의 필요성

- 민간단체 중심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활동 전환 추진
-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
- 재난예방 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안전관리역량 강화로 생활안전예방 활동 극대화
- 지역내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등 상시감시활동과 재난안전 모니터 활동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전개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업량 :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전환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83,300천원(국고보조금(소방안전교부세) 100%)

2015년 주요성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 (연 1회)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 (4회),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월1회), 어머니 명예교사 양성(4회),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4회), 어린이 운송차량 종사자 안전 결의대회 (2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7~8월)
- 화재사고, 가스사고, 전기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및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 참여

《안전모니터봉사단》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등 활용 각종 재난재해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 연중
  - 2012년 375건, 2013년 611건, 2014년 1,029건, 2015년 안전신문고로 전환 429건
-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문교육 및 합동워크숍 참여 : 연중

향후 추진계획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매월4일 전후 안전주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시기별유형별로 사상의 안전사고를 설정 역량강화 반복훈련 실시(매월)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연중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민간단체와 역할분담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인 확산

《안전모니터봉사단》

- 각종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 연중
- 재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인터넷 신고 및 제보 등 예방활동 : 연중
-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문교육 및 합동워크숍 참여 : 연중

IV-46.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부모의 역할, 결혼의 의미,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정보를 예비 부모교육을 통해 습득하여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환경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 29쌍(58명) 교육 이수

## IV-47. 제주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일상생활 속에서 제주인의 독특한 인문정신 고양을 위하여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확산
- 인문독서에 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개요

- 건 명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제주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시 오남로 221(한라도서관)
- 사업량 : 제주 역사문화 깊이보기, 제주 전통문화 다시보기, 제주인의 삶을 위한 철학 등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4월~11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국비 12,000천원, 도비 8,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운영실적 : 총20회 / 715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2월
-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신청 및 선정 발표 : 2016년 3월

-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 2016년 4월 ~ 11월
- 결과 보고 : 2016년 11월

#### IV-48.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사회에 내재된 대립과 갈등의 정신문화를 청산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미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도민사회 역량 결집 필요
- 더 큰 제주를 위해서는 도민사회의 지역간, 계층간,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주민 상호간 칭찬하는 정신문화와 공동체 문화 강화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업량 : 범도민 칭찬캠페인, 청소년 및 시민역량 강화, 언론홍보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 2016년 3월
-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추진 : 2016년 3월 ~ 12월

#### IV-49.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시장경제의 역기능인 개인간 이기주의 심화,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의식 만연, 혈연·지연·학연 등 "폐쇄적 연고주의" 팽배로 인한 사회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시민, NGO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과 참여, 신뢰와 배려심을

심어주어 주민 상호간을 협력적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제주형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 사업주체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000천원(도비 70%, 자부담 30%)

#### 2015년 주요성과

- 사업 공모 실시(3회) : 2015년 3월, 6월, 7월
- 지원사업 추진 : 5개사업, 51,000천원(보조금 40,000, 자부담 11,00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2016년 1월
- 지원사업 선정 : 2016년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년 3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년 12월

## IV-50.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마을발전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타 중앙단위 행사 참여로 마을사업에 대한  
시야 확대와 마을관련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로 마을발전사업의 질 향상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및 행사 참가 보상
- 사 업 량 : 마을지원 전문가 중앙교육(행사) 참여 항공료 보상 50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행복마을만들기 전국 콘테스트 등 중앙단위 행사 참가 등 보상
  - 항공료 왕복 실비 등 보상 : 48명

향후 추진계획

- 지원 계획 수립 : 2016년 1월
- 교육(포럼), 행사 참가 지원 : 2016년 2 ~ 12월

IV-5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강화 연수

사업의 필요성

- 퇴색되어가는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농촌지역의 체험 및 자원보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을에 적용가능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
  - 지속가능한 사업유지와 운영실태를 체험하여 농촌관광이 활성화와 주민소득과 연계방안에 대한 사례 접목
- ※ 사업시행 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체험휴양마을리더 역량강화 벤치마킹
- 사 업 량 : 체험휴양마을 및 마을사업 우수마을 리더 20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도비 50%, 자부담 50%)

향후 추진계획

- 국외 우수마을 탐방 계획 수립 : 2016년 2월
- 국외 우수마을 탐방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2016년 3월 ~ 5월
- 국외 우수마을 탐방 추진 : 2016년 3월 ~ 9월
- 국외 우수마을 탐방 결과보고 : 2016년 10월

## IV-52. 승마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말산업 특구에서 아카데미교육 등을 통해 승마산업 활성화 도모
-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화 됨에 승마를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1,000천원(자체재원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승마 협회, 동호회 등
- 사업내용 : 일반인 또는 학생 대상 승마 교육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승마가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IV-53.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실천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희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법, 친환경농자재 사용법 교육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600명 (2개기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000천원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민간 교육기관 지원 : 2개소 (제주시 1, 서귀포시 1)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교육기관에 대한 공모절차 이행 (연교육계획 장구) : 2016년 1월
- 친환경농업 확산교육기관 지정 운영 : 2016년 2월 ~ 12월

#### IV-54. 농촌유학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경험 및 농촌학생·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성 함양과 도농교류 확대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농촌유학시설 현황조사 : 2015년 9월 ~10월
- 2016년 농촌 유학지원사업 공모 및 대상 확정 : 2015년 11월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사업비 확정 및 시행 : 2016년 1월

## IV-55.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신농업 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일원
- 사업량 : 100명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10%)
- 사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 사업내용 :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등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실시
  - 대상자 및 인원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대상자 118명
  - 교육기관 : (사단법인)한국농업연수원

### 향후 추진계획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대상 사업자 선정 : 2016년 3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2016년 4월 ~ 12월

## IV-56.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 교육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4조(지원 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사업량 : 160명
- 사업자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대상 : 도내 예비 귀농인
- 사업내용 :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비, 임대료 등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4월 ~ 6월) : 90명
  - 하반기(10월 ~ 11월) : 80명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2월
- 상·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4월~9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정산 : 2016년 5월 ~ 12월

## IV-57. 도민 법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법률지식 강화 및 부담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이해 촉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공유 및 도민 자긍심 고취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법 교육 운영
- 위 치 : 도내 전역

- 사업량 : 도민 법 교육 500여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도민 법교육 추진 : 72회 1,718명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도민 법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교육생 모집 : 2016년 1월 ~ 2월
- 도민 법 교육 실시 : 2016년 3월 ~ 10월
- 도민 법 교육 결과 정리 : 2016년 11월 ~ 12월

#### IV-58.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지원

사업의 필요성

- 비문해 소외계층 대상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으로 학습욕구 진작 및 평생학습 실현

※ 사업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사업개요

- 건 명 :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지원
- 위 치 : 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 사업량 :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실시기관 5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08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영비	90,000	110,000	150,000	260,000	250,0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 인문소양·문화예술 등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

## IV-59.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반, 문해반, 백일장, 시화전 등)
- ※ 성인문해교육 수요집단
  - 20세 이상 초등·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 비문해자(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 반문해자(19세 이상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이해 능력은 거의 없는 성인)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 등 외국인 주민
- 위 치 : 도내 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2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성인문해프로그램비	20,000	20,000	20,000	

### 향후 추진계획

- 각 기관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IV-60.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 사업의 필요성

- UN기구나 국제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도민들에게 직접 알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고양
- 전 세계 평화시민활동가로 뛰어나는 국내 실천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평화, 인권 실천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위한 제주도민 교육지원사업
- 위 치 : 제주CBS본부(제주시 연동 271-1)
- 사업량 : 평화와 인권을 위한 도민강좌  
(강사진 : 국제구호단체 실무자 / - 대상 : 청소년·대학생·도민 등)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중(2013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평생교육진흥	16,000	30,000	30,000	

##### 향후 추진계획

-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민의 평화의식 고취 등 세계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 및 제주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교육참여 기회 마련

#### IV-61.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욕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평생 교육 기반 조성
-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특화형 프로그램 우선 지원으로 일반

교양·취미성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평생교육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 업 량 : 평생교육기관(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내용 : 4050세대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위한 생활적응 및 취·창업교육, 제주바로알기 인문학 강좌, 학습-고용연계, 직업능력개발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0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평생교육진흥	100,000	100,000	-	

향후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도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육성

IV-62.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의 필요성

- 문해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욕구 진작과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 체계 확립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 위 치 : 문해교육기관(비정규학교) 5개소
- 사 업 량 : 문해교육기관 시설보수, 교육기자재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0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7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최근 5년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0,000	40,000	85,000	70,000	70,000

향후 추진계획

- 문해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 개선으로 학습욕구 진작

IV-63.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생 100세 시대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민역량강화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수혜기회 균등 보장
  - 청년층(취·창업지원), 중·장년층(생애전환), 노년층(삶의 질 향상)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량 :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4개 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2015년 이 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5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 : 8. 24 - 3개분야7개과정 : 노인평생교육지도사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교육취약계층(장애인, 결혼이주민 등) 프로그램 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연차별 프로그램 개발및 운영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 2016년도 이후

#### IV-64 평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평화교육으로 세계평화의 섬 도민의 자질향상과 선진화된 의식함양
- 평화에 대한 의식변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세계 평화의 섬 개념정립 및 평화 문화 정착을 통한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최초시행시기 : 2006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세계평화의섬범도민회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평화아카데미 강좌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3 ~ 12월
- 대상 : 일반도민
- 주관 :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등
- 총사업비 : 60,000천원(민간위탁금)

##### 2015년 주요성과

- 평화아카데미 제주시지역 운영
  - 7강좌 운영 : 연인원 1,200명
-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운영
  - 7강좌 운영 : 연인원 700명
- 평화아카데미 평화탐방 2회 운영
  - 탐나라공화국 80여명 참가
  - 나가사키 원폭지역 평화탐방 등 60여명 참가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강좌 계획수립 및 업무협약 : 1월 ~ 2월
- 2016년 평화아카데미 개강 및 운영 : 3월 ~ 12월

#### IV-65. 생태환경 체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직접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함양 도모

- 생태보전 교육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청정 제주 지속 유지 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 사업개요

- 건 명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 위 치 : 제주지역 일원
- 사 업 량 : 자연환경보전 교육 1식 및 정화사업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6,670천원(자체재원 90%, 자부담 10%)

#### 2015년 주요성과

- 환경정화 활동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베스, 블루길, 왕도깨비) 퇴치사업 홍보 및 실시 : 2회
- 생태환경체험교육 : 무인도(추자 인근) 생태체험교육 및 정화활동 전개: 1회

### 향후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정화 사업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IV-66. 명사와 함께 걷는 곳자왈 아카데미

### 사업의 필요성

- 곳자왈 아카데미 운영으로 곳자왈의 다양한 가치 발굴, 조명
- 명사(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한 곳자왈 답사의 질적 수준 제고
- 곳자왈의 가치와 공유화에 관한 인식 도내외 확산  
※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48조

### 사업개요

- 건 명 : 명사와 함께 걷는 곳자왈 아카데미
- 위 치 : 도내 주요 곳자왈 (교래곳자왈, 선흘곳, 신평곳 등)
- 사 업 량 : 곳자왈지역 답사 5회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0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꽃자왈 숲 해설사 교육 실시(8~10월): 52명/13회
- 꽃자왈 콘서트를 통한 꽃자왈 공유화 홍보 등(8~9월): 1,500여명/5회
- 2015 대한민국 환경대전(코엑스) 참가 홍보: 부스방문 10,000명/체험 1,000명

향후 추진계획

- 꽃자왈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현장 답사지 확인 및 추진계획 수립

IV-67. 꽃자왈 생태체험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꽃자왈의 중요성 및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통한 보전·관리 의식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꽃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꽃자왈 생태체험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사 업 량 : 꽃자왈 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위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3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꽃자왈공유화재단 설립: 2007. 8.
- 꽃자왈 생태체험관 개관: 2012. 10. 10.
  - 시설현황: 489.12㎡(전시실 274.82㎡), 지하 1층, 지상 1층
  - (2015년1~10월 현재) 방문자 18,405명, 교육프로그램이수 6,432명

향후 추진계획

- 꽃자왈 생태체험관 전시실 정비 및 생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IV-68.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과 친환경실천의 생활화 유도하기 위해 우수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선정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 사업개요

- 건 명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 업 량 : 13개 교육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1,430천원(국비 70%, 도비 30%)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도 13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6년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1차 공모 선정 및 환경부 송부 : 2015. 5. 29
- ※ 2014년~ 2017년까지 78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선정(환경부) : 2015년 12월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선정 통보(환경부) : 2016년 1월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보조금 교부 : 2016년 3월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6년 3월 ~ 12월

## IV-69.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기후변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도민역량을 강화하고
- 특화된 기후변화교육 모델구축으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교육·연구·조사 등

세계적 교육센터로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사업개요

- 건 명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내
- 사 업 량 : 기후변화 교육 15천명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 국제포럼 등 개최 및 교육센터시설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협약 : 2007. 7월(환경부↔도)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설립 : 2009. 8월(강의·회의·세미나실 등)
- IUCN간 장기 환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환경분야 국제 교육) : 2014.1.27
- 교육 프로그램 운영(2015년 10월말) : 13,508명(국제교육 1,613, 국내교육 11,895)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육실적	3개 과정 1,269명	3개 과정 7,040명	3개 과정 13,338명	3개 과정 21,728명	3개 과정 16,803명	3개 과정 15,490명

###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6년 1월
- 기후변화교육사업 추진 : 2016년 1 ~ 12월(사업비정산 2017년 1월)

## IV-70. 기후변화 교육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교육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원

- 교육을 통한 생활 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 실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사업개요

- 건 명 : 기후변화교육 운영비 지원
- 사업량 : 전문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 양성 100명
- 사업내용 :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컨설턴트 양성 : 40명
  - 그린리더 양성(60명) 및 지원활동, 교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총사업비 : 38,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2015년 주요성과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2008. 12. 3), 행정시 네트워크 구성(2010. 6)
- 운영실적

연도별	찾아가는 기후학교 (어린이, 성인 기후학교 운영)	비고
2015년	46회 2,486명	

- 2016년 비산업 부문 사업장 컨설팅 추진계획 1차 워크숍 : 2015.10.22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비산업 부문 사업장 컨설팅 추진계획 2차 워크숍 : 2015년 12월
- 그린리더 및 컨설턴트 양성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017년 1월

IV-71.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맛·멋 등 교육, 체험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기반 마련

- 제주의 식문화교육으로 바른 먹거리, 소비문화 실천 확산

### 사업개요

- 건 명 :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0월
- 사 업 비 : 10,000천원(국비 5 도비 5)
- 주요내용 : 전통식문화 리더 및 전문가 육성(아동식습관지도자과정 등), 발효 식품의 이해와 활용,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 2015년 주요성과

- 발효·저장 음식과정 : 5회 20명
- 차세대 전통음식체험 및 오감더하기 현장교육 8회 300명
- 지역농산물활용 상품화 및 마인드 함양교육 12회 530명

###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사업계획 수립 : 1월
- 교육홍보 및 수강생 모집 : 수시
- 세부사업별 교육추진 : 4월 ~10월
- 사업평가 : 12월

## IV-72. 충효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방학을 이용하여 초·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충효교실 6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7월 ~ 8월, 11월 ~ 12월
- 운영 프로그램 : 서예, 한문, 예절, 사자소학 등

- 운영방법 : 주 3~4회 이상 / 1일 2시간
- 총사업비 : 14,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경로당 충효교실 8,337천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6월중 충효교실 운영 경로당 보조금 공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경비 읍면동 재배정

### IV-73.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절, 청결을 체계화한 교육운영으로 오고,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
-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육 및 평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체계 교육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성 있는 교육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2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운영
- 위 치 : 제주시 관내 관광사업체
- 사업량 : 상·하반기 친절모니터링 및 친절클리닉(연 2회)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관광사업체 대상 방문고객 친절도 모니터링(160개소) 및 친절클리닉(65회) 실시(상·하반기)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상·하반기 친절모니터링 실시 : 반기 1회(연 2회)
-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운영 : 반기1회(연 2회)

#### IV-74. 제주별빛누리공원 토, 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전한 토·일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토, 일 프로그램 운영 1식
- 위 치 :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오등동, 제주별빛누리공원)
- 사 업 량 : 토, 일 프로그램 3개 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0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4월 : 토, 일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015년 4월 ~ 5월 : 토, 일 프로그램 1기
- 2015년 5월 : 토, 일 프로그램 2기
- 2015년 6월 ~ 7월 : 토, 일 프로그램 3기
- 2015년 8월 ~ 9월 : 토, 일 프로그램 4기

##### 향후 추진계획

- 신나는 토, 일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 2016년 3월

#### IV-75.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가족이 다함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별빛누리공원 운영의 다양성 추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별빛누리공원
- 사 업 량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1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교육프로그램 5기 운영 완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가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016년도 가족 프로그램 재료 구입 및 운영 : 2016년 2월 ~ 11월

#### IV-76.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농어촌민박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매년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1,099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 ~ 2016년 12.(정기교육, 보강교육)
- 총사업비 : 12,296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 교육 강사 섭외 및 교육자료 수집 : 2016년 4월
- 교육일정 수립(상반기 교육 후 미수료자 하반기 보강교육) : 2016년 5월 ~ 12월

#### IV-77.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 재창조는 물론 주민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으로 주민역량강화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국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사업비 내시 2015년. 4월)

##### 사업개요

- 건 명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 위 치 : 제주시 용담1동 137-2번지 일원
- 사 업 량 : 예술가 레지던시 교육 강사비 등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4,300천원(국비 70%, 도비 30%)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3월. : 서문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 2015년 4월 :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비 내시 통보
- 2015년 10월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2016년 1월 ~ 12월

#### IV-78.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주도할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참여 의식 제고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주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리더 및 희망주민 등

- 사업내용 : 마을만들기 기본과정, 심화과정 운영
  - ※ 아카데미 연간 수료인원 : 6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지특 70%, 도비 3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아카데미 교육 운영(기본 38명, 심화 28명)

향후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 2016년 1월
- 단계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추진 및 수료 : 2016년 2월~12월

#### IV-79.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문화원 주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장이며 문화 지식과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 국가·지자체는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개요

- 사업량 : 문화대학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주관 : 제주문화원)
- 주요 강좌 프로그램
  - 제주의 역사, 제주의 지명유래, 제주 신화전설, 제주 인물, 제주문화의 이해, 유적 답사, 특강, 세미나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연간 대학 강좌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수강생 모집 등 : 2016년 2월
- 문화대학 운영 : 2016년 3월 ~ 12월

#### IV-80. 문화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시민 대상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지식 및 소양 배양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문화강좌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량 : 문화학교 운영 4개소(제주문화포럼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주요 강좌 프로그램
  - 인문학, 일반교양, 음악, 미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 운영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문화학교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서 접수 : 2016년 1월
- 문화학교 예산 재배정 및 보조금 교부 : 2016년 2월
- 문화학교 운영 및 사업정산 : 2016년 3월 ~ 12월

#### IV-81.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전통문화 및 향토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애호사상을 함양시키는 시민문화 교육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사업개요

- 건 명 : 역사문화박물관 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관내
- 사업량 : 30강좌(수강생 12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1. 28 : 업무대행 위탁협약(제주대학교 박물관)
- 2015. 3. 7 ~ 12. 5 : 박물관대학 운영(30강좌)

향후 추진계획

- 위탁협약(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 : 2016년 1월 ~ 2월
- 박물관대학 운영 및 정산 : 2016년 3월 ~ 12월

#### IV-82. 전통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우수성을 선양하여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전승을 기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전통학교 운영
- 위 치 :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사 업 량 : 5종목 28강좌(수강생 50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4. 6 ~ 4. 15 : 수강생 모집 및 접수
- 2015. 4.18 ~ 12. 5 : 전통학교 운영
- 2015년 11월 ~ 12월 : 전시회 계획 수립 및 전시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전통학교 운영계획(안) 수립 : 2016년 1월 ~ 3월
- 전통학교 운영 및 전시회 개최 : 2016년 4월 ~ 12월

#### IV-83. 살아 숨쉬는 제주향교

##### 사업의 필요성

-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서원, 향교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공모프로그램 사업임

※ 사업시행 근거 : 2016년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계획

##### 사업개요

- 건 명 : 살아숨쉬는 제주향교
- 위 치 : 제주향교
- 사업량 : 제주향교 활용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15년 주요성과

- 2015. 8. 31 : 2016 살아숨쉬는 제주향교 사업신청서 제출
- 2015. 10. 26 : 2016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선정 결과 알림

#####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및 12개 프로그램 사업시행 : 2016년 1월 ~ 12월

#### IV-84.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 원형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기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및 시 일원
- 사업량 : 5종목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500천원(국비 40%, 도비 60%)

2015년 주요성과

- 2015. 4. 18 ~ 12. 5 : 전통학교 운영
- 2015. 12월 중순 : 전시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운영 및 전시회 개최 : 2016년 1월 ~ 12월

#### IV-85. 안보교육

사업의 필요성

- 북한정세와 안보, 자주국방 등 안보교육으로 올바른 국가관 확립
- 새터민, 통일·안보 전문가 등 우수강사 위촉하여 민방위대 안보교육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개요

- 건 명 : 안보교육 강사수당
- 사 업 량 : 민방위대 안보교육 강사(70명) 수당
- 사업기간 : '16. 1. 1 ~ 12. 31(연중)
- 총사업비 : 10,500천원(국비 30%, 도비 70%)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민방위 대장·대원 안보교육 60회 9,000천원 지출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민방위 대원 안보교육(보충 3,4차 교육) 6회 실시
- 2016년 민방위 안보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70회 운영

#### IV-86.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동을 통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9길 17(이도일동) 참사랑문화의집
- 사업량 : 12개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5,64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 : 12강좌 1,065명 27,950천원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작품전시회 개최 : 2015년. 12월
- 2016년도 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 : 2016년 1월
- 교육운영 : 2016년 2월 ~ 12월

#### IV-87.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특색 있는 주민자치구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화합공동체 조성, 귀농·귀촌인, 은퇴 이주민 등의 안정적 제주 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참여계층 다변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량 : 26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실무학습 및 전문 컨설팅 : 10백만원
- 2015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25개사업 99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1월 ~ 2월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선정 및 센터별 사업 추진 : 2016년 3월 ~ 10월
- 특화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 및 우수센터 인센티브 부여 : 2016년 12월

#### IV-88. 제주시 평생교육 아카데미(인문학강좌)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물질만능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고 품격있는 제주시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개설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2016년 1월 ~ 2월
- 아카데미 운영 및 평가 : 2016년 3월 ~ 12월

#### IV-89.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 위 치 : 사라봉 동길 15(건입동)
- 사업내용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V-90.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교육장 접근이 다소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과정 및 장소(시간대)에서 정보화 교육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어르신들의 정보화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건 명 :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 위 치 : 읍면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
- 사 업 량 :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활용 등 시민이 원하는 과정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8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 10회 193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눈높이 맞춤 교육 개설 추진
-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 실시

#### IV-91.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특화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주민생활서비스 만족도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2조

사업개요

- 건 명 :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위 치 : 제주시 도남로 121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복지관
- 사업량 :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34,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6개소 · 9개 프로그램 · 33,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특화프로그램 7개 공모 절차 후 지원 : 2016년 1월 ~ 12월
- 특화프로그램 7개 지원비 관리 점검 : 연중

#### IV-92.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조천 인근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2조

사업개요

- 건 명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01-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센터
- 사 업 량 : 프로그램 3식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센터 프로그램 지원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신청 및 계획 확정 : 2016년 1월
- 연중 프로그램 진행 : 2016년 1월 ~ 12월

#### IV-93. 시민경제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
  - 시민 경제의식 제고로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구현
- ※ 사업시행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경제대학 시민강좌 운영(수강생 120명 예정)
- 사업방법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 총사업비 : 3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5. 07 ~ 9. 17 : 시민경제대학 제3기(67명)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 2015년 12월
- 수강생 모집 : 2016년 1월 ~ 2월
- 시민경제대학 운영 및 정산 : 2016년 3월 ~ 12월

#### IV-94.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시 지역 청소년
- 사업량
  - 생활과학교실 운영 : 동지역 2개반 · 4기, 읍·면지역 5개반 · 4기 운영
  - 생활과학교실 재료비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 기 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창의생활 과학교실 : 19회 · 179명
- 나눔생활 과학교실 : 33회 · 117명

향후 추진계획

- 생활과학교실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생활과학교실 운영 : 2016년 1월 ~ 12월

#### IV-95.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부모·자녀 및 형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정 지원 및 승마산업 발전 도모
- 가족 승마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및 가정 내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일원 말 관련단체 및 등록 승마장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도비 70%, 자부담 30%)

##### 2015년 주요성과

-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132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지원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 IV-96.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 건강권 증진
- 승마를 통한 힐링 레저 활동으로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국민생활체육 제주시승마연합회
- 사 업 량 : 2회(상반기·하반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000천원(도비 70%, 자부담 30%)

2015년 주요성과

-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34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시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승마 산업발전 도모

#### IV-97.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올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올레 관광객 유치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연3회)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11,200천원(자체재원 10,000 자부담 1,120)  
[기준보조율 : 90%, 12-2 홍보지원-지역경제활성화 홍보]

2015년 주요성과

- 제주올레 아카데미 개최 : 일반과정 2회 ,심화과정 1회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연 3회

#### IV-98. 친환경 “아이사랑 EM 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환경의 급변화로 아토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이 아토피 질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관내 초등학교(3개소) 및 중학교(1개소)의 아토피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EM 학교”를 운영하여 건강한 환경 및 학습여건 제공

#####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 “아이사랑 EM 학교” 운영
- 위 치 : 친환경로하스 사무소 및 관내 학교
- 사 업 량 : 학생 및 지역주민(다문화가정, 이주민 포함) 대상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총사업비 : 8,900천원 (도비 90%, 자부담 10%)

##### 향후 추진계획

- 아토피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체험 지속 실시
- EM 사용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IV-99. 동홍동 문화예술공유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공동체 증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관심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은 미흡한 상태로,
- 귀촌인 및 관내 문화예술인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건 명 : 동홍동 문화예술공유프로그램 운영
- 사업주체 : 동홍민속문화보존회(회장 : 오창순)
- 사 업 량 :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1월
- 총사업비 : 72,000천원(도비 90%, 자부담 10%)

#### 향후 추진계획

- 동흥민속문화보존회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2월
-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공연 : 2016년 3월 ~ 11월

### IV-100.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마을 유무형 자원의 인문학적 연결을 통한 지역고유의 매력있는 마을조성 지원
  - 주민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소개할 수 있는 “마을이야기꾼” 양성
  -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 및 다양한 과정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 대 상 : 읍·면·동 마을만들기 관련자 및 주민
- 사업기간 : 상·하반기 각 1회(2회)
- 총사업비 : 1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제1회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2015. 10. 12(월) ~ 14(수), 200여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제2회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연중 계획 수립 : 2016년 2월[상반기]
- 상반기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2월
- 제2회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강사 섭외 및 참여 대상자 모집 : 2016년 3월
- 제2회 상반기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2016년 5월[하반기]
- 하반기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계획 수립 : 2016년 6월
- 제2회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강사 섭외 및 참여 대상자 모집 : 2016년 7월
- 제2회 하반기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2016년 9월

#### IV-101.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역사 및 제주문화와 예술 등의 강좌개설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애향심 고취 시키고 제주를 새롭게 이해시켜 나가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 관한조례 제4조2항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시민회관 내
- 사 업 량 : 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문화대학 운영 : 역사문화, 인문교양 강좌 역사문화답사 등

##### 향후 추진계획

- 문화대학 개강 : 2015년 3월
- 문화대학 운영 : 2015년 3월 ~ 12월 (1학기, 2학기 운영)

#### IV-102.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향토문화의계승, 보존, 발굴 및 지역문화 보급사업과 서귀포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 관한조례 제4조2항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문화원문화학교 운영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시민회관 내
- 사업량 : 문화학교 운영 7개 과목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2 ~ 7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난타, 무용, 민요 등 7개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문화학교 운영 : 2016년 3월 ~ 7월

#### IV-103.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사업

사업의 필요성

- 향교의 활용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

사업개요

- 건 명 :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정의향교
- 사업내용 : 향교의 보존·관리·활용을 통한 프로그램형 지역재생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015년 주요성과

- 2016년 향교활용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2015. 9. 3.
- 2016년 향교활용사업 공모 결과 통지 : 2015. 10. 19.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향교활용사업 전개 : 2016년 2월 ~ 12월

#### IV-104. 문화예술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으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활용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공연법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예술교육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귀포예술의전당
- 사 업 량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5개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음악감상, 미술감상, 다문화합창단 운영 등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2월 ~ 11월

#### IV-105. 영천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의제 해결능력 배양 및 자치여건 조성
- 영천동 지역 출신 출향 인사를 초청, 지식·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건 명 : 영천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영천동 일원
- 사 업 량 : 영천아카데미 운영(분기별 운영 및 교류 방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IV-10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과 운영성과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별 차등지원으로 자치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방침 : 지역현안과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프로그램 대상 선별 집중지원
- 총사업비 : 8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2015년 특화프로그램 개발과정 교육 진행 : 2015년 2. 26 ~ 2. 27, 3권역  
· 특화프로그램 공모·심사 : 14개 프로그램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주민자치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IV-107.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주민과 시 소속 직원의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조례 제23조(정보화 교육)

#####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 교육기간 : 2016년 2월 ~ 12월
- 교육대상 : 지역 주민, 시 소속 직원 등 700여명
- 교육장소 : 시청 정보화교육장,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센터 등
- 총사업비 : 33,5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2015 정보화교육 실시(2015년10월 현재) : 17회 183명
- 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97%(응답자 148명, 2015년 2월~10월)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강화 : 연중

#### IV-108. 중국 바로알기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문화유적지 등 현지 체험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화에 발맞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개요

- 건 명 : 중국 바로알기 글로벌 인재 양성
- 사 업 량 : 중국어 교육 및 역사문화 탐방 1식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9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참여 청소년 모집 공고 및 선발 : 2016년 6월
- 중국어 회화 및 역사문화 교육 : 2016년 9월 ~ 11월
- 중국 현지 체험 : 2016년 12월

#### IV-109. 상인조직역량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정부의 지원시책에 따라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상인회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건 명 : 상인조직역량강화
- 사 업 량 : 시장매니저 1인 인건비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800천원(국비 30%, 도비 60%, 자부담 10%)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16년 1월~12월

#### IV-110. 승마아카데미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말산업을 친환경 녹색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 인구 저변확대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6호

##### 사업개요

- 건 명 : 승마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석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총사업비 : 84,000천원(도비 50%, 자부담 50%)

##### 2015년 주요성과

- 73명 참여, 47,500천원 소요(도비 23,750 자부담 23,750)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 2016년 1월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및 사업 추진 : 2016년 3월 ~ 12월

IV-111.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 시민대학은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귀포 평생학습의 산실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 지속 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2개 과정 · 1,500명(12회)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2015년 주요성과

- 글로벌아카데미 운영 : 10회 · 1,054명
  - 시내권 5회 · 614명, 읍면권 5회 · 440명
- 문화아카데미 운영 : 2회 · 212명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시민대학운영에 따른 대행기관 성과보고회 : 2015년 12월
- 2016년도 대행 협약 및 계획수립 : 2016년 2월

## IV-112.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급속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5개분야 / 60개 과목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 2015년 주요성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4개 과목 1,813명 참여
  - 기초문해교육(늘푸른 한글교실 외 2과목) : 140명
  - 직업능력교육(전문수제케이크 창업기술반 외 9과목) : 137명
  - 문화예술교육(색소폰 연주교실 초급반 외 12과목) : 754명
  - 인문교양교육(청소년중국어초급반외 23과목) : 482명
  - 시민참여교육(찾아가는 시각장애인 중국어교실 외 3과목) : 300명

### 향후 추진계획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마무리 : 2015년 11월 ~ 12월
- 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2016년 1월 ~ 12월

#### IV-113.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18세 이상인 성인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부여

##### 사업개요

- 대 상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18세 이상인 성인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사업비 : 8,18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 운영

2015년 주요성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시설(동려평생학교), 5,000천원 지원</li> </ul> |
|---|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 운영 : 2016년 3월 ~ 11월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컨설팅 지원 : 5월
- 2017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계획수립 : 12월



---

부  
속

---



**【부록 1】**

**평생교육법**

[시행 2014년1.28] [법률 제12339호, 2014년1.2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4년7.1] 제19조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 7. 1] 제23조

####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13. 5. 2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시행일 : 2014.7.1]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 2014년7.1]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년7.1]

###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년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3.27.]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41호, 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15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70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30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2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248호, 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시행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60호, 2015.10.6. 일부개정]

관리책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제16조·제21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7>

**제2조(삭제)**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③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제목개정 2015.10.6.]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8.17, 2012.10.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7>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0.1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자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10.6.>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본조신설 2013.5.15.][제목개정 2015.10.6.]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삭제 <2015. 10. 6.>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⑤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조직 및 시설 등의 지정자격과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되거나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⑦ 삭제 <개정 2015. 10. 6>[제목개정 2012.10.17.]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1조의3(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17>]

**제14조(삭제)** <2016. 10. 6.>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6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본조 신설 2011.8.17.]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본조신설 2011.8.17.]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이동복지법」에 따른 이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감면승인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5.10.6.>

1. 시설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2. 교육신청자가 교육 수강일 전에 교육취소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7.]

**제20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6.][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0. 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7호, 2011.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제주시평생학습센터 및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 ③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개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3호, 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 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과정별	1명 / 1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보육위탁료(제20조 관련)

□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1.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위원용)

청렴서약서(제3조제3항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총 괄       공 동 참 여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홍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과장
	강은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담당
	박순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주무관
	고은주	제주시 평생학습 담당
	김은정	서귀포시 평생학습 담당
	고영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변숙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사무관

---



---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



---

발행인 원 희 룡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등)  
 전화) 064-710-3821 팩스) 064-710-7439  
 홈페이지 : [www.jeju.go.kr](http://www.jeju.go.kr)

---

